



# 월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세무회계경영저널

eAnSe.com

30분내 Q&A답글 + 구독829-7575 010-2672-2250

Biz life partner, 온라인재경교육, e러닝, 전직원경영관리아카데미, CEO, CFO, CMO 등 경영진 휴대북, 관리자 점검표 · 실무자학습지

이달의 특집

## - ESG 경영 실무가이드 (상장회사협의회)

[주요정보]

- 지방세입 관계법률 문답자료 (행정안전부)
- 새정부 소상공인 · 자영업 정책방향 (중소벤처기업부)
- 감사인 지정기초자료 작성 및 제출 매뉴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 (AnSe consulting)  
←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

등록번호 영등포라-0129 · 등록일 2003년 11월 11일 발행인겸편집인 : 이운선 발행처 (주)안건조세정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41(신길동) 안세빌딩 1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안건조세정보



# 안사회계법인

Anse, the Best Answer

829-7557

829-7555

anse.com

..... ESG컨설팅과 인증,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설계자문, 기업가치평가

- PA 전문 ① 상장, 코스닥, 대기업의 내부회계 Private Accounting 전문 특화
- 회계감사 ② 소속회계사 115명 + 세무직원 286명 = 성실한 401명 활동
- 세무대리 ③ 대형회계법인에서 10년 이상 경력의 숙련된 전공별 회계사
- 재무자문 ④ 2020년 매출액 535억원으로 196개 법인 중 10번째 규모
- 경영컨설팅 ⑤ 서울 핵심지역과 광역시 총 21개의 현지밀착 1시간내 사무소
- 회계기장 ⑥ 모두 업무기획·계약·현장실행·품질관리 전 공정 책임수행
- 창업지원 ⑦ 獨自創安(독립, 자율, 창업, 안전) 경영이념과 적법투명회계
- 가업승계 ⑧ 고객현장근무 중심, 사전문제예방 컨설팅 파견과 재택가능

담당회계사·재경컨설턴트: 경리·재경아웃소싱 업무를 수행할 안세의 전국 사업본부의 소속 공인회계사등과 분사무소 · 지점

자매 회사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서울본사 (영등포)	829-7557 외부감사·세무대리·회계·기장·재무·ESG컨설팅·기업가치평가(IFRS 적용컨설팅)·내부회계관리제도설계·금융자문·품질관리심리실·준법감시인·재경본부운영·전문지식정보운영팀 박윤중·김형석·고주현·이동건·안수현·장용석 등 70명 등기이사 파트너 / 심리실·손세정(준법감시인 겸 심리역)	
고두환·고영일·공희성·김경수·김봉수·김수범·김영근·김옥철·김운전·김종창·김준영·김준일·김형석·나경수·박규태·박기훈·박병준·배익권·송형근·안수환·윤훈기·이만선·이미지·이샤야·이승환·이원재·이형주·정성문·조민기·조성민·조영우·진경일·진수미·표정협·최우영·한상표·한용주·홍종혁·허진영(변호사: 준법지원역)		
서초강남본부	070-7668-6865	강민우·곽영미·김태현·이현섭·배문호·송태현·최민욱·신민석·조세용·황준호·정호신·김동현
강남금융본부	070-5101-1651	우성권·김용환·김수범·홍희빈·이혜리·강윙희·김현단·선지우·박경혜·이원구
동작남부본실	02-6011-5514	이남재·정현·허근·황창연·장욱
부산경남본부	051-322-8321	공병진·이동계·윤재훈 + 10인
대전충청본부	042-525-5558	이상훈·김형진·정대환 + 10인
광주호남본부	062-714-3303	양철성·김희표·김민주·김창훈·최재용
부산지점	051-819-3308	박지훈·이상태·양승민 + 5인
부산중앙지점	051-714-7227	이형래·홍영표·김치현 + 7인
부산센텀지점	051-938-9677	이수영·고경호·이대건 + 2인
경인지점	032-815-2641	심강수·이희곤·정영훈 + 4인
일산지점	031-817-4189	김종운·송주호·최민욱 + 2인
특별자문역		유찬영 세무사, 홍현영 법무사, 이승환 노무사, 김재득 세무사, 김흥기·윤경만·박희원·이우목·이미경 경영지도사
강남지점	516-4199	윤봉진·장원택·김현민 + 3인
서초지점	6245-7502	정훈·김태경·리선희 + 10인
논현지점	571-3700	정원용·임진호·안영호 + 4인
삼성동지점	02-312-2254	안수현·조성민·유진우
여의도지점	6959-2378	고주현·양용석·황창연 + 5인
센트럴지점	2209-0710	유환철·유지윤·윤현철 + 4인
영등포지점	2633-9243	차병길·원영민·강병운 + 10인
가산지점	2026-8838	조재영·이동건·고경환 + 3인
중소기업지원센터	312-2255	이익재·이준상·이승호

## 안사회계법인의 상장·대기업 PA(Private accounting) 업무 상세내역

안사회계법인은 거래소상장법인 코스닥상장회사 재벌집단 대기업그룹 다국적글로벌외투법인등의 내부회계협력자문 PA(Private accounting)회계재무경영자문 아웃소싱용역의 최선봉에서,기업내부재경실무자의 애로점을 최적해결하는 경력자중심 조직임 - 빅4등에서 7년차이상의 베테랑회계사가 소속되어 창업적 활동함.(02-829-7575)

1. ESG컨설팅·인증 상장회사 등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 자문, 인증업무, 환경, 사회, 투명경영전략 설계 컨설팅
2. 가치평가 기업전체가치평가(DCF 등), 기업 1주당 주식가치평가, 전환사채의 주식 및 옵션 가치평가, 상환우선주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옵션가치평가, 사모ABL평가, 보유투자주식평가, 이항모형 스톡옵션평가, 고정자산손상평가, 지분증권평가, 영업권 등 무형자산평가, 주식손상평가(관계사, 종속회사), PBR·PER 이용한 주식가치평가, 타회계감사 제출용 매도가능증권평가, 투자기업의 분기별 공정가치평가, 해외자회사 주식평가, 타회사 인수를 위한 기업가치평가, 무담보채권평가, 비상장주식의 상증법상 평가, 특수관계인간 주식양수도평가, RCPS용 비상장주식평가, 비상장사의 영업권 평가, 무형자산손상검토, 사회적 가치서비스 창출자문(ESG)
3. 일반재무제표 매년도 재무제표 작성·지원용역, 현금흐름표와 주석작성, 내부경리실무자의 일손부족분 결산보조,원가회계와 제조원가계산.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명세서작성,원가관리와 제품별 공정별 원가계산과정의 엑셀정리집계,제조원가배부용 감가상각비계산과 생산원가반영후 최종결산재무제표작성, 반기재무제표작성, 기업인수합병 영업권대가의 각 사업부 배부용역, 재무결산지원, 재무제표작성과정의 신속·고도화, 건설·조선 공사 등 진행용 검토, 분기·반기·연차 재무제표작성지원협력, 국가중앙행정 각부·지자체 등 결산지원업무, 공기업·공기관 결산지원용역
4. 내부회계분야 내부회계시스템 구축·설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구축 및 운영평가지원, 재무관리실태감사와 내부회계지원
5. K-IFRS 관련 국제회계자문 연간일정(평상시 회계쟁점자문, 질문의견서 작성, 분기재무·반기검토 작성지원, 결산마감 과 재무제표·현금흐름표·주석 작성, 연결분개재무제표, 외감현장입회대응, 해외모기업 합산재무지원)
6. 외감 아닌 기타 인증업무 합의된 절차에 의한 실사업무, 사업비정산 검토감사, 임의감사, 조성원가추정계산, 연구비 위탁정산
7. 연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작성·지원·자문용역, 국내외 자회사 등의 내부거래이익 제거, 연결재무제표 기초이월잔액 검증
8. 사업계획서 등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타당성보고서, 사업계획 미래 현금흐름검토, 대규모 사업단지 개발지역·오피스텔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스타트업 지원
9. M&A 실사·조사 등 인수대상회사 실사, 내부 임직원 부정적발조사, 자산부채자본실사, 자산양수도거래의 외부평가
10. 화의·법정관리 등 각급 법원 회생조사위원, 회생신청 전반 컨설팅, 관리인 조사보고서의 재검토
11. 외국·해외비즈니스 감사보고서 영문번역, 해외투자자와 자원개발 자금 심사와 실사업무, USGAAP기준, 영문감사보고서
12. 기타 특수업무 기업의 금융감독원 특별심사 감리대응자문, 위탁수수료 예상가격 산정, 컨설팅사의 공기관 제출 인증서류 검토, 사외이사취임, 내부감사(상근, 비상근), 상장사 등 내부 감사위원회 구성원 역할





#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

+ 교육 · 훈련강의저널  
+ CEO · CFO · 기업법무저널

www.eAnSe.com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은  
고객회사와 기업재경실무자의  
“명료한 세무판단”,  
“투명한 회계처리”,  
“효율적 경영활동”  
에 도움을 드리고자,  
여러 회계법인이 연합하여  
공동제작하는  
회계세무재경 전문가의  
정보자료전략컨설팅지  
입니다.

## 이달의 회계조세전략 핵심 point

-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방법과 과세정점 ..... 2
- 기업근무 개인에 대한 소득지급명세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비교 ..... 3
- 부가세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사업자간 비교 ..... 5

## 이달의 특집

- esg경영 실무가이드 (상장회사협의회) ..... 11

## 9월의 세무일지

일 자	구 분
13(화)	법인·소득세(농특세 포함) 원천징수분 납부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납부 레저세(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신고납부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부 증권등거래세 신고납부
20(화)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30(금)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개별소비세(유류 등), 교 통세(교육세·주행세 포 함),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일용·사업· 근로·기타소득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 세무정보

- 지방세입 관계법률 문답자료 (행정안전부) ..... 90

## 경영정보

-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 (중소벤처기업부) ..... 99

## 회계정보

- 감사인 지정기초자료 작성 및 제출 매뉴얼 (한국공인회계사회) 124

- 부가세영세율과표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액 평가의  
기준·재정 환율 (8월) ..... 144

# 민감한 회계조세전략

## 핵심 point ..... 안세재경저널

### ◎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방법과 과세쟁점

- 안세재경저널 2022/8/3일자 통권 1582호(표지)

개념 구분	국내 거주자	비거주자(해외 거주자)
거소일자판단	국내에 1년 단위 183일 이상 거소(국내 거소시작일부터 누적 183일 계산)	국내 거소일부터 누적 183일 미만 거소
실질성 판단	한국국적 + 국내가족 + 국내재산	외국국적 + 해외가족 + 해외직업
근무소속판단	국내 모기업의 해외사업장(지점 등)과 해외 현지법인(100% 출자법인) 파견 기업 임직원, 해외파견 공무원	외국기업 소속자, 국내 모기업의 100% 미만 투자법인 근무자, 현지채용 한국인
과세범위	전세계 소득(국내 + 해외)	국내 원천소득만 과세
세금계산·공제 등	(국내소득 + 해외소득) × 국내세율 - 해외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소득세액	국내원천소득 × 국내세율(외국에서 환급됨) (근로소득은 일반 종합과세, 사업소득은 분리과세 원천징수 22% 적용 등)
실제 현실	국내세율이 높으면 합산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 초과 차액만 납부(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함)	국내원천소득의 납부세액만 계산(국내 세금이 많으면, 차액은 더 이상 환급안 됨)

### ◎ 신용카드 사용 거래의 조세혜택 이유와 실제 세금감소효과

- 안세재경저널 2022/8/3일자 통권 1582호(긴급시사해설)

개념 구분	신용카드 사용 효과, 범위, 세금감소효과 등
신용카드 기능	현금거래 대신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자영업 매출자의 매출액 양성화로 부가

	가치세 10% 징수와 종합소득세 신고금액 상향 효과 + 구입 사용자·소비자의 사용금액 투명성
신용카드 사용액의 근로소득공제 효과	근로소득자의 1년 연봉(총급여액)의 25% 초과사용액×평균 15%를 소득공제함 (전통시장은 40%, 대중교통사용 40%, 공연전시 등 30%, 직불카드는 30%)
신용카드 유형	여신전문 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지급, 현금영수증(지역화폐, 현금영수증 없는 단순현금지급액 등은 해당 안됨)
카드지출액 포함범위	근로소득자 본인카드+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 존속 포함)
실제 세금혜택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봉 6천만원, 신용카드 일반 사용 총액 연 2천만원</li> <li>세금감소효과 = 2천만원 - 6천만원×25% = 500만원(연봉 7천만원까지는 300만원 한도)×15%×1.1% = 495,000원</li> </ul>
연봉별 세금감소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연봉의 3분의 1을 신용카드 사용하여 생활 시, 사용액의 2.5%(=49만원÷2천만원) 세금감소 효과</li> <li>② 연봉 9천만원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25% 이하인 2천2백만원이면 세금감소 효과 전혀 없음</li> </ul>

● 기업근무 개인에 대한 소득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비교

- 안세재경저널 2022/8/10일자 통권 1583호(표지)

개념 구분, 조문	(정규)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법 제164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법 제164조의3)
개념, 목적	소득자와 소득액, 원천징수세금 등을 모두 파악(연단위 소득과 세금징수 등)	소득자와 소득금액만 파악 집계 (근로소득장려금 지급정보 파악)
정규 근로소득	1년 단위 연말정산하여 다음 연도 3월 10일	6개월 상반기(1~6월)는 7월말 6개월 하반기(7~12월)는 다음 해 1월말
일용근로소득	매월 지급액과 세금을 다음 달 말까지	해당 안 됨
퇴직소득	퇴직소득지급월의 다음 연도 3월 10일	해당 안 됨
사업소득	1년 단위 지급액(또는 연말정산)을 다음 연도 3월 10일	매월 단위지급액을 다음 달 말까지
이자·배당소득	1년 단위 지급액을 다음 연도 2월말	해당 없음
연금·기타소득	1년 단위 지급액을 다음 연도 2월 말	해당 없음
종교소득·봉사료	1년 단위 지급액을 다음 연도 3월 10일	해당 없음
금융투자소득	금융소득 발생 반기(6개월 단위) 다음달 말일	해당 없음

● **처음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판단과 준비할 사항 및 초도감사 매뉴얼 등**

- 안세재경저널 2022/8/10일자 통권 1583호(긴급시사해설)

1. 외부감사대상 기준 확인(12월 말 법인의 3월 31일 세무신고서 상)
  - ① 전년도 자산총액 500억 이상
  - ② 전년도 매출액 500억 이상
  - ③ 전년도 자산총액 120억 이상, 부채액 70억 이상, 매출액 100억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의 4가지 중 2개 이상 해당(유한회사는 +사원수 50인 이상 5개 중에서 3개 해당)
2. 초도감사기업의 자유계약일 : 12월 말 기준 4월말까지 계약 → 5월 14일까지 증선위 계약 공시
3. 외감계약·공시 안한 기업 : 연중 9월경까지 금감원의 외감계약 촉진 공문 발송 + 이후는 감사인 강제지정, 배정 통지함.
4. 금감원 사이트에서 각 기업의 외부감사 고유번호 부여받음.
5. 자체기장이면 전환여부 검토
  - ① 외부감사 대상법인이 외부기장 맡기면, 자산·부채의 정확한 회계처리가 어려움.
  - ② 특정 회계법인의 기장 거래처이면 → 기장반납, 기업 자체기장 유도 후 → 해당 특정 회계법인과도 외부감사계약 가능
  - ③ 특정 회계법인이 계속 기장하려면 → 다른 회계법인에 외부감사계약을 안내해야 함(기장·감사의 중복 금지)
6. 모든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의 엄격 적용 :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안 맞으면 비적정 의견
  - ① 세법(부가세법, 법인세법)기준 아닌, 발생주의 등 회계기준으로 수익인식
  - ②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 보수적 평가(모든 거래에 발생주의와 보수기준 적용)
  - ③ 유형자산 평가와 감가상각
  - ④ 주식·유가증권 등 평가
  - ⑤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등

7. 기초이월재고자산의 엄격한 실사

- ① 초도감사 전년도에 대한 임의감사 수행 : 이월재고확정
- ② 전년도 임의감사 안하면 당년도 초도감사보고서 의견은 이월재고 한정 원칙임
- ③ 재고자산 이외의 전기이월 자산·부채도 엄격한 금액 판단

8. 모든 자산·부채 중 대외거래는 외부조회서 준비

- ① 금융채권·채무조회서 : 금융거래금액과 명세 파악
- ② 외상채권·채무조회서 : 금액, 거래내용, 주소 파악
- ③ 기타 외부채권·채무조회서도 준비함 : 명세, 주소, 금액 등

9. 초도감사 연중 외감절차

- ① 올해 5월 14일까지 계약 공시
- ② 6월말 기준 반기검토(대형 법인)
- ③ 10~11월경 중간감사
- ④ 12월말 기준 1월 초 재고실사와 금융·채권채무조회서 발송
- ⑤ 결산완료 + 재무제표 작성 제출받음
- ⑥ 다음 해 2~3월 중 연말감사(3월 말 확정)
- ⑦ 4월 14일까지 감사결과 공시

● 부가세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사업자간 비교

- 안세재경저널 2022/8/17일자 통권 1584호(표지)

개념 구분	일반과세사업자	간이과세사업자(개인)
사업자 개념	간이과세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	간편한 절차로 부가세 신고납부하는 개인사업자
재화·용역 총가액	재화·용역가액 + 10% 부가세 별도가산	재화·용역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 포함가액임
세금계산서	발행함 : 공급가×10% 추가	발행함·부가세 10% 별도기재
적용업종	제조·광업·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직사업자 등 8천만원 이상	소규모 사업자(전년도 매출 8천만원 미만 사업자 등)
부동산임대업	전년도 공급가액 4800만원 이상	전년도 공급자 4800만원 미만
과세유흥장소	전년도 공급가액 4800만원 이상	전년도 공급자 4800만원 미만

세금계산방법	$\text{매출액} \times 10\% - \text{매입액} \times 10\%$ $= (\text{매출} - \text{매입}) \times 10\%$	$\text{매출액} \times 10\% \times \text{부가가치율} - \text{매입액} \times 0.5\%$ <p>(부가가치율 = 소매·음식 15%, 제조 20%, 숙박 25%, 건설기타 30%, 전문직·임대업 40%)</p>
신고납부기간	매 6개월 단위 (법인은 3개월 단위)	1년 단위(1.1 ~ 12.31)로 매년 1월 25일 신고·납부함
상대방 매입자	매입부가세액(10%) 전액공제	매입부가세액 전액 공제함

● **부부간 선증여재산의 상속시 합산관계**

- 안세재경저널 2022/8/17일자 통권 1584호(긴급시사해설)

개념, 구분	증여, 반환증여 및 예금증여, 부동산 증여의 관련 세금 등
부부간 증여공제	특정증여 이전 10년 범위에서 합계 후 6억원 공제
증여 후 반환	증여 후 3개월 내 반환 : 증여세 없음(당초증여, 반환증여)
	증여 후 6개월 내 반환 : 당초 증여는 증여세 과세, 반환증여는 면제
	증여 후 6개월 초과반환 : 당초 증여세 과세, 반환증여도 과세
부부간 재산 소유	부부간 균등, 균형 재산소유시 상속세 부담 최소화됨
상속공제 활용	상속시 가족 등 기본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30억원 최대)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의 소유재산을 10억원 내외로 소유토록 분산함(타방배우자 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유한 부부	60대 이후는 10년 단위로 소유재산 일부를 자녀에게 분할증여 : 상속세 절감
1세대 1주택	전세보증금 있는 상태에서 자녀에 증여(증여세 절감) + 부담부증여 금액의 양도세 비과세
전세보증금	부모가 받은 전세보증금 10억원 내외 상속이면, 상속공제 10억(= 기초 5억 + 배우자 5억)으로 공제상쇄되어 상속세는 없음

●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상표권, 영업권, 지상권 등, 문화예술권 등, 강연료·그림 등의 법정필요경비

- 안세재경저널 2022/8/24일자 통권 1585호(표지)

연도	법정필요경비율	규정	변경이유, 과정 등
2017년까지	80%또는 실제경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	일시·우발적 소득, 소득창출이 어려움
2018년	70% 또는 실제비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1의2 신설	80→70% 내림, 팔호()내에 2019년부터는 60%로 기재
2019년	60% 또는 실제비용	그대로임 (일부 개정)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의2 추가 (통신판매·중개 위한 물품, 장소대여료 포함)
2019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60% 또는 실제 초과비용	그대로임 (일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재산권, 다수강연료 등</li> <li>•소득창출 어려움 감안 유지</li> <li>•특허·재산권, 바이오 등 입증불능한 장기간 비용 많음</li> </ul>
서화·골동품 등의 양도소득	1억원까지는 90%, 1억 초과시 : 9천만원 + 80% (10년 이상 보유는 90%)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호	미술산업 지원 개념
종교인 소득	2천만원까지 80% + 초과 2천 50% + 초과 2천×30% + 6천만 초과시 20%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3호	종교인 근로소득의 특별혜택 과세

● 개인사업자의 은퇴·폐업시 주의할 세금·회계문제

- 안세재경저널 2022/8/24일자 통권 1585호(긴급시사해설)

개념·구분	구체적 행위, 절차, 쟁점 포인트 등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최종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함

세금계산서 수수	폐업일 이후에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함. 외부에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도 안됨
남은 재고 정리	폐업 전에 남은 재고자산을 모두 양도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함 (폐업 후 남은 재고는 자가공급으로 보아, 이미 매입세액공제받은 부분 금액을 다시 납부함)
소득지급명세서	채용된 직원의 최종 급여분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 말월의 다음 달 말까지임
각종 소득명세서	폐업 전까지의 각종 사업소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도 제출함
다음연도 종소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말까지 종합소득합산신고함
포괄양수도여부	폐업사업장 · 잔여재산의 일반양도 → 세금계산서 발행 폐업사업장을 포괄양수한 경우 → 부가세 과세거래 아님(세금계산서 미발행) 상대방 사유로 포괄양수도 여부 불분명시 → 세금계산서 발행 선택해도 됨
사업상의 권리금	사업장의 재산 : 부가세 과세, 사업장의 부동산 : 부동산 양도소득세 무형재산가치, 권리금 등 : 기타소득으로 법정경비 60% 차감 후 $40\% \times 22\% = 8.8\%$ 원천징수 차감된 후, 순액으로 지급받음(상대방은 총 취득원가로 감가상각함)

◎ 각종소득의 과세기준 계산 공제금액과 원천징수세율

- 안세재경저널 2022/8/31일자 통권 1586호(표지)

소득구분	소득의 대응원가, 소득공제 계산 등	원천징수세율, 종합소득합산
정규근로소득	소득공제 70%부터, 일반 15% 내외	기본누진세율(6%~45%), 종소합산
일용근로소득	(하루 일당 - 15만원) × 6%	세율 6%, 55% 세액공제, 분리과세
독립사업소득	실제소요비용, 기준경비 · 단순경비율	원천세율 3%, 순소득의 종소합산
기타소득	재산권 총수입 - 법정경비 60%	원천세율 20%, 순소득(총수입의 40%)의 종소합산

종교인소득	2천까지 80%, 4천까지 50%, 6천까지 30%, 6천만원 초과시 20%	높은 소득공제후 기본누진세율
퇴직소득	표준환산급여의 100%~35% 적용(평균 50%)	약 50% 소득에 기본누진세율 적용, 별도과세
국민연금소득	최소 350~최대 900만원 공제	기본누진세율 적용, 종소합산
일반이자소득	대응원가 공제금액 없음	원천세 14%, 종소합산
비영업이자	대응원가 공제금액 없음	원천세 25%, 종소합산
일반배당소득	대응원가없음, 배당 11% 가산	원천세 14%, 종소합산, 세액공제 11%

◎ 각종소득의 과세기준 계산 공제금액과 원천징수세율

- 안세재경저널 2022/8/31일자 통권 1586호(긴급시사해설)

1. 피부양자 소득기준강화 : 연간소득 3,400만원 → 2,000만원이하로 건보료 부담증가(피부양자에서 별도의 지역가입자로 전환됨)  
합산소득 2,000만원 판단방법 : 금융·사업·근로·공적연금·기타소득 등 모두 포함(사업자등록과 주민번호 등 원천징수분)
2. 공적연금소득도 포함계산 판단 : 연소득 2천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상실 : 지역가입자로 별도부과  
연금소득인정비율도 30% → 50%로 상향(연금연액 2천만원당 건보료 11만원 : 1.5배 상승효과)
3. 사업자등록증 있고, 약간의 사업소득 있어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상실
4. 3.3% 원천징수사업소득자는 연 500만원 이상시 상실
5. ① 피부양자 재산기준 강화 : 과세표준 5.4억원 → 3.6억원 이하로 지역가입자 확대  
② 피부양자 상실, 지역가입자 전환기준  
㉠ 재산과세표준 9억원 초과 하거나

- ㉞ 연간합산소득 1천만원 초과 + 재산과세표준 3.6억원 초과하는 부모인 경우도 모두 피부양자에서 상실됨.
  - ㉟ 재산의 과세표준은 실제 시가의 약 60%로 반영
6. 중소기업 대표나 부모, 자녀 등 가족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과 상실, 지역가입자 전환문제에 대해, 모든 소득과 재산상황을 파악, 판단해야 함(각 중소기업 경영자가 스스로 보험공단과 직접 연락·계산과정 협의·금액결정 해야 함).



이달의

특 집

# ESG 경영 실무가이드

— 상장회사협의회 —

## 용어 정의

**조직**은 부서, 협의체, 회사 등을 지칭하는 용어이며 ESG 활동 및 정보 공개 범위에 따라 개별 회사가 아닌 그룹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해관계자**는 경영 의사결정과 활동에 영향을 받거나 또는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의 자연인 및 조직을 의미한다.

**경영시스템(system)**은 일정한 목표 수립 및 달성을 위한 프로세스를 만드는데 관련된 조직 요소, 즉 조직의 구조·역할·책임·계획수립·운영 등을 의미한다.

**최고경영자(진)**은 등기이사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 사업(분야)의 관리와 운영을 맡고 있는 임원급 개인 또는 그룹을 지칭한다.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의미한다. ESG 경영은 중요 ESG 요소를 회사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결국 일반적인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결정 주체인 이사회가 최고의사결정기구가 된다. 다만, 이사회가 이사회 내 위원회에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 중에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최고의사결정기구가 될 수도 있다.

**방침**은 최고경영자(진)에 의해 공식적으로 표명된 조직의 의도 및 방향이다.

**중요성 평가**는 중대성 평가라고도 하며 ESG 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 과정이다.

**KPI**는 Key Performance Indicator의 약자로 핵심성과지표를 말한다.

**최고지속가능경영책임자(CSO)**는 ESG경영시스템의 운영에 책임 및 권한을 가진 자이다.

**ESG 관련 리스크(risk)**는 환경 변화 등을 포함하여 경영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ESG 요소(사건의 발생이나 발생 가능성)를 고려한 위험 요인이다.

**제3자 검증(Assurance)**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외부 전문가집단의 조사 등을 거쳐 검증보고서가 발급된다.

**인증(Certification)**은 ESG 관련 ISO 표준 등 일정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으로 인증제도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 I. ESG 경영 개요

## 1. ESG 경영이 필요한 이유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하나로 묶은 개념이며, ESG 경영이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ESG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며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은 ESG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므로 '지속가능 경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ESG는 기업이 단순히 재무 성과를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지속가능할 수 없으며 코로나19 팬데믹, 기후 변화, 각종 사건사고 등에 대한 리스크와 기회를 잘 관리해야만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해진다는 금융자본의 시각에 따른 것이다. 이에 투자를 받는 주체인 기업은 재무 요소뿐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관리와 정보 공개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기업에 요구되고 있는 ESG 정보의 통일된 표준이 없고 투자자, 거래상대방, 정부 등에서 요구하는 ESG가 각기 달라 기업이 이를 자체적으로 진단, 평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1) ESG 경영의 효과

#### 1.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작용

- ESG 경영으로 새로운 고객의 유입,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 확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음.

#### 2. 리스크 감소 효과

- 기후 변화나 법률 제·개정, 이해관계자 요구 등에 따라 ESG 요소가 기업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음. 따라서 ESG와 관련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경영활동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

### 3.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

- ESG 경영에 따라 친환경적이며 투명한 경영상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과 정보 공개로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가 있으며 이는 IR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2) ESG 경영 시 고려사항

### 1.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 ESG 경영의 실천은 그 효과를 확인하기까지 수 년이 소요되는 중장기 전략임. 이에 비해 ESG 경영에 투입되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기업 재정 상황에 따라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음. 따라서 비용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추진을 검토하여야 함.

### 2. 목표, 계획 수립 등 결정의 어려움

- ESG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일관된 공시 및 평가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각 회사가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므로 명확한 ESG 경영 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이 어려움. 현재는 글로벌 동향에 따라 대표적 이니셔티브를 고려하여 국내외 규제, 투자자 및 거래상대방 등의 요구 등에 초점을 맞춰 대응해야 함.

## (1) ESG 경영의 효과

### 1.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작용

- ESG 경영으로 새로운 고객의 유입,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 확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음.

### 2. 리스크 감소 효과

- 기후 변화나 법률 제·개정, 이해관계자 요구 등에 따라 ESG 요소가 기업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음. 따라서 ESG와 관련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경영활동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

### 3.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

- ESG 경영에 따라 친환경적이며 투명한 경영상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과 정보 공개로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가 있으며 이는 IR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2) ESG 경영 시 고려사항

### 1.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 ESG 경영의 실천은 그 효과를 확인하기까지 수 년이 소요되는 중장기 전략임. 이에 비해 ESG 경영에 투입되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기업 재정 상황에 따라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음. 따라서 비용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추진을 검토하여야 함.

### 2. 목표, 계획 수립 등 결정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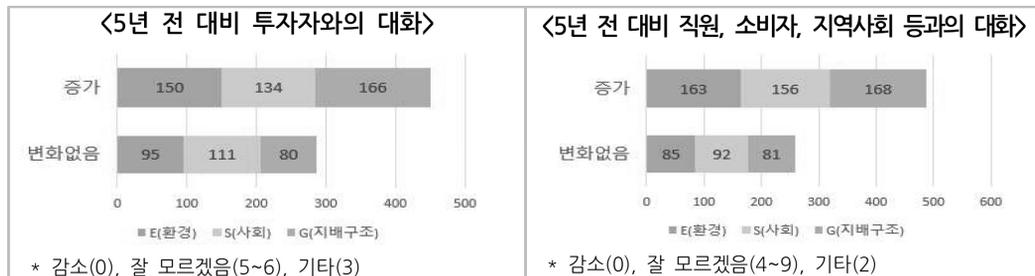
- ESG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일관된 공시 및 평가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각 회사가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므로 명확한 ESG 경영 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이 어려움. 현재는 글로벌 동향에 따라 대표적 이니셔티브를 고려하여 국내외 규제, 투자자 및 거래상대방 등의 요구 등에 초점을 맞춰 대응해야 함.

## 2. ESG 경영에 대한 기업의 현재 인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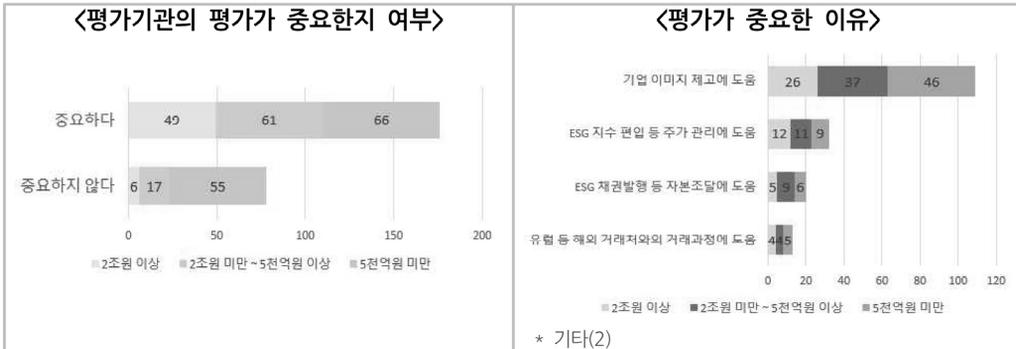
본회는 지난 2021년 10월, ESG 경영에 대한 회원사의 인식 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조사기간 : 2021. 10. 25.(월) ~ 2021. 11. 5.(금)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시스템 활용			
□ 조사대상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797개사 중 254개사 응답 (응답률 31.9%)			
자산 2조원 이상	2조원 미만 ~ 5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	합 계
55개사(21.7%)	78개사(30.7%)	121개사(47.6%)	254개사(100.0%)

### 1) ESG에 대한 관심과 부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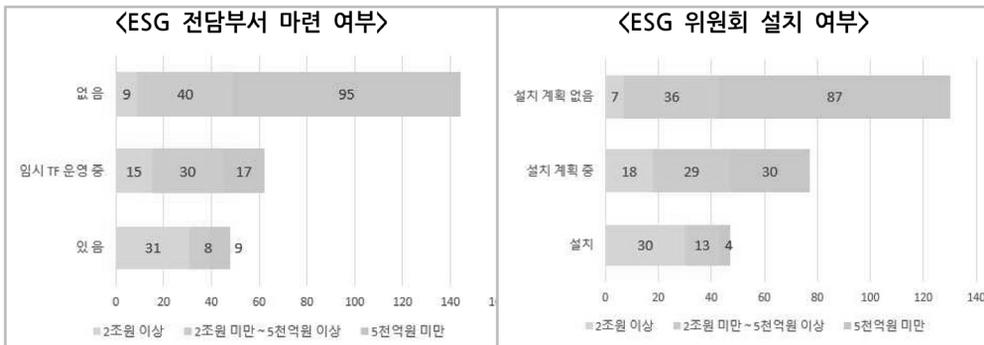


2) 혼란스러운 ESG 평가 : 기업 이미지 제고에 도움되지만 아직 기준 불명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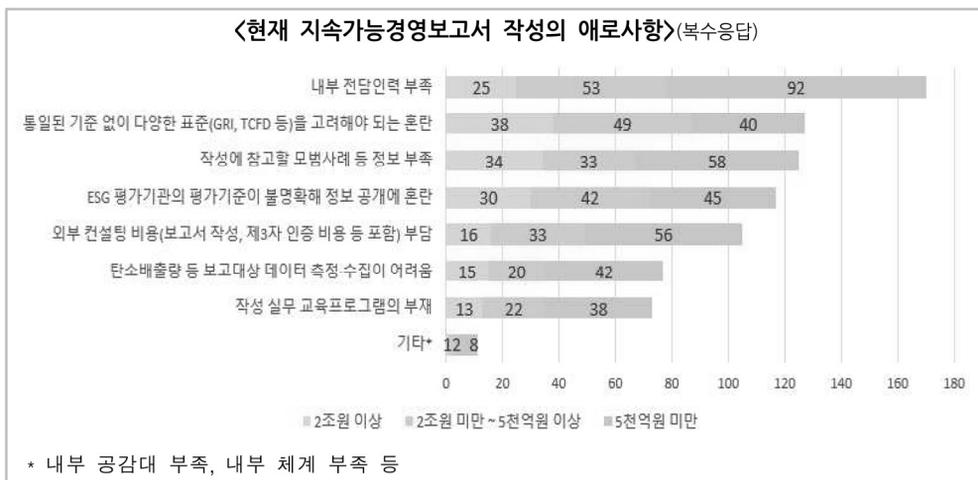
- ESG 평가기관의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88개사)는 답변이 명확하다(42개사)의 2배 이상

3) 기업 규모 작을수록 ESG 경영에 필요한 조직 갖추지 못한 회사 많아



4) ESG 정보 공개에 대한 기업 입장

-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 “내부 전담인력 부족”, “다양한 표준 고려해야 하는 혼란”, “정보 부족” 순



ESG 경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본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어떻게 이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 중 기업이 확신을 갖지 못 하는 부분이 ESG 경영의 대상과 조직 구성 그리고 조직의 역할이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을 가이드 형식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 II. ESG 경영을 위한 8가지 조직 유형(예시)

현재 ESG 경영을 모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을 분석해보면 ESG 경영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첫번째는 ESG 경영을 위한 조직으로 별도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할 것인지 여부이며, 두 번째는 ESG 경영을 위해 별도의 경영진 협의체를 구성할 것인지 여부다. 마지막으로 ESG 전담부서를 두되 기업 상황에 따라 개별 기업의 전담부서(개별 회사형)이거나 그룹 차원의 전담부서(그룹 통합형)가 될 것이다.

ESG 경영을 위한 조직 유형은 경영진의 의지, 조직의 규모와 현재 거버넌스의 구조, 조직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활동의 복잡성 등 내부적 요인과 국내외 규제와 같은 외부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자료에서 제시한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하면 총 8가지 예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각각의 유형은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기업은 이 중 자사에 가장 적합한 비스포크 타입이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구분 가능한 ESG 경영 조직의 8가지 유형>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b>이사회 내 위원회</b> 설치함                      설치하지 않음					
 <b>경영진 협의체</b> 구성함                      구성하지 않음					
 <b>ESG 전담부서 운영 방식</b> 개별 회사형                      그룹 통합형					

\* 이 외에 ESG 경영 조직을 보완하는 외부 컨설팅, 자문기관 설치 등이 고려될 수 있음.

상법상 이사회 내 위원회 제도는 위원회가 이사회 기능의 일부를 대신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과 신속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자료에서 이사회 내 위원회(예 : ESG 위원회)는 이사회의 역할을 '대신'하는 역할이라기 보다는 이사회를 '지원'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고자 한다.

## 1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의 장·단점

ESG와 관련된 중요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이루어지지만 ESG 경영전략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여 이사회의 ESG 경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해당 위원회의 구성에는 사업에 대한 이해, ESG 관련 전문성 등을 고려하되 필요하다면 자문그룹\*과 같은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 \* 자문그룹의 역할(예시) : 위원회 참석 등을 통해 전문적인 조언 제공 및 의사결정 지원, 전문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교육, 글로벌 동향 및 사례 등 공유
- (장점) ESG 경영의 대외적 선언 효과로 IR 차원에서 긍정적이며 ESG와 관련한 전문성 확보, ESG 전략 수립 등에 대한 충분한 숙의과정 확보 등이 가능함.
- (단점) 이사회 결정사항의 심의 과정이 추가됨으로 인해 신속한 경영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음.

### ✓ 이사회가 검토하여야 할 사항

- ESG 전략 수립 등 의사결정에 이사회 내 위원회의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
- (도움이 필요하다면) 새로운 ESG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위원회의 역할을 확장해야 하는지 여부
- 해당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경영위원회 등)의 역할에 미치는 영향
  - 해당 위원회의 주요 역할(위임할 권한의 범위)

### ✓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할 자료(예시)

- ESG 거버넌스 구축방안 제안서

## 2 경영진 협의체 구성의 장·단점

ESG 경영전략 실행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영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사회의 ESG 경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경영진 협의체에는 ESG 관련 사업부문의 임원들로 구성할 수 있다.

- (장점) 경영자의 경영 철학을 보다 투명하고 도전적으로 반영할 수 있음. 조직과 사업 운영의 이해도가 높은 경영진이 이사회의 주요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하고 신속한 경영 의사결정 및 과제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ESG 과제 추진 등과 관련하여 부서간 원활한 협업을 도모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단점) 내부 중심적 시각을 탈피하지 못 할 수 있음. 이런 경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 기구 등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 ✓ 이사회가 검토하여야 할 사항

- ESG 문제를 평가하고 관리할 권한과 전문성을 갖춘 경영진 수준의 ESG 협의체가 필요한지 여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 협업체 운영을 위한 협조 및 지원(ESG 전담부서, 실무부서)에 관한 사항
  - 협업체에 대한 운영 가이드 마련에 관한 사항
  - 협업체의 회의 및 내부 보고 빈도(주기)에 관한 사항
- 협업체의 이사회 직접 보고 필요성(필요하다면 보고 주기)에 관한 사항
  - 협업체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타 인적·물적 자원에 관한 사항
- <기타> 최고지속가능경영책임자(CSO·Chief Sustainability Officer) 지정 필요성

✓ 조직 설계와 관련하여 최고의사결정기구에 보고되어야 할 자료(예시)

- 현재 실무 조직 구조나 ESG 문제 전담 인력(팀) 등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자료

### 3. ESG 전담부서 운영 방식(개별 회사형/그룹 통합형)별 장·단점

#### (1) 개별 회사형

- (장점) 개별기업 특성에 맞게 ESG 경영체계를 구축하는데 용이함.
- (단점) 그룹 차원에서의 통합적인 전략 추진이나 다른 계열사와의 의사소통 및 업무 협조가 어려울 수 있음.

#### (2) 그룹 통합형

- (장점) 그룹에 적합한 기본 체계 및 목표를 설정하여 그룹사들에 동시 적용이 가능함. 계열사간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으며 업무 협조 및 조율이 원활해짐.
- (단점) 사업 단위(business units), 사업 운영의 위치, 관할구역이 다양한 경우 개별기업 고유의 상황을 고려하기 어려움.

### 4. 기타 - 외부 전문가집단 조력의 장·단점

#### (1) 외부 컨설팅을 통한 조력

- (장점) ESG 경영의 진단과 중요성 평가, 정보 공개까지 방대한 정보 수집, 심층적인 진단과 평가가 가능함. 또한, 컨설팅을 통해 추가적인 인증이나 제3자 검증 등의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단점)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최초 ESG 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이후 조직 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 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컨설팅 업체에게 유지 관리를 받아야 하므로 지

속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사회가 검토하여야 할 사항**

- 최소한의 내부 인력을 배치하고 컨설팅업체를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전담부서를 통해 내부적으로 ESG 경영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
- 외부 컨설팅 도움 없이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경우 보고 시준, 보고서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전문성과 인력이 확보되었는지 여부, 그 밖에 충분한 자원이 공급되는지 여부

(2) 자문그룹을 통한 조력

- (장점) ESG와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그룹을 설치하는 경우 글로벌 ESG 동향 등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자문그룹은 이사회 또는 ESG위원회를 직접 지원하거나 경영진 협의체, 전담부서를 지원할 수도 있음.
- (단점) 관리 및 비용 부담이 있으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함.

### III. ESG 경영을 위한 조직 설계 시 사전 검토

ESG 경영을 위한 효율적 조직 유형은 기업마다 다르다. 따라서 기업은 기존의 거버넌스 체제 등을 고려하여 자사에 적합한 거버넌스를 재설계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며 감독기관인 이사회에서 ESG 과제의 인식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사회 산하의 위원회 또는 대표이사 산하에 경영진 협의체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관련 사안들을 다루면서 ESG 과제를 기업의 전략과 연결할 수 있다.

III장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8가지 유형 중 '유형1'을 기준으로 조직 설계를 위한 사전 검토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 **사전 검토의 전제가 되는 조직 유형**



## 1. 이사회 역할

ESG 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더라도 ESG 이슈에 대한 중요 의사결정은 대부분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ESG 경영이 기업의 전략, 리스크 관리, 사업 계획 등 중요 의사결정에 핵심 ESG 요소를 내재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외의 조직들은 이사회 결정 전 과정에서 사전 검토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사회를 지원하게 된다.

이사회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ESG 핵심 이슈를 고려하기 위한 효율적인 구조가 무엇인지 분석해 본 후 이사회 보고 프로세스를 구축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 <이사회 보고 프로세스 구축의 핵심>

관련 조직(위원회, 협의체, 부서 등)의 역할과 책임, 보고 대상을 명확히 정하는 것

### <ESG 이슈 관리를 위한 이사회 역할>

ESG 위험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SG 위험의 영향을 식별</li> <li>• 기존 위험 식별 프로세스의 ESG 위험 식별 가능 여부를 평가</li> <li>• ESG 위험 식별을 위한 다양한 정보원(source)을 고려</li> <li>• 위험 식별 절차의 가정을 확인</li> <li>• 전사적 위험관리 체계에 ESG 요소를 통합</li> </ul>
ESG 위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의 우선순위 평가</li> <li>• 중대성 기준 적용</li> <li>• 이사회 ESG 평가 역량 향상</li> <li>• 중요 ESG 위험 논의</li> </ul>
ESG 위험 관련 의사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 수립 시 중요 ESG 위험 고려</li> <li>• ESG 위험 완화/적용 전략 이해</li> <li>• ESG 위험에 대한 경영진 책무 설정</li> </ul>
ESG 위험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 수준의 ESG 위험 감독 공식화</li> <li>• 위원회 간 ESG 심의 협조</li> </ul>
ESG 위험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 역할 공개</li> <li>• 주요 ESG 위험 공개</li> </ul>

## 2. 이사회 지원 조직

### (1) 이사회 내 위원회

이사회가 ESG 경영 추진을 위하여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기존 위원회 역할을 확장하기로 결정한 경우 ①정관 개정 필요성(위원회의 명칭), ②구성 및 ③역할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① 정관 개정의 필요성 판단

(i)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상법 제393조의2). 즉,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때 그 근거가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실무상으로는 정관에 감사위원회, 사외이사추천위원회 등 구체적인 위원회 명칭을 일부 규정하면서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 회사가 많다. 다만, 상법 제393조의2 제1항의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승인된 정관에서 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라는 취지로, 정관에서 위원회 명칭 및 권한(명칭으로 권한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명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준정관 제39조의2(위원회) ①이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
2. ……………
3. ……………
4.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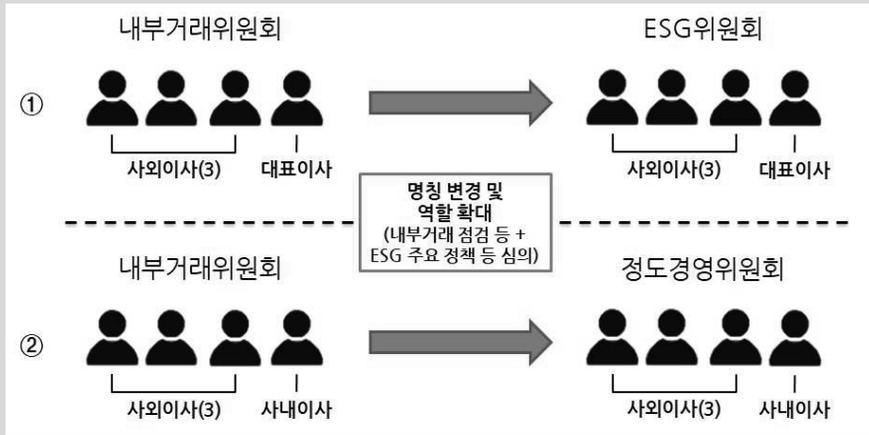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 ⑤ 제386조제1항·제390조·제391조·제391조의3 및 제392조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ii) 기존 위원회의 역할을 확장하는 경우

기존 위원회의 역할을 확장하는 경우 위원회의 권한 변경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이사회나 위원회 규정 개정이 필요한지, 위원회 명칭 변경이 필요한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위원회 명칭의 변경은 정관상 기존 위원회의 명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정관 개정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

✓ 기존 위원회의 역할 확장한 사례(2개사)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 ⑤ 제386조제1항·제390조·제391조·제391조의3 및 제392조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참고> ESG 관련 위원회 설치회사의 위원회 명칭 현황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중 이사회 내 위원회(ESG 관련)를 설치한 100개사 중 (이하 동일한 기준임.)



\* 기타 : ESG전략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 정도경영위원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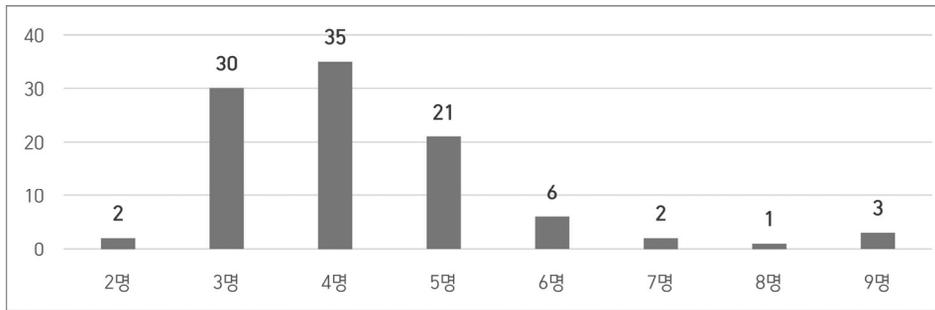
- ② 구성 : 등기임원(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외부 전문가(자문 역할) 등  
국내에서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ESG', '지속가능'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ESG 관련 위원회

설치 회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21년 6월말 기준으로 코스피 상장회사(797개사) 중 100개사(12.5%)가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위원회에 참여하는 총 위원 수는 4명인 경우(35개사)가 가장 많았다.

\* 상법상 이사회 내 위원회가 아닌 대표이사 산하에 경영진(미등기임원)으로 구성된 ESG 위원회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

\*\*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 즉 이사회가 다수로 구성된 회사에서 주로 설치함

<참고> ESG 관련 위원회 총 위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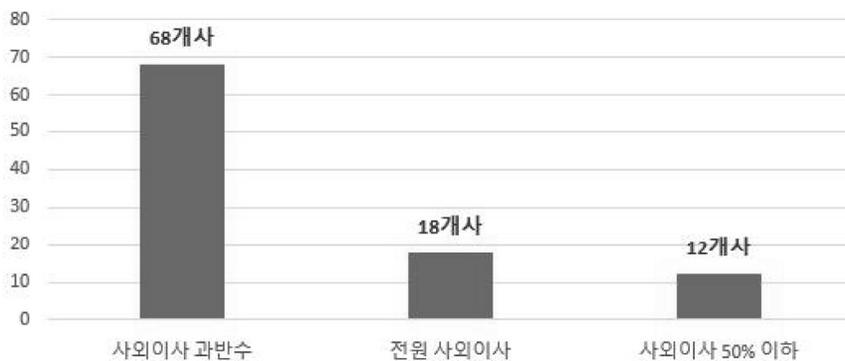
<참고> ESG 관련 위원회의 구성원 현황

사외이사	312명
사내이사	99명
기타비상무	11명
기타*	2명
합 계	424명
평균	4.2명

\* 기타 :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로 자문 역할을 함.

(사외이사 비중) 100개사 중 사외이사를 포함하는 위원회 구성은 98개사이며, 이 중 사외이사 수를 과반으로 구성한 회사가 86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회사는 18개사였다.

<참고> ESG 관련 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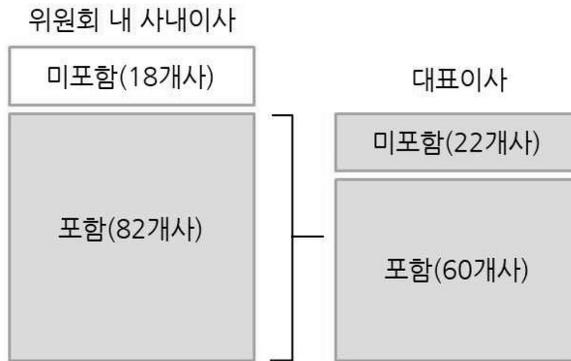


(대표이사 포함 여부) 100개사 중 사내이사를 포함하는 위원회는 82개사이며, 이 중 60개사는 대표이사가 참여하고 있다.

사내이사는 위원회에 1명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68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2명을 포함(11개사)하고 있다.

<참고> ESG 관련 위원회의 대표이사 참여 현황

(단위 : 개사)



사내이사 수	없음	1명	2명	3명	총합계
회사 수	18	68	11	3	82
대표이사 포함 회사 수	-	50	9	1	60

③ 역할 : ESG 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평가, 기타 ESG 관련 주요 안건 심의

S사 사례 : ○○○ 사항을 “검토” 한다.

ESG 전략 방향	ESG 관점 리스크 관리	ESG성과점검	지배구조 체계개선	기타 ESG 관련이슈

K사(지주사) 사례 : ○○○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그룹 ESG 전략 및 정책수립	연간 기부금 운영한도 설정	기타 이사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N사 사례 : ○○○ 사항을 “결정 및 승인” 하며, ○○○ 사항을 “심의” 한다.

(결정 및 승인)	(심의)	
ESG 목표 설정 및 실행계획	ESG 활동 관리·감독·평가·검토	ESG 정보 공시

S사 사례 : ○○○ 사항을 “사전 검토” 하며, ○○○ 사항을 “토의할 수 있다.”

(사전 검토)	(토의)
회사의 중장기 전략 회사의 연간 경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이사회 의 중요 의사결정사항 (예 : 자기자본 1% 이상의 투자 결정, 조직재편, 배당, 신주 발행 등)	필요에 따라 주요 경영 전략, 사회 공헌활동 등에 관한 사항

(2) 경영진 협의체

ESG와 관련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고(설치하지 않았더라도) 대표이사 산하에 경영진 수준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사회(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지원하고 경영자의 경영철학을 반영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i) 구성

- 주로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ESG 관련 부서장 등으로 구성된다.

✓ CEO 산하 경영진 협의체 구성 사례

- (위원장) 전략관리총괄 사장
- (위 원) 경영전략본부장, 관리·대외부문장, 안전환경부문장, 공장혁신·조정부문장, 준법지원인 등이 참여해 총 7명으로 구성
- (운 영) 매 분기마다 정례회의를 열어 ESG 경영활동에 대한 논의, 평가, 심의
- \* 참고로 해당 사례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으면서 경영진 협의체가 이사회를 지원하는 형태임.

(ii) 업무

- 경영진 협의체는 주로 ESG 경영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며, ESG 관련 모니터링과 평가를 담당하고 이를 ESG 위원회나 이사회에 보고한다.

(3) ESG 전담부서(개별 회사형)

ESG 경영을 위해서는 최고이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실무조직이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부서에 ESG 담당 업무를 추가하거나 ESG 과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기도

한다.

어떤 방식이든 ESG 대응에 있어 중요한 점은 ESG 담당 부서가 단독으로 ESG 과제를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i) 구성

- ESG 경영 추진 및 정보 공개(보고서 발간 등) 업무를 수행할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하여 ESG 관련 각 실무부서들을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부서간 소통 및 업무 지원 프로세스를 마련하여야 체계적인 ESG 이슈 대응이 가능하다.
- 아직 ESG 경영 추진 및 정보 공개 수준이 초기 단계(예 :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관련 정보 공개)라면 전담부서 형태가 아닌 각 사업부 내 담당자를 지정하여 TF를 구성하는 방법으로도 운영 가능할 것이다.
- 반대로 ESG와 관련된 실무부서가 많고 정보 공개의 범위가 넓은 경우 전담부서는 실무부서를 중점 분야별 분과위로 세분화하여 운영·관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ii) 업무

- 전담조직은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이사회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지원하는 역할(ESG 목표 및 실행계획의 이행 관리, 점검 및 평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실무 등)을 수행한다.

(4) ESG 조직 설계 관련 정보 공개

ESG와 관련하여 조직 체계를 구성하고 인력 및 예산을 배분하고 실행과 성과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정하였다면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IV. ESG 경영을 위한 실무 절차

IV장에서는 ESG 경영 추진 과정을 7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실무 업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실무 절차를 질의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단계별로 실무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따라서 각 단계별 질의 사항을 참고하여 우리 조직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순서·방법으로 조정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중요성(materiality) 평가의 이해>**

ESG를 반영한 경영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가치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증가하면서 ESG 정보의 공개 요구와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ESG라는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고 기업 활동 전반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ESG 이슈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슈(이하 '핵심 이슈')를 선별하여 대응해야 한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기업의 경영 전략과 연관성이 높은 핵심 이슈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중요성(materiality) 평가가 필수적이다. 이 프로세스를 통해 기업 전략과 관련된 주제를 식별할 수 있을뿐 아니라 명확하고 균형 잡힌 평가 기준을 도출할 수 있다.

중요성 평가는 중요 주제와 조직 전략과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핵심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중요성 평가 과정은 구체적으로 ESG 이슈를 '인지'하고 핵심 이슈를 '선정'하는 2개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ESG 이슈를 누락시키지 않고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지' 절차를 체계적으로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SG 정보공개 가이드스(거래소)에서는 중요성 평가 절차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설명하고 있다. (본 자료 기준으로 '인지' 및 '선정' 단계)

✓ **중요성 평가 절차**  
 경영 기초자료 수집 및 검토 ⇒ 국내외 ESG동향 분석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중요 주제 선정

<중요성(materiality)의 개념>

국제적 기구·조직에서 정의하는 '중요성(materiality)'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중요한 정보란 만약 누락 또는 오류가 있거나 모호하게 기술되는 경우 재무제표에 기초한 이용자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말한다.

국제통합보고위원회 (IIRC,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중요한 사항은 조직의 단기·중기·장기적 관점에서 가치창출 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중요한 주제란 조직의 중요한 경제적, 환경적 및 사회적 영향을 반영하는 주제 또는 이해관계자들의 평가와 의사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제를 말한다.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 (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볼 때 누락된 사실이 공개되었다면 정보의 전체적인 맥락이 상당히 변경되었을 실질적인 개연성이 있는 경우 그 정보는 중요하다.

AccountAbility의 AA1000 AP(책임 원칙)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중요성의 원칙을 제시한다. '각 주제(Topic)가 조직과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가장 관련성이 높은 지속가능성 주제를 식별하고 우선 순위를 지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중대 주제는 단기, 중기 및/또는 장기적으로 조직 및/또는 조직의 이해관계자의 평가, 결정, 조치 및 성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주는 주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1. ESG 이슈 목록 작성

자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ESG 이슈를 '인지'하는 것이 ESG 경영의 첫 번째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자료에서의 '인지' 과정은 단순히 인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담부서가 마련한 'ESG 이슈 목록'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사적으로 우리 회사의 ESG 이슈를 함께 파악해가는 과정이다.

'ESG 이슈 목록'의 마련은 실무부서에서 혼동 없이 ESG 이슈를 인지하도록 하고, 누락이나 중복 없이 전담부서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적이다.

순서	질의 내용	
ESG 이슈 목록 작성	표준선정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우리 회사에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개 표준(또는 평가기준) 및 프레임워크는 무엇입니까?

		동종업계 회사들은 어떤 표준 및 프레임워크, 평가지표 등을 고려합니까? 정보공개 표준 등을 정의, 분류하고 동종업계 사례를 참고하여 자사가 고려할 표준 등을 선정하였습니까?
	이슈 정의 및 분류	동종업계 회사들의 핵심 이슈는 어떻게 정의되고 있습니까? 동종업계 핵심 이슈 선정 사례 등을 참고하여 자사의 이슈를 정의하고 이슈별로 선정된 표준 등의 세부 항목을 분류하였습니까?
	공유	이슈 목록이 전사적으로 공유되었습니까? 실무부서가 이해하기에 충분합니까?

-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우리 회사에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개 표준(또는 평가기준) 및 프레임워크는 무엇입니까?

<p>(거래소 가이드스) (29~38페이지)          주요 정보공개표준 제시 : GRI, IR Framework, TCFD, SASB          권고 지표 : 조직(3), 환경(9), 사회(9) 분야별로 지표 제시          * 기업은 '공개 또는 설명(respond or explain)'의 원칙에 따라 지표를 공개하고, 만약 특정 지표가 생략되는 경우 주석 등을 이용하여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지표의 공개 기준 : 연간 기준, 이와 다른 경우 대상 기간을 따로 밝힘          참고 자료 : 세계거래소연맹(WFE) ESG Metrics, TCFD, GRI 공개지표</p>
---

- 거래소 가이드스는 상장회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대표 표준을 제시한 것이므로 회사는 다른 표준이나 프레임워크, 평가기관(MSCI, S&P, KCGS, 국민연금, CDP(기후 변화) 등)의 지표 등을 추가적으로 함께 고려할 수 있다.

**<고려 가능한 표준 또는 기준 예시>**

성과지표	실행방안 가이드라인	평가기관의 평가지표
GRI, SASB, WEF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공통지표	TCFD, ISO26000, IR Framework	MSCI, FTSE, KCGS, 국민연금

<참고> 자료에 첨부된 권고 지표(거래소), 표준 인덱스, 평가지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국제기준 관련 참고사항>**

<p>- ESG 중 '인권'과 관련하여 'OECD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및 이것의 실사 지침인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과 UN인권경영 가이드라인(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및 이에 대한 해설서인 THE CORPORATE RESPONSIBILITY TO RESPECT HUMAN RIGHTS )'* 등이 중요한 국제기준으로 인정되고 있음.          * 현재 EU에서 논의되는 Social Taxonomy와 ESG due diligence 법제화 논의 등에서 가장 기본</p>
---

이 되었던 국제 기준임. 법무부에서 마련한 '인권경영 표준지침(안)(2019)'도 이러한 OECD와 UN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 ESG 중 '반부패'와 관련한 주요 국제기준으로는 OECD 뇌물방지협약, UN 글로벌콤팩트 등이 있음.  
\* 'OECD 뇌물방지협약'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를 범죄로 규정한 최초의 국제 협약이며, 국내에서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방지법' 제정·시행 중, 앞의 표에서 소개된 'UN 글로벌콤팩트'는 기업의 뇌물 등 부패 관련 대응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자료에서는 ESG와 관련된 인권, 반부패 등과 관련한 주요 국제기준들을 폭넓게 포함하지 않으며, ESG 경영을 시작하려는 개별 회사가 'ESG 정보공개 가이드선스'에서 제시하는 대표 기준을 고려하여 ESG 경영을 준비함을 전제함.

◎ 동종업계 회사들은 어떤 표준 및 프레임워크, 평가지표 등을 고려합니까?

✓ 사례 : 고려 중인 공개 표준(평가지표) 및 프레임워크

<H사(전력공급업)의 작성 원칙>

본 보고서는 국제 지속가능경영 표준 가이드라인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의 핵심적(Core)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하였으며, ISO 26000,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원칙 및 IIRC(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의 국제 통합보고 프레임워크를 참고하였습니다.

또한, TCFD(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에서 제시하는 권고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산업 특성에 따른 중요 이슈를 반영하기 위해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산업 표준을 고려하였습니다

◎ 정보공개 표준 등을 정의, 분류하고 동종업계 사례를 참고하여 자사가 고려할 “표준 등을 선정” 하였습니까?

◎ 동종업계 회사들의 “핵심 이슈” 는 어떻게 정의되고 있습니까?

✓ 사례 : 핵심 이슈 선정

<P사(철강업)의 10개 핵심 이슈>

- |                 |                |             |
|-----------------|----------------|-------------|
| 1. 사업장 안전/보건 강화 | 2. 기후변화 대응     | 3. 생산경쟁력 확보 |
| 4. 신사업투자        | 5. 친환경 제품 혁신   | 6. 기술개발 강화  |
| 7. 대기환경 개선      | 8. 부산물 자원화     | 9. 임직원 역량개발 |
|                 | 10. 선제적 리스크 관리 |             |

<L사(전기전자업)의 10개 핵심 이슈>

- |                             |                              |
|-----------------------------|------------------------------|
| 1.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 2. 지역사회 기업 특성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강화 |
| 3. 임직원 안전한 사업장 운영 및 안전경영 추진 | 4. 임직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         |
| 5. 공급망 지속가능성 강화             | 6.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개발           |
| 7. 임직원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 조성       | 8. 환경 기후변화 대응                |
| 9. 임직원 인권경영 추진 및 확산 노력      | 10. 경영일반 이해관계자 소통 활동 강화      |

- 동종업계 핵심 이슈 선정 사례 등을 참고하여 자사의 이슈를 정의하고 “이슈별로 선정된 표준 등의 세부 지표 등을 분류” 하였습니까?

✓ 예시 : ESG 이슈 목록 만들기

이슈	지표분류	핵심성과지표 (KPIs)				
		GRI		거래소	SASB*	TCFD 고려
기후 변화 대응	온실가스 배출	305-1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1)	●	●	지배구조   전략
		305-2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2)	●	●	
		305-3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3)			
		305-4	온실 가스 배출 집약도	●	●	리스크 관리   측정기준 및 목표치/성과
		305-5	온실 가스 배출량 감축			
		305-6	오존층 파괴 물질 배출량			
		305-7	질소 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및 기타 중요한 대기 배출량			

●는 GRI와 공통 지표에 해당 \* 해당 업종에 따라 다름

- 이슈 목록이 “전사적으로 공유” 되었습니까? 실무부서가 이해하기에 충분합니까?
- 이슈 목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사적 교육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단순히 실무부서에 공유하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 이하 내용에서는 개별 표준 및 프레임워크에 대해 따로 설명하지 않으므로 글로벌 표준 등의 개요는 '첨부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 표준 및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해>

ESG와 관련된 공개 표준이나 프레임워크 등(이하 '표준')에는 GRI, IR Framework, SASB, TCFD 등이 있음. 여러 표준을 비교 검토하다 보면 어떤 표준 간에는 많은 항목이 중복되기도 하고, 어떤 표준 간에는 완전히 다른 형태를 띠는 경우도 있음.

ESG 공개 표준 개발 기관들은 협의체 구성이나 합병을 통해 글로벌 공개 표준을 통합하려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IFRS 재단은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SSB) 설립을 통해 글로벌 비재무정보 표준을 만들 예정임.

그러나, 통일된 표준이 나오기 전까지는 개별 회사가 다양한 표준을 정의하고 분류한 뒤 자사가 고려할 표준을 결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임.

<주요 표준 및 프레임워크의 특징>

조직	표준 및 프레임워크	주요 대상		주요 성능			사전 결정된 지표인 지 여부
		주주	이해 관계자	위험	가치 창출 /영향 평가	지속 가능성	
GRI	GRI 스탠다드		○			○	○
IIRC	통합보고<IR> 프레임워크 보고 원칙(7개, 아래) 및 구성요소(8개) 1. 전략적 집중성과 미래지향성 2. 정보의 연결성 3.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성, 4. 중요성 5. 간결성, 6. 신뢰성과 완전성, 7. 일관성과 비교가능성	○			○		
TCFD	TCFD 권고안 및 관련 추가 지침 —구하고 있으며, 권고사항은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측정기준 및 목표라는 4가지 영역, 11개 항목으로 구성	○		○			
SASB	SASB 스탠다드 기업의 활동에 있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산업별로 특화하고 동종업계의 타 기업과 비교 가능할 수 있는 핵심성과지표 제시 11개 산업군의 별도 지침 및 77개 산업별 지표	○		○			△*

\* 특정 부문에 대한 중요 영향/지표를 포함하지만 기업 자체적인 중요성 결정에 따름

현재 각 표준은 고유의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대표 표준이 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른 표준과 일치시키기 위한 작업을 해왔음. 따라서 아래와 같이 항목이 중복되거나 중복되지 않더라도 다른 표준과의 연결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표준등 간에 중복되는 사례>

- GRI, SASB, CDP 등 : 공개 항목의 상당 부분 중복
- UN PRI : GRI와 연계되어 있으며 SDGs(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포함
- DJSI\* : CDP의 기후변화 관련 질문 및 SASB의 공개 항목과 일치
  - \* 다우존스 지속가능성지수
- 기후변화에 특화된 CDP와 TCFD는 거의 완벽하게 일치
  - \* CDP 설문에 완전한 답변을 제출하는 회사라면 TCFD 요구사항도 모두 충족되는 것임.

<표준등 간에 중복되지 않는 사례>

- SASB와 TCFD

기후 변화를 핵심 이슈로 식별하는 회사의 경우 SASB 표준은 TCFD 권장 사항과 일부 일치(측정기준 및 목표)하지만, 거버넌스, 전략, 위험 관리와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TCFD 권장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SASB 응용 지침을 제공함.

※ SASB 표준은 TCFD의 '측정기준 및 목표'의 (a), (c)와 가장 일치함.

	거버넌스		전략			위험 관리			측정기준 및 목표		
SASB 표준	G a)	G b)	S a)	S b)	S c)	RM a)	RM b)	RM c)	MT a)	MT b)	MT c)
SASB 응용 지침	◇	◇	◇	◇	◇	◇	◇	◇	◇	◇	◇
산업별 표준									◇		◇

◇ : TCFD 권고사항과 일치

- G a) 기후 관련 문제를 감독하는 조직 이사회의 역할을 공개합니다.
- b) 기후 관련 문제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을 공개합니다.
- S a) 조직이 단기, 중기 및 장기에 걸쳐 식별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공개합니다.
- b) 조직의 비즈니스, 전략 및 재무 계획에 대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영향을 공개합니다.
- c) 2 ° C 이하 시나리오를 포함한 다양한 기후 관련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조직 전략의 탄력성을 공개합니다.
- R a) 기후 관련 위험을 식별하기 위한 조직의 프로세스를 설명합니다.
- b) 기후 관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의 프로세스를 설명합니다.
- c) 기후 관련 위험을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조직의 전체 위험 관리에 통합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M a) 조직의 전략 및 위험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평가하기 위해 조직에서 사용하는 지표를 공개합니다.
- b) Scope 1, Scope 2 및 Scope 3에 해당하는 경우 온실 가스(GHG) 배출량 및 관련 위험을 공개합니다.
- c) 조직에서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목표와 목표에 대한 성과를 설명합니다.

(출처 : TCFD Implementation Guide, CDSB)

<참고 : GRI와 TCFD, IR 프레임워크와 TCFD>

- GRI 표준을 채택하고 기후 변화를 중요한 주제로 식별하는 회사의 경우 TCFD 권장사항(4가지 핵심 요소)의 대부분을 충족할 수 있으나, 일부(예 : 전략 (c), 위험 관리 (c))의 경우 GRI 표준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음.

- <IR> 프레임워크는 다양한 기후 시나리오, 즉 전략 (c)를 고려한 조직 전략의 탄력성에 대한 공개를 특별히 요구하지 않음. 또한, 기후 관련 특정지표나 목표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TCFD 권장 공개를 완전히 충족하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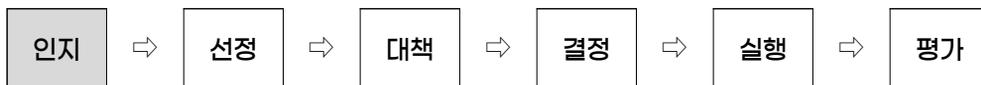
대표 표준 중에서 GRI는 회사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준으로 ESG와 관련된 공개 요구 항목을 나열하고 있다. 이슈 목록 작성 단계에서 '예시 : ESG 이슈 목록 만들기'(26p 박스 참조)는 GRI 지표를 모두 나열한 뒤 거래소 가이드스에서 제시하는 권고 지표, 주요 표준과의 중복을 확인하고, TCFD와의 연결을 고려한다고 전제할 것이다. IR 프레임워크의 경우 기업 보고의 표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TCFD 프레임워크와 유사하지만 TCFD 프레임워크를 고려하는 경우 IR 프레임워크는 대부분 충족될 수 있어 따로 표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작업 이후 회사는 자체적으로 이슈를 정의하고 이슈별 목록을 다시 분류, 정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2. 인지

ESG 이슈의 '인지' 단계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전사적(전담부서와 실무부서, 경영진 등)으로 자사와 관련된 ESG 이슈가 무엇인지 자사의 대응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보는 과정을 의미한다.

1. 'ESG 이슈 목록(예: 50개)'을 기준으로 우리 조직과 관련된 ESG 이슈를 파악한다.
  - <절차> 이슈 목록 공유(전담부서) → 이슈 목록에 관련 이슈(규제, 거래처 요구 등) 작성(실무부서) → 내용 취합(전담부서)
2. 'ESG 이슈 목록'을 기준으로 동종업계의 벤치마킹 사례를 조사한다.
3. ESG 이슈와 벤치마킹 사례를 고려하여 이슈 Pool을 선정(예: 20개)한다.
4. 이슈 Pool 내에서 구체적인 내부 현황을 파악하고 경쟁사와 비교 진단한다.
5. 인지 과정에서의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한지 검토한다.



※ 중요성 평가 과정 중 하나인 인지 단계에서는 외부 컨설팅사 등에게 조력을 받는지 아니면 회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지에 따라 수집 정보의 범위, ESG 동향 분석 수준(경쟁사와 자사의 세부평가결과 비교 등)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II. ESG 경영을 위한 8가지 조직 유형(예시)'에서 언급된 '외부 조력' 여부에 따라 상황에 맞게 정보 범위와 분석 수준을 적절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순서	질의 내용
① ESG 이슈 파악	국내의 정책 동향 및 법률 개정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거래처 및 투자자의 직접적인 ESG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그 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자사의 ESG 관련 이슈는 무엇입니까?
	ESG 이슈를 취합하여 이슈 목록에 반영하였습니까?
↓	
② 동종업계 벤치마킹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 경쟁 기업들의 ESG 대응 수준을 파악하였습니까?
	동종업계 내 경쟁사 및 모범사 사례 조사를 통해 자사가 벤치마킹해야 할 내용을 이슈 목록에 반영하였습니까?
↓	
③ 이슈 Pool 선정	전체 이슈 목록(예: 50개) 중 ESG 이슈와 동종업계 벤치마킹 사례를 고려하여 자사의 이슈 Pool(예: 20개)을 정하였습니까?
	이슈 Pool은 내부적으로 공유되고 합의되었습니까?
↓	
④ 자사 현황 파악 및 진단	이슈 Pool을 기준으로 수집해야 할 정보의 범위(예: 국내 및 해외 전 사업장)는 어디까지입니까?
	이슈 Pool을 기준으로 자사의 현황을 파악하였습니까?
	자사의 현황과 경쟁사의 수준을 비교하여 진단하였습니까?
↓	
프로세스 개선 검토	중요성 평가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보고를 위한 프로세스에 개선(예: 조직 개편, 인원 충원, 외부 네트워크 확장)이 필요합니까?

### ① ESG 이슈 파악

● 국내외의 정책 동향 및 법률 개정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실무부서	- 업무와 관련하여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 및 시행 일정, 기타 관련 정책 및 법률에 따른 규제들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회사에 특히 중요한 규제가 있습니까?
전담부서	- 실무부서에서 파악된 중요한 규제 현황이 정리되었습니까?

- 국내외의 정책 및 법률에 따른 법규 준수 필요성은 ESG 이슈가 자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예시**

**E(환경)** : 환경정보 공개 의무, 관련법 규제 변화(배출권 거래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해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

**E(기후변화 관련)** :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격 인상, 강화된 배출량 보고 의무, 기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권한 및 규제, 소송에 대한 노출

**S(사회)** : 정보보호 공시 의무, 관련법 규제 변화(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파견법, 제조물책임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G(지배구조)** :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26년 초코스피 상장사), 이사회 다양성 의무('22년 8월 시행), 관련법 규제 변화(상법, 자본시장법, 청탁금지법, 외부감사법 등)

**ES**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화('30년 초 코스피 상장사)

◎ 거래처 및 투자자의 직접적인 ESG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실무부서	- 거래처로부터 중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까?
	- 투자자로부터 중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까?
전담부서	- 그 외 이해관계자(고객, 직원, 지역사회 등)부터 중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까?
	- 실무부서에서 파악된 중요 요구사항이 정리되었습니까?

사례

<거래처 요구>

애플 : 전세계 협력업체와 '탄소 배출 저감 프로젝트' 가동  
 BMW : 5세대 배터리 셀 납품업체와 계약 시 제품 생산에 친환경 전력만을 사용하도록 함  
 EU지역 : 해당지역 기업의 공급망 인권 및 환경 실사 추진

<투자자 요구>

국민연금 : ESG 투자 정책, ESG 평가에 따른 반대 의결권 행사 및 대화 요구 등  
 영국 자산운용사 리걸앤드제너럴(LGIM) : 기후 변화의 위험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중국 은행, 미국 AIG 등 4개 회사 매각 발표

◎ 그 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자사의 ESG 관련 이슈는 무엇입니까?

실무부서	- 주주, 지역사회, 고객, 언론 보도 등 회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에 제기한 문제가 있습니까? 특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전담부서	- 실무부서에서 파악된 중요한 문제는 최근 기준으로 수집되고 관리되고 있습니까?

◎ ESG 이슈를 취합하여 이슈 목록에 반영하였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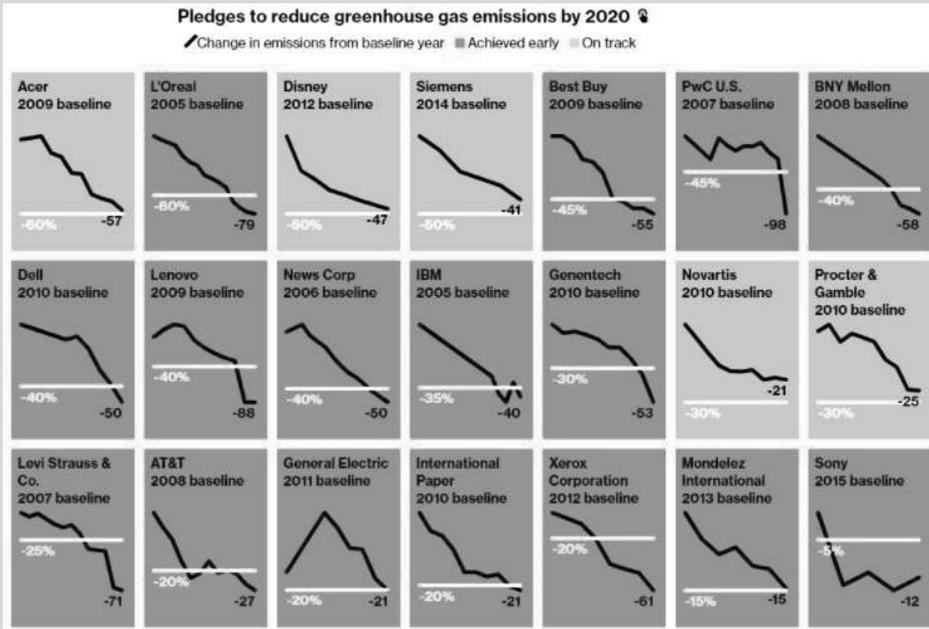
예시 : 이슈 목록\_ESG 이슈 파악

이슈	지표	핵심성과지표 (KPIs)			관련 ESG 이슈	
		GRI	거래소	SASB		
기후 변화 대응	온실 가스 배출	305-1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1)	●	●	
		305-2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2)	●	●	
		305-3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3)			
		305-4	온실 가스 배출 집약도	●	●	
		305-5	온실 가스 배출량 감축			
		305-6	오존층 파괴 물질 배출량			
		305-7	질소 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및 기타 중요한 대기 배출량			

## ② 동종업계 벤치마킹

-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 경쟁 기업들의 대응 수준을 파악하였습니까?

사례 : 미국 기업 21개사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 달성 현황



주: baseline은 목표 기준 연도를 뜻함(예: Acer사의 목표는 2009년 대비 탄소 배출 60% 감축)

자료: Bloomberg.com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동종업계 내 경쟁사 및 모범사(비교 대상사)의 주요 이슈, 대응 전략 등은 무엇입니까?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개 참고 사이트>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 (KIND) (보고서명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https://kind.krx.co.kr/>

한국표준협회 대한민국지속가능성지수 (지속가능성보고서 DB)

<https://www.ksa.or.kr/ksi/index.do>

※ '국내 기업에 한정할 필요는 없으며, 해외 기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동종업계 내 경쟁사 및 모범사 사례 조사를 통해 자사가 벤치마킹해야 할 내용을 이슈 목록에 반영하였습니까?

예시 : 이슈 목록\_동종업계 벤치마킹 사례 조사

이슈	지표	핵심성과지표 (KPIs)			동종업계 벤치마킹	
		GRI	거래소	SASB		
기후 변화 대응	온실 가스 배출	305-1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1)	●	●	경쟁사 A : TCFD 프레임워크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이행방안 수립 중 모범사 B : 2050년까지 2014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75.6% 감축, 폐기물 재활용률 100% 달성
		305-2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2)	●	●	
		305-3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3)			
		305-4	온실 가스 배출 집약도	●	●	
		305-5	온실 가스 배출량 감축			
		305-6	오존층 파괴 물질 배출량			
		305-7	질소 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및 기타 중요한 대기 배출량			

### ③ 이슈 Pool 확정

- 전체 이슈 목록(예 : 50개) 중 ESG 이슈와 동종업계 벤치마킹 사례를 고려하여 자사의 이슈 Pool(예 : 20개)을 정하였습니까?

예시 : 이슈 목록\_동종업계 벤치마킹 사례 조사

이슈	지표	핵심성과지표 (KPIs)			관련 ESG 이슈	동종업계 벤치마킹	이슈 Pool 포함여부
		GRI	거래소	SASB			
기후 변화 대응	온실 가스 배출	305-1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1)	●	●		○
		305-2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2)	●	●		○
		305-3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3)				×
		305-4	온실 가스 배출 집약도	●	●		○
		305-5	온실 가스 배출량 감축				×
		305-6	오존층 파괴 물질 배출량				×
		305-7	질소 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및 기타 중요한 대기 배출량				×

- 이슈 Pool은 내부적으로 공유되고 합의되었습니까?

④ 자사 현황 파악 및 진단

● 이슈 Pool을 기준으로 수집해야 할 정보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 ESG 보고는 개별 회사 기준입니까? 아니면 국내외 주요 자회사 등을 포함하는 기준입니까?
- 협력사, 자회사 등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까? 필요하다면 수집해야 하는 정보는 무엇입니까?

예시 : 이슈 Pool\_정보 수집 범위

이슈	지표	핵심성과지표 (KPIs)			ESG 보고(공개) 범위				
		GRI		거래소	SASB	국내 사업장A	해외 사업장B	자회사 C사	협력사 D사
기후 변화 대응	온실 가스 배출	305-1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1)	●	●	○	○	×	×
		305-2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2)	●	●	○	○	×	×
		305-4	온실 가스 배출 집약도	●	●	○	×	×	×

사례

이슈	지표	핵심성과지표 (KPIs)			ESG 보고(공개) 범위				
		GRI		거래소	SASB	국내 사업장A	해외 사업장B	자회사 C사	협력사 D사
기후 변화 대응	온실 가스 배출	305-1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1)	●	●	○	○	×	×
		305-2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2)	●	●	○	○	×	×
		305-4	온실 가스 배출 집약도	●	●	○	×	×	×

<보고범위(보고경계) 설정 사례>

범 위	공 개 내 용
본사 및 국내 사업장	본 보고서의 재무 데이터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Korean International Finance Reporting Standards)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비재무 데이터의 경우 A, B, C 3개 부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본사 및 국내 전 사업장을 포괄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보고 범위는 A 본사 및 국내 전 사업장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재무 정보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작성하였으며, 보고 범위 및 경계에 주의가 필요한 일부 정보는 별도 주석을 기재하여 독자의 편의를 향상하였습니다.
	연결기준 국내 및 해외 사업장의 경제, 환경, 사회적 활동과 성과, 일부 데이터는 보고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세 보고 범위는 각 데이터의 각주 참조
그룹 전체	본 보고서에는 국내 및 일부 해외 생산·판매 사업장의 경제, 환경, 사회 성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 범위를 연결기준으로 하였으나, 일부 지표의 경우 국내 사업장으로 그 범위를 국한하였습니다.
	보고 범위는 A, B, C 등 총 N개 그룹사를 대상으로 하며, 이는 영업수익 기준으로 N%에 해당됩니다. 보고 범위에 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과 사회적 가치 활동은 그룹차원의 정성적 성과 보고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포괄적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 성과 지표인 매출액의 경우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사 및 계열사 전체 또는 일부	본 보고서의 보고 범위는 A홀딩스 본사 및 국내 모든 사업장을 포괄하며, 일부 지속가능성과에 대해서는 A그룹 계열사 및 해외 사업장의 자료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A와 2021년 A로 편입된 B투자를 제외한 N개 계열사(C,D...)의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성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보고범위가 상이한 정량적 성과는 해당 범위를 별도로 표기하였습니다.
기타	- 재무 데이터 : 연결실적으로 보고함(별도 기준일 경우 주석 처리)
	- 사회 데이터 : 본사 및 국내 지점 그리고 해외 현지법인과 지점·사무소 포함
	- 환경 데이터 : 데이터 취합에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어 보고범위를 국내 사업장으로 제한
	- 자회사 활동의 경우 각 자회사명을 명시
정량적인 성과의 경우 추세 파악을 위해 최근 3개년도 데이터를 기재하였습니다. A의 B사업장을 비롯하여 C사업장과 D사업장의 경제, 환경, 사회 성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공개된 데이터의 일부는 해외법인, 자회사, 공급망의 성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이슈 Pool을 기준으로 자사의 현황을 파악하였습니까?

사례

이슈	지표	핵심성과지표 (KPIs)			ESG 보고(공개) 범위				
		GRI		거래소	SASB	지배구조	전략 (영향)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치
기후 변화 대응	온실 가스	305-1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1)	●	●	○	상	중	○
		305-2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2)	●	●				○
	305-4	온실 가스 배출 집약도	●	●	×				

- 지배구조 : 이사회 및 경영진이 해당 이슈의 위험과 기회 요인을 관리·감독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전략 : 해당 이슈의 단/중/장기 위험 및 기회가 경영·재무 계획에 미치는 영향 정도
- 리스크 관리 : 해당 이슈의 위험을 식별·평가·관리하기 위한 절차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 통합 여부
- 지표 및 목표치 : 해당 이슈의 각 지표별 목표치 및 성과(실적) 관리 여부

◎ 자사의 현황과 경쟁사의 수준을 비교하여 진단하였습니까?

예시 : 이슈 Pool\_자사 현황 진단(동종업계 비교 분석)

예시 : 이슈 Pool\_자사 현황 진단(동종업계 비교 분석)

이슈	지표	핵심성과지표 (KPIs)	동종업계 비교		현황 진단 결과
			경쟁사 A	대표 모범사 B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배출	Scope1, Scope2, 집약도			
친환경 제품 생산	생산제품	판매량			
	생산제품	판매량			
신사업 투자	신사업	투자액, 생산능력 등			
정보보호	보안	정보 유출 건 수, 보안 개선 건 수 등			

경영진에게 보고되어야 할 사항(예시)

- 회사 ESG 경영 현황 진단 자료(주요 기업과의 격차 분석 등)

### ⑤ 프로세스 점검 및 개선

◎ 중요성 평가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보고를 위한 프로세스에 개선이 필요합니까?

<프로세스 점검>

- 조직 개설이나 인원 충원이 필요합니까?
- 각 부서와 전담부서간 정보 수집 및 보고를 위한 프로세스의 보완이 필요합니까?
- 해당 프로세스를 관리, 감독할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 자료 수집 주기, 데이터의 단위, 외부기관의 발표시기 등이 상이함을 고려하여 주기적인 자료 구축계획이 수립되고 관리됩니까?

#### 개선 필요사항 예시

- ○○○팀의 ○○○ 데이터 수집 및 관리 필요
- ○○○팀의 ○○○ 계획 수립 필요
- ○○○팀의 ○○○ 데이터 관리 시 단위 통일 필요

<수집 정보가 변경 또는 추가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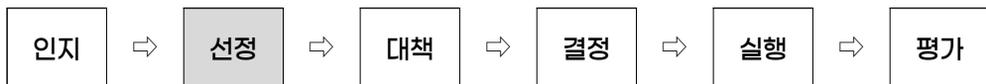
- 현재 회사의 정보 수집은 기후 변화 등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를 보고하기에 충분합니까?
- 보다 개선된 접근 방식으로 보고 시스템을 보완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까?
- 아니면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를 취합하고 전달하는 수준으로 충분합니까?  
(관련 실무부서에서 이미 관련 데이터의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경영진에게 보고되어야 할 사항(예시)

- ESG 정보 공개를 위한 보고 인프라 개선 과제 등

## 3. 선정

'인지' 단계에서 ESG 관점의 대응을 위한 정보 수집과 현황 진단이 이루어졌다면 '선정' 단계에서는 기업의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핵심 이슈를 특정한다. 이로써 ESG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작업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구분	질의 내용
비즈니스 영향도 분석	(자사의 현황 진단을 통해) 최고의사결정기구 및 경영진은 내부 조직 및 조직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자사의 현황 진단을 통해) 최고의사결정기구 및 경영진은 ESG 관련 리스크 및 기회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정보를 고려하여 분석하였습니까?
	핵심 이슈 선정을 위해 추가로 수집해야 할 내부 정보가 있습니까?
이해 관계자 관심도 분석	이해관계자 관심도를 파악하기 위해 수집해야 할 정보는 무엇입니까?
	조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현황 파악이 필요합니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필요 사안 발생 시 효과적인 이해관계자 참여방식은 무엇입니까?
핵심이슈 선정	이해관계자의 주요 관심 및 기대사항이 파악되었습니까?
	핵심 이슈 선정에 가중치를 부여해야 합니까?
프로세스 점검	비즈니스 영향도 분석 및 이해관계자 관심도 분석을 통해 자사의 핵심이슈(예 : 10개)가 결정되었습니까?
	중요성 결정(평가) 프로세스는 (전략 개발, 의사 결정, 리스크 및 규정 준수 관리, 운영 관리 및 보고 등) 조직의 기존 프로세스와 일치합니까?
	평가 프로세스가 조직의 지속 가능성 관점(context), 어떤 주제가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지, 이러한 주제가 누구에게 중요한지, 왜 그런지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얻는데 효과적입니까?
	핵심 이슈의 개선이 필요한지 정기적으로 검토되도록 설계되었습니까?

### ① 비즈니스 영향도 분석

- 자사의 현황 진단을 통해 최고의사결정기구 및 경영진은 내부 조직 및 조직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실무부서	- 기존 관행 중 ESG 관점에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요소를 파악하였습니까?
전담부서	- 기존 관행 중 ESG 정보 공개에 반영되지 않아 평가에 부정적 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 '경영진에게 보고되어야 할 사항(예시)'(37~38p) 등을 통해 이사회 등은 자사의 현재 상황과 ESG 경영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게 됩니다.

- 자사의 현황 진단을 통해 최고의사결정기구 및 경영진은 ESG 관련 리스크 및 기회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실무부서	- 현재 ESG 관련 리스크로 인식되는 내부적 사안은 무엇입니까?
	- 현재 ESG 관련 기회로 인식되는 사안은 무엇입니까?
	- 기존 관행 중 ESG 측면에서 긍정적임에도 홍보되지 않은 사안은 무엇입니까?
전담부서	- 실무부서에서 리스크 및 기회로 인식하고 있는 사안이 수집되고 관리되고 있습니까?

※ '경영진에게 보고되어야 할 사항(예시)'(37~38p) 등을 통해 이사회 등은 자사의 리스크와 기회를 파악하게 됩니다.

**ESG 관련 리스크 및 기회에 대한 정보 공개 사례**

포털 사업을 영위하는 G사의 중장기 ESG 전략에 관한 방향성(CEO 메시지)

(기 회) 친환경 이커머스 생태계 조성, 인재 양성 및 경쟁력 강화, 파트너 성장지원 확대, 주주가치 제고를  
중점적으로 추진

(리스크) 기후변화, 정보보호·보안, 공정거래 및 윤리경영에 관한 리스크 체계 고도화

◎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정보를 고려하여 분석하였습니까?

핵심 이슈 선정을 위해 추가로 수집해야 할 내부 정보가 있습니까?

- 추가적으로 수집해야 할 내부 정보가 있습니까? 있다면 내부적 조사(예 : 경영진 설문조사 등)가 필요합니까?

**고려해야 할 정보(내부 이슈) 예시**

- 수집 정보 : 조직 비전 및 경영전략, 경영진 관심사항 및 지시사항, 리스크관리 시스템, 비즈니스 수행과 관련된 정책, 그 외 내·외부 규범(예 : 협력사 운영 기준), 재무 정보 등
- 수집 방법 : 이사회 안건 분석, 경영 목표(KPI) 분석, 임직원 설문조사 등

② 이해관계자 관심도 분석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자의 기대와 관심사항을 고려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주요 표준이나 자사에 대한 언론 보도 등을 분석해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이해관계자와의 소통방법으로 설문조사,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조직은 고객 등의 니즈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해관계자 범위 선정이나 소통방법이 잘못된 경우 참여 저조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요구사항을 청취하는데 그치고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다. 따라서 자사의 중요성 평가 과정에서 개별 사안에 대해 주요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적절하게 설정하고 효과적인 의사 소통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ESG 정보공개 가이드> '6.1.3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부분(24p 이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자 관심도를 파악하기 위해 수집해야 할 정보는 무엇입니까?

**수집 정보 예시**

- 산업 동향(법률 및 규제, 업황 등), 거시 경제 및 지정학적 요인, 동종업계 회사의 프레임워크 적용이나 이니셔티브 가입 현황, 이해관계자의 요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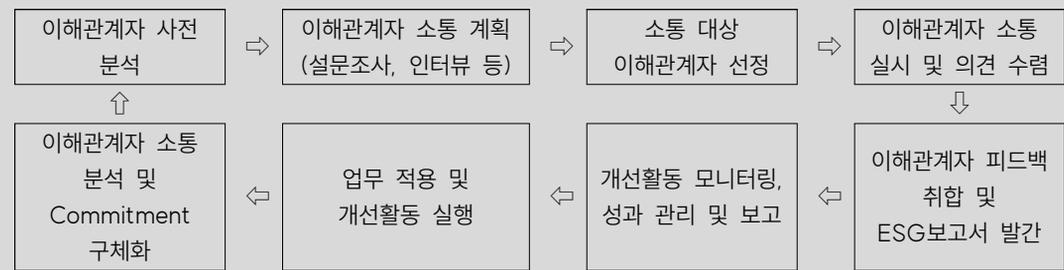
◎ 조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현황 파악이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면)

- 이해관계자의 식별을 위해 사내 실무부서(기업 IR/홍보, 인사, 영업 등)로부터 회사의 중요한 이해관계자 현황을 수집하였습니까?  
: 이해관계자란 회사의 영업 활동, 제품 또는 서비스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거나 기업의 전략수행 및 목표 달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에는 주주 및 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자가 포함된다.
- 전담부서는 이해관계자 현황 중 소통 가능한 주요 이해관계자 현황을 선정하였습니까?

◎ 주요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공개 사례 :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필요 사안 발생 시 효과적인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은 무엇입니까?

공개 사례 : 이해관계자 관심 및 기대사항

고객		협력회사	
커뮤니케이션 채널	반도	커뮤니케이션 채널	반도
회사 및 브랜드 웹사이트	수시	통합구매 포털	수시
CS포털, VOC, 콜센터	수시	정도경영 채널	수시
고객 불만 접수 및 피드백	수시	협력회사 동반성장심의위원회	연 4회
소비자 모니터*	월 3회	협력회사 최고경영자 아카데미	연 2회
브랜드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연 6회	협력회사 기술지원	수시
고객 CSR 설문조사	연 1회	협력회사 CSR 설문조사	연 1회
* LG생활건강 화장품에 한함		주요활동 : 협력회사와의 상생을 위한 동반성장 추진	
주요활동 :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 조사		소통이슈 : 상생, 산업안전보건, 정부정책 변화, 공정거래, 정도경영 등	
소통이슈 : 고객서비스, 개인정보보호, 마케팅, 제품 품질, 고객 안전 등			

임직원		지역사회	
커뮤니케이션 채널	빈도	커뮤니케이션 채널	빈도
인트라넷 및 고충처리 프로그램	수시	전문가 패널 간담회	연 3회
아이디어 혁신 I-30	수시	지역 협의회	연 2회
사보	연 6회	사회공헌 프로그램	비정기
Company Meeting	분기 1회	지역사회 CSR 설문조사	연 1회
임직원 만족도 조사	연 1회	대민 및 대관 업무	비정기
임직원 CSR 설문조사	연 1회	프레스 런칭 행사	비정기
사원 협의체	분기 1회	주요활동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 참여	
판매·판촉직군 직급별 간담회	분기 1회	소통이슈 : 경영현황 공개, 환경 보호, 지역경제 기여, 고용창출, 사회공헌	
사업장 노사협의회	분기 1회		
사업부 간담회	연 1회		
주요활동 : 회사 경영 전략 및 실행에 대한 의견 조사			
소통이슈 : 단체협약 및 각종 합의, 성과보상, 인재육성, 인권보호, 산업안전보건 등			
주주·투자자		정부·공공기관·협회	
커뮤니케이션 채널	빈도	커뮤니케이션 채널	빈도
IR사이트	수시	대한산업안전협회	월 1회
주주총회	연 1회	한국소방안전원	연 1회
영업보고서	연 1회	한국산업환경기술원	비정기
컨퍼런스	수시	정부 과제 및 컨퍼런스	비정기
주요활동:사업과 관련된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 참여		주요활동 :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소통이슈 : 경영정보 공유, 투자, 주주이익 보호 등		소통이슈 : 정부정책 변화, 법규 준수, 산업별/지자체별 동향 등	

◎ 이해관계자의 주요 관심 및 기대사항이 파악되었습니까?

공개 사례 : 이해관계자 관심 및 기대사항

이해관계자 구분	관심 및 기대사항
고객	제품 안전성 강화, 제품 기능 및 건강 영향 증진, 고객 개인정보보호
임직원	브랜드 리더십 및 기업 이미지 제고, 일과 삶의 균형, 성과평가와 보상
주주·투자자	투명한 경영정보 공시, 경영 효율화를 통한 투자가치 상승, ESG 활동을 통한 기업 가치 제고
협력회사	협력회사의 금전적·재무적 지원, 공정거래 준수, 협력회사와의 소통 확대 및 소통 채널 활성화
지역사회	사업장 인근 환경 영향 최소화, 지역사회공헌 활동 증진, 지역주민 채용 및 지역 경제 기여
정부·공공기관·협회	법규 준수, 정부 정책 협조

※ 이해관계자별 관심 및 기대사항이 다르므로 관련 이슈에 적합한 이해관계자를 선정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③ 핵심 이슈 선정

- 핵심 이슈 선정에 가중치를 부여해야 합니까?
  - E.S.G. 중 회사에게 가장 중요한 영역에 대한 가중치 반영이 필요합니까?
  - 비즈니스 영향도와 이해관계자 관심도에 대한 가중치 반영이 필요합니까?
  - 평가기관의 평가를 고려하여 자사 업종에 맞는 지표별 가중치 반영이 필요합니까?

예시 : 이슈 Pool\_핵심 이슈 선정

이슈	지표	핵심성과지표(KPIs)	비즈니스 영향도			이해관계자 관심도					핵심이슈 선정여부
			매출	비용	리스크	고객	구성원	투자자	정부	지역 사회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배출	Scope1, Scope2, 집약도	3	5	5	1	2	2	3	1	○
친환경 제품 생산	생산제품	판매량x									×
신사업투자	신사업	투자액, 생산능력 등									○
정보 보호	보안	정보 유출 건 수, 보안 개선 건 수 등									×

- 비즈니스 영향도 분석 및 이해관계자 관심도 분석을 통해 자사의 핵심 이슈(예 : 10개)가 결정되었습니까?

공개 사례 : 중요성 평가

중요도 구분	ESG 이슈	비즈니스 중요도 <sup>*)</sup>				이해관계자 중요도					보고 위치	
		매출	비용	명성	규제	이용자	구성원	투자자/주주	파트너	지역 사회		정부
Tier 1	01. 정보보안, 프라이버시 및 표현의 자유	●	●	●	●	●	●	●	●	●	●	Trust - 정보보안, 프라이버시 및 표현의 자유
Tier 1	02. R&D 및 기술혁신	●	●	●	●	●	●	●	●	●	●	Social - 미래역량 개발과 기술 혁신
Tier 1	03.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	●	●	●	●	●	●	●	●	●	Governance - 기업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Tier 1	04. 상생 협력과 소셜 임팩트 창출	●	●	●	●	●	●	●	●	●	●	Social - 프로젝트 풀
Tier 1	05. 이용자 만족	●	●	●	●	●	●	●	●	●	●	Management Report -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성장 Social - 프로젝트 풀
Tier 2	06.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	●	●	●	●	●	●	●	●	●	●	Governance - 리스크 및 기회
Tier 2	07. 인재 유치 및 역량 개발	●	●	●	●	●	●	●	●	●	●	Social - 임직원을 위한 투자
Tier 2	08. 투명성 및 ESG 정보 공시	●	●	●	●	●	●	●	●	●	●	Our Ambitions Governance - 기업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Tier 2	09. 기후변화 대응	●	●	●	●	●	●	●	●	●	●	Environment - 환경영향 관리
Tier 2	10. 순환 경제	●	●	●	●	●	●	●	●	●	●	Environment - 환경영향 관리
Tier 2	11. 인권 존중	●	●	●	●	●	●	●	●	●	●	Social - 인권 존중
Tier 2	12.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	●	●	●	●	●	●	●	●	●	●	Governance -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
Tier 2	13. 접근성 및 디지털 활용능력	●	●	●	●	●	●	●	●	●	●	Trust - 정보보안, 프라이버시 및 표현의 자유 Social - 프로젝트 풀
Tier 2	14. 에너지 효율 및 청정 에너지	●	●	●	●	●	●	●	●	●	●	Environment - 환경영향 관리
Tier 2	15. 보건안전 및 웰빙	●	●	●	●	●	●	●	●	●	●	Social - 임직원을 위한 투자
Tier 3	16. 다양성 및 포용성	●	●	●	●	●	●	●	●	●	●	Social - 임직원을 위한 투자
Tier 3	17. 공급망 관리	●	●	●	●	●	●	●	●	●	●	Social - 프로젝트 풀
Tier 3	18. 지역사회 참여와 소통	●	●	●	●	●	●	●	●	●	●	Social - 프로젝트 풀
Tier 3	19. 책임 있는 물 사용	●	●	●	●	●	●	●	●	●	●	Environment - 환경영향 관리

\*) 비즈니스 중요도: ● Very High ● High ● Medium ● Low

전담부서의 보고 자료(예시)

- 중요성 결정(평가) 프로세스 및 결과, 현재 중요성 목록을 설명하기 위한 분석자료

<프로세스 점검>

- 중요성 결정(평가) 프로세스는 전략 개발, 의사 결정, 리스크 및 규정 준수 관리, 운영 관리 및 보고 등 조직의 기존 프로세스와 일치합니까?

전담부서의 보고 자료(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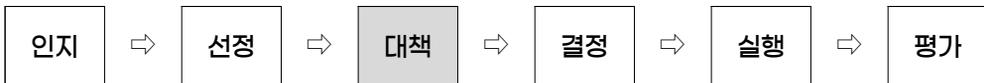
- 중요한 ESG 리스크를 결정(평가)하는 프로세스가 회사의 전사적 리스크 관리 시스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분석자료
- (해당시)회사의 전사적 위험 관리 시스템에 대한 개선 필요사항

- 평가 프로세스가 조직의 지속 가능성 관점(context), 어떤 주제가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지, 이러한 주제가 누구에게 중요한지, 왜 그런지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얻는데 효과적입니까?

- 핵심 이슈의 개선이 필요한지 정기적으로 검토되도록 설계되었습니까?

## 4. 대책

'대책' 단계에서 우리 회사의 중요성(materiality) 기준에 부합하여 선정된 핵심 이슈에 대해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단계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 가치의 향상이라는 최상위 목표를 이루기 위함이다.



구분	질의 내용
목표 및 계획 수립	목표 설정 및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데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핵심 이슈가 비즈니스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되었습니까?
	회사 내 ESG 관련 인증(ISO 등) 현황이 파악되었습니까?
	목표 설정에 따라 추가적인 인증(또는 지침 활용)이 필요합니까?*
	보고서(수집 데이터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제3자 검증이 필요합니까?

\* 인증뿐 아니라 RE100 등의 가입 여부가 검토될 수 있으나 이러한 활동은 ESG 경영 수준이 높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해당 자료에는 포함하지 않음.

- ◎ 목표 수립 및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데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 중대성 및 기회 요소 등에 따라 양적 또는 방향성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까?
  - 목표는 전략적, 범조직적, 프로젝트별, 제품별, 프로세스별 등과 같이 다른 단계마다 세부적으로 설정해야 합니까?
  - 성과 관리를 위해 분야별로 측정 가능한 중요 지표(KPI)를 설정하였습니까?
  - 목표 달성을 위한 기간(단기, 중기, 장기)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목표 수립에 국내외 다른 기업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까?
  - 목표 달성에 협력사, 자회사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까?
  - 목표와 계획 수립 등과 관련하여 문서화되어 관리되고 있습니까?

예시 : 핵심 이슈에 대한 목표 관리 표

No.	핵심이슈	평가기준 (양적/방향)	KPI	기간 (단기/중기/장기)	현재	목표	A사 사례	담당부서 (담당자/책임자)
1								
2								
3								
4								
5								
6								

- ◎ 핵심 이슈가 비즈니스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되었습니까?

**'비즈니스 전략과 ESG 요소의 관계'를 설명하는 정보 공개(예시)**

- (기업의 가치관과의 관계) 기업의 경영 이념이나 비전 등 가치관과 ESG 요소와의 관계

**조선업을 영위하는 H사**

회사의 경영철학에 지속가능한 성장 및 가치 제고에 관한 신념을 반영하고 이에 근거하여 ESG 전략 수립 및 실행을 해나가고 있음을 보고서에 공개하고 있다.

**<H사의 5대 경영철학>**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기업 가치 증대,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실천,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경영 추구, 상호존중과 신뢰의 노사문화 구현,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사회발전 기여

- (비즈니스 모델과의 관계)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는 요소(예: positioning, 차별화 요소 등)의 경쟁 우위성 및 이를 지원하는 자사의 경영 리소스 등과 ESG 요소와의 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A사**

급변하는 글로벌 건설 시장 환경 속에서 사업 기획, 금융조달, 설계, 구매, 시공, 운영 및 유지관리 등 건설산업 가치 사슬(Value Chain) 전 분야에 걸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모델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토털 서비스 제공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MOU 체결 등) 등을 설명하고 있다.

- (사업·자산 포트폴리오와의 관계) 회사의 사업 운영이나 자산과 ESG 환경 변화(예 : 환경규제 변화 등)와의 관계

**종합제철업을 영위하는 H사**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CO2 발생 저감 기술 개발과 저탄소 친환경 제품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수소환원제철 공법인 HyREX와 같은 혁신적인 솔루션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이다.

- (운영 및 공급망과의 관계) 지속적인 공급 조달 등 측면에서 회사 운영 및 공급망 전체와 ESG 요소와의 관계

**화학업을 영위하는 L사**

석유화학분야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탄소중립, 재활용, 바이오소재 3개 영역을 중심으로 친환경 소재의 사업화 로드맵을 구축하고, 외부 파트너와의 적극적인 협력 및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다. 또한, 정부, 지자체, 공급망 등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Closed-loop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 (연구 개발 등과의 관계) ESG 요소가 회사의 중요 리스크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자사의 경쟁력을 유지·강화하는 관점에서의 연구 개발이나 인재 육성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J사**

'2030 화장품 플라스틱 이니셔티브' 선언에 동참하고, 화장품 플라스틱 포장재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순환 경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J사는 이니셔티브의 4대 중점 목표인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 100% 제거', '석유 기반 플라스틱 사용 30% 감축', '리필 활성화', '판매한 용기의 자체 회수'의 달성을 위한 이니셔티브의 10대 액션플랜을 수행할 예정이다. 연구개발로 용기경량화와 구조 리뉴얼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감축하고 있다.

- (제품·서비스와의 관계) 현재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와 ESG 요소와의 관계(위험 또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가져오는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F사**

글로벌 친환경 자동차 확대 흐름에 따라 끊임없는 혁신과 기술개발로 친환경 자동차 부품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제조 노하우를 기반으로 친환경 자동차에 적용되는 부품의 연구개발에 앞장서고 2018년 발표한 회사 비전에 따라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친환경 자동차 부품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 (시장·고객과의 관계) ESG 이슈로 인해 현재 자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시장이나 고객의 선호와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 등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지(회사 사업에 미치는 영향)

**식음료업을 영위하는 D사**

포장재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규제도 심화됨에 따라 친환경 패키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제품개발 단계에서부터 생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제품 생산 전 과정에서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고려하여 친환경 패키징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전담부서의 보고 자료(예시)

- ESG 핵심 이슈가 회사의 전략(비즈니스 및 CSR 전략 포함), 비전 및 가치 등과 어떤 관련

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자료

● 회사 내 ESG 관련 인증(ISO 등) 현황이 파악되었습니까?

목표 설정에 따라 추가적인 인증(또는 지침 활용)이 필요합니까?

- ESG와 관련된 대표적인 인증제도는 아래 표와 같으며, 조직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음을 인증해준다. 그 외에 인증은 아니지만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표준\*이 있다.

\* ISO 26000(사회적책임), ISO 14007(환경비용편익분석), ISO 14008(기후 재정) 등

<참고 : 주요 인증제도 예시>

구분	인증제도	인증 내용
E (환경)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 조직이 환경 측면을 체계적으로 식별, 평가, 관리 및 개선함으로써 환경 위험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인증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 조직이 구축·운영하는 에너지경영시스템(EnMS)*의 표준 요구사항이 이행되고 있음을 인증 * 조직이 원가절감을 위해 에너지효율 향상 활동을 통합적/체계적인 경영전략으로 구축하여 전사적/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술과 경영 측면이 조화된 에너지관리시스템 표준
	KS I 7001/7002 (녹색경영시스템)	- 조직이 녹색경영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녹색경영성과 개선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인증
S (사회)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사전 예측/예방하여 조직의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인증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이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이를 유효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인증
	ISO 27001 (정보보안경영시스템)	- 조직이 비즈니스 위험 접근법을 기본으로 정보보안의 확립, 구현, 운용, 모니터링, 검토, 유지하며 개선하고 있음을 인증
	KOSHA 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사업주가 자율경영방침에 안전보건정책을 반영, 세부 실행지침과 기준 규정화, 주기적 자체평가 등 자율안전보건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인증
G (지배구조)	ISO 37001 (반부패경영시스템)	- 조직에서 반부패경영시스템을 수립하고 실행, 유지 및 개선을 달성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인증
	ISO 37301 (준법경영시스템)	- 기업의 준법 정책 및 리스크 관리 등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인정하는 국제 인증

<참고자료> ESG 대응을 위한 ISO IEC 국제표준 100선 가이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한국표준협회)

● 보고서(수집 데이터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제3자 검증이 필요합니까?

- 작성된 내용에 대한 외부 검증을 통해 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외부 검증을 검토하는 경우 검증 비용, 방법 및 범위, 검증기관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 주요 ESG 정보 검증 표준으로는 글로벌 표준기관인 AccountAbility의 AA1000AS와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의 ISAE3000이 있으며, 이 외에도 객관적으로 공인된 다양한

기준들이 있다. 검증 후에는 검증 범위, 방법론 등을 명시하고, 검증의견에 따라 보고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게 된다.(출처 : ESG 정보공개 가이드, 27p)

**<참고 : AA1000AS(Assurance Standard) 개요>**

구분	분류	설명
유형	Type1	• Inclusivity, Materiality, Responsiveness, Impact에 중점을 둠(AA1000 Accountability Principles)
	Type2	• Inclusivity, Materiality, Responsiveness, Impact에 중점을 둠(AA1000 Accountability Principles) • 정보의 신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절차, 시스템, 통제, 완결성 및 정확성을 확인함
수준	Moderate Assurance	• 제한된 증거(Limited evidence)를 중간 수준의 보증으로 부여 • 정보 수집 출처가 내부이며, 정보 이용가능자가 기업 관리 직급일 경우임 • 기본적인 샘플링 및 분석 절차 등 제한적 정보 수집
	High Assurance	• 광범위한 증거(Extensive evidence)를 높은 수준의 보증으로 부여 • 독립적/외부 데이터 출처, 시장에서 인정된 데이터베이스 또는 인공지능을 통한 정보 추정 • 데이터가 내부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취득되며 충분한 샘플링으로 높은 신뢰성 및 품질 획득

**제3자 검증 사례**

검증기관 및 검증 기준, 유형, 수준 사례

검증기관	검증기준	검증유형	검증수준
BSI Group Korea	AA1000AS v3	Type 1, Type 2	Moderate Level
	AA1000AS v3	Type 2	Moderate Level
	AA1000AS v3, AA1000APS(2018)	Type 1, Type 2	Moderate Level
	AA1000AS v3	Type 1	Moderate Level
	AA1000AS v3	Type 1, Type 2	Moderate Level
	VeriSustainTM	-	제한적 보증
DNV	VeriSustainTM, AA1000AS v3	Type 1	Moderate Level
	VeriSustainTM, ISAE 3000	-	제한적 보증
	AA1000AS v3, SRV1000	Type 2	Moderate Level
KMR	AA1000AS v3, SRV1000	Type 2	Moderate Level
	SRV1000	-	제한적 보증
	ISAE 3000	-	제한적 검증
KPMG 삼정회계법인	ISAE 3000, AA1000AS v3	-	제한적 검증
	AA1000AS v3	Type 2	Moderate Level
로이드인증원	ISAE 3000	-	제한적 보증
	ISAE 3000, ISAE 3410	-	제한적 확인
삼일회계법인	ISAE 3000	-	제한적 확인
	AA1000AS v3	Type 2	Moderate Level
퀀티파이드이에스지	AA1000AS(2008)	Type 1	Moderate Level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AA1000AS(2008)	Type 1, Type 2	Moderate Level
	AA1000AS(2008)	Type 1, Type 2	Moderate Level

한국생산성본부	AA1000AS(2008), AA1000AP(2018)	Type 1, Type 2	Moderate Level
	ISAE 3000, AA1000AS v3	Type 2	Moderate Level
한국표준협회	AA1000AS v3	Type 2	Moderate Level
한국품질재단	AA1000AS v3, AA1000APS(2018)	Type 1	Moderate Level
	AA1000AS v3, AA1000APS(2018)	Type 1, Type 2	Moderate Level

(검증기관명 가나다 순, 2021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자율공시 회사 대상)

## 5. 결정

핵심 이슈를 해결하고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경영 사안들과 마찬가지로 ESG 관련 프로세스를 조직의 의사 결정 프로세스에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사회는 ESG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한 최고이사결정기구로의 보고 프로세스가 적절하게 구축되어 있는지 관리 감독하고, 최고이사결정기구는 주어진 역할에 따라 적절한 절차와 방법으로 결정(결의)해야 한다.



구분	질의 내용
결정절차 등	최고이사결정기구의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최고이사결정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최고이사결정기구의 소집 및 결의가 상법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최고이사결정기구의 의사록을 작성하였습니까?
	이사회 지원 조직의 주요 검토 사항이 이사회에 적절하게 보고되고 있습니까?
정보공개	최고이사결정기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습니까?

- 최고이사결정기구의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 ESG 과제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 최고이사결정기구는 ESG 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까?
  - 별도의 이사회 내 위원회가 있는 경우 권한(검토/보고/결의)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 최고이사결정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ESG위원회 규정 예시**

- 탄소중립 목표 등 ESG 관련 중·장기적 기본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〇〇억원 이상 사회공헌 활동 집행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ESG리스크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 이사회 부의 안건 중 ESG의 관점에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전 검토를 요청한 사항  
(‘V. 상장회사 표준 ESG위원회 규정(예시)’ 참조)

● 최고이사결정기관의 소집 및 결의가 상법 등 관련 법규 및 ESG위원회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까?

ESG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상법 제393조의2 제4항에 따라 각 이사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결의사항에 이의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결의를 번복할 수 있음.  
(상법 제393조의2 제4항 등)  
(‘V. 상장회사 표준 ESG위원회 규정(예시)’ 참조)

● 최고이사결정기관의 의사록을 작성하였습니까?

ESG위원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 및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함.  
(상법 제393조의2 제5항, 제391조의 3)

● 이사회 지원 조직의 승인 사항이 이사회에 적절하게 보고되고 있습니까?

- ESG위원회나 경영진 협의체 등에서 검토하거나 결정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 차원의 공유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최고이사결정기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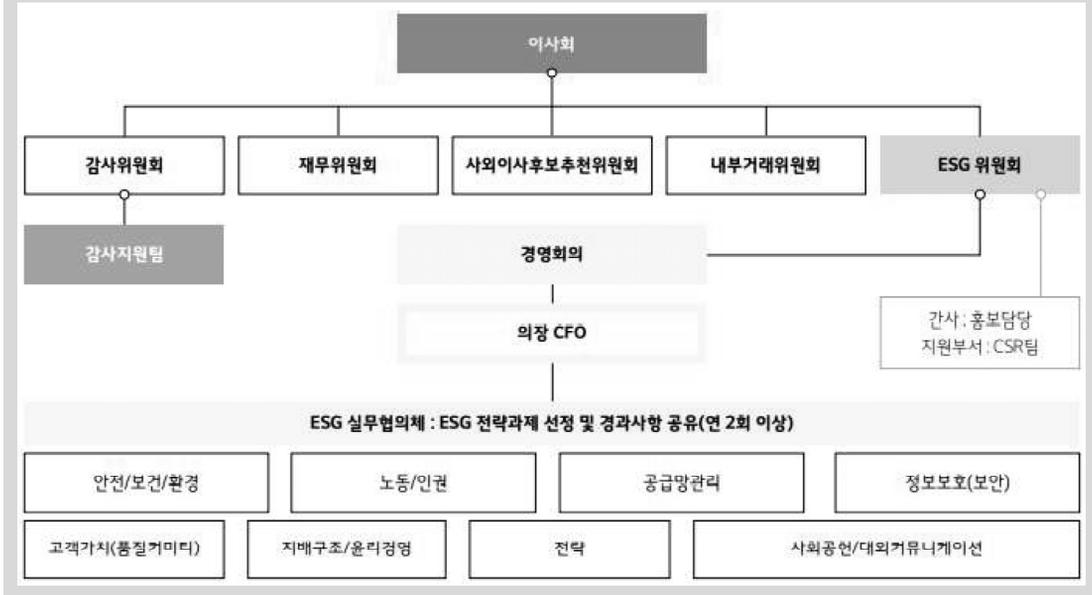
**공개 사례**

통신업을 영위하는 L사

<ESG 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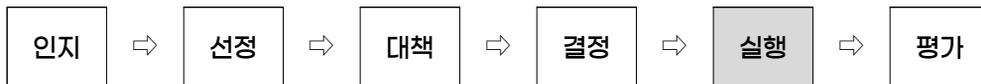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관한 ESG 경영을 강화하여,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회사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사외이사 〇명과 사내이사 〇명으로 구성하였으며, ESG 전문가인 〇〇〇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신설된 ESG위원회는 기존의 CRO 산하의 기후변화 이슈를 주로 관리하던 에너지관리협의체의 기능을 포함하여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전반의 경영 이슈와 관련한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에 대한 모든 의

사결정을 전담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산하에 CFO를 의장으로 하는 ESG 실무협의체를 두어, 전사의 각 분야별로 회사의 중장기 ESG 이슈를 검토하고 경과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 6. 실행(집행)

핵심 이슈에 대한 세부 전략 및 계획은 전사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실행' 단계는 전담부서 입장에서는 보고서 공시,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에 '핵심 이슈'를 고려하여 세부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이다.



구분	질의 내용
공시, 공유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 또는 공개합니까?
	대응 목표와 계획이 구성원들에게 공유되었습니까?
실적관리	중요 지표(KPI)에 따른 평가를 위해 실적이 관리되고 있습니까?

●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 또는 공개합니까?

- ESG 정보공개 가이드نس(한국거래소)를 기반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KIND에 공시합니까?

<ESG 정보공개 가이드نس> '6.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절차' 부분(23~28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KIND 공시 외에 ESG 정보가 공개되는 장소(예 : 자사 홈페이지 등)는 어디입니까?
- ESG 정보는 정보공개원칙에 부합합니까?

<ESG 정보공개 가이드> '4. 정보공개원칙' 부분(14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SG 정보 공시 시기는 언제입니까?
- ESG 정보를 공개하는 형태(예 : 보고서, 자사 홈페이지 별도 페이지 등)는 어떻습니까?
- 그 외 ESG 정보의 공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까?
  - \* 정기적 : 정기보고서 제출, 정기주주총회 개최 등
  - 비정기적 : 예상치 못한 이슈 발생, 사회공헌 활동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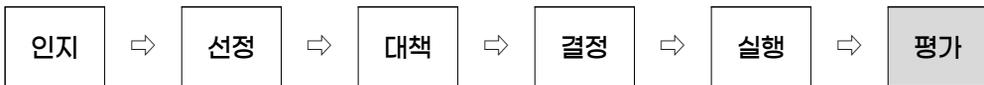
◎ 대응 목표와 계획이 구성원들에게 공유되었습니까?

- \* 구성원은 자사 뿐 아니라 자회사, 협력사 등이 포함될 수도 있음
- 어떤 내용을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공유하였습니까?
- 세부 계획과 관련하여 담당자 및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 전사적인 논의의 자리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이 별도로 필요합니까?

◎ 중요 지표(KPI)에 따른 평가를 위해 실적이 관리되고 있습니까?

## 7. 평가

ESG 전략 및 세부계획을 실행한 후 그에 대한 거래처,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을 기초로 하여 수행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평가 후 보완할 내용은 다시 대책을 수립하여 재실행의 과정을 거쳐 실행 실적이 합당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여야 한다. 이 과정은 '중요성 평가'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구분	질의 내용
프로세스	목표 및 진행상황을 평가하는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 목표 및 진행상황을 평가하는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 평가 대상, 평가 기간 및 시기 등에 따라 정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집니까?
- 중요 지표(KPI)에 따른 실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외에 관련 정책이나 운영 등에 관한 평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 모니터링과 평가 결과가 보고되고 다시 중요성 평가 및 전략 수립 등에 반영되니까?
- 평가 시스템상 ESG 활동 및 실적 개선과 경영성과 제고가 어떻게 반영되니까?
- 외부 평가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 :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 이해관계자 피드백<사후적> 등)
- 평가 프로세스는 구성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과 동기 부여에 효과적입니까?
- 평가 결과는 문서화되어 관리되고 있습니까?
- (Plan . Do . Check - Act 고려한 모니터링) ESG 경영과 관련된 현 시스템, 프로세스 또는 활동에 개선이 필요한지 관찰, 검토되고 있습니까?

전담부서의 보고 자료(예시)

- 목표 달성 및 업계 벤치마크의 진행 상황 평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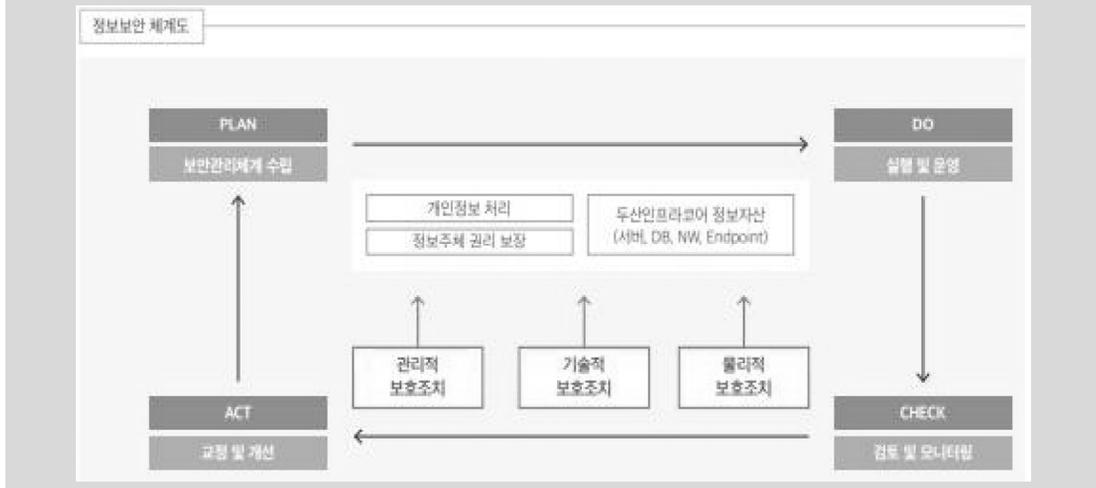
평가 관련 공개 사례

석유 및 화학업을 영위하는 S사

온실가스 감축 성과 <sup>과제</sup>				
구분	단위	2018	2019(목표)	2019
저탄소 제품을 통한 온실가스 감소 기여성과	억 원	441	463	502
저탄소 제품을 통한 온실가스 감소 기여량	톤	443,118	465,274	491,850

건설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H사

평가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PDCA 접근 방식(정보보안 관련)



## V. 상장회사 표준 ESG위원회 규정(예시)

### 상장회사 표준 ESG위원회 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ESG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의 권한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은 정관을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기능 및 권한) 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권한 내에서 제10조에서 정하는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이하 'ESG'라고 한다)와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해 검토·결의·보고한다.

#### 제2장 구성

제4조(위원) ① ESG위원회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에 사외이사 비율을 규정하는 경우 다음의 예시를 참고한다.

<예시>

② 위원회는 ○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제2항의 위원의 수 또는 사외이사의 구성비율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제2항의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를 통한 결원 충족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이후에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제2항의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제③항, 제⑤항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⑤ 제386조제1항·제390조·제391조·제391조의3 및 제392조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상법 제386조(결원의 경우) 제①항

①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위원의 이사 임기까지로 한다.

※ 임기는 이사 임기 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도 가능함.

제5조(위원장)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선임하도록 정할 수도 있음.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③ 위원장이 부재 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최초 이사 선임일을 기준으로 가장 먼저 선임된 이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선임된 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회의

제6조(종류)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 ② 정기위원회는 ○○○마다 개최한다.  
※ 매 분기, 매 반기, 특정 월(예를 들어, 1월과 7월) 등
-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소집권자)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의 요지와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소집절차)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전에 위원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 정관 규정이 없는 경우 상법에 따라 1주간전에 통지하고, 정관에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 정해진 기일을 따름.
- ※ 감사위원이 아닌 감사를 두고 있는 회사는 감사에게도 통지하여야 함(상법 제391조의3 제2항).

<표준정관>

제37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28.)
- ③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 ○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8.11.28.)  
※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 를 삭제하여야 함. (주석신설 2001.3.2.)

④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권자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 (신설 2000.2.10., 개정 2018.11.28.)

제39조의2(위원회)

- ① 이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각 호 생략)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전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제⑤항

⑤ 제386조제1항·제390조·제391조·제391조의3 및 제392조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90조(이사회 의 소집)

-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 ④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제392조(이사회 의 연기·속행) 제372조의 규정은 이사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72조(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 ① 총회에서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에는 제3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방법)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제⑤항

⑤ 제386조제1항·제390조·제391조·제391조의3 및 제392조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91조(이사회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②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68조제3항 및 제37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10조(결의사항) 및 제11조(검토사항)와 관련하여 회사는 회사의 ESG 조직체계 내 다른 조직(예 : 이사회, 경영진 협의체)의 역할을 고려하여 심의·결의 및 검토(보고)사항을 정하여야 함.

제10조(결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결의한다.

(아래 사항은 예시입니다)

1. 위원장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ESG 활동 관련 단기 및 중·장기적 기본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연간 ○○억원 범위 내에서 건별 ○○억원 이상 사회공헌활동 집행
5. ESG 보고서의 발간에 관한 사항
6. 외부전문인력의 조력에 관한 사항

※ 만일 이사회 규정에 '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회사는 해당 이사회 규정을 고려해야 함(상장회사 표준이사회규정 제12조 제5항 참조).

※ 회사는 ESG 경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결의사항을 추가할 수 있음.

제11조(검토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다.

(아래 사항은 예시입니다)

1. ESG 정책의 이행 실태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과 관련한 사항
2. ESG 관련 위험 및 기회의 파악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긴급한 ESG 현안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이사회가 이사회 부의 안전 중 ESG의 관점에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전 검토를 요청한 사항

※ 회사는 ESG 경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검토사항을 추가할 수 있음.

-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본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이나 외부인사의 출석을 요구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0조(결의사항) 및 제11조(검토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에 자료의 제출이나 정기적·비정기적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이사회 통지 및 보고) ① 위원회에서 제10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결의한 경우 위원장은 그 결의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결의일로부터 3일 이내와 같이 기한을 정할 수도 있음

② 위원회는 결의·검토 등 ESG 관련 활동 내역을 ○○○마다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사회 차원에서 ESG 관련 리스크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주기를 두고 보고를 하도록 함이 바람직함. 보고 시기는 매 분기, 매 반기, 정기위원회 이후 상당한 기간 내 등으로 정할 수 있음.

제14조(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 및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 감사위원이 아닌 감사를 두고 있는 회사는 출석한 감사도 의사록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함(상법 제393조의2 제5항, 제391조의3).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 업무지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별도로 사무국을 둘 수도 있음.

<예시>

제15조(간사 및 사무국)

① 위원회에는 간사 ○명과 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② 위원회 사무국은 위원회가 본 규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전반을 지원한다.

<첨부1> ESG 표준 등 관련 리소스

기관명	주요 내용
UN	<p>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개요) 2006년,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반영하는 금융기관들의 사회책임투자를 촉진하고자 UNEPFI와 UN GC 간 파트너십을 통해 UN 책임투자원칙기구 출범                      (참여) PRI가 제시하는 책임투자원칙에 동의하고 이행을 약속하며 서명함(현재 서명 기관 2300개 수준)                      * 서명기관은 자산운용사, 자산보유자, 의결권자문사 등 서비스제공업체 등 3개 카테고리 분류</p> <p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6개의 투자 원칙과 35개의 세부 실천 프로그램으로 구성</p>
	<p>UNEP FI(UN Environment Plan Finance Initiative)                      (개요) 1991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금융부문 차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유엔 산하기구 중 하나인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결성한 공공·민간 파트너십</p> <p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헌신(Commitments), 경영지침, 정보 공개 및 커뮤니케이션 3개 분야 내 19개 항목으로 구성</p>
	<p>UN GC(UN Global Compact)                      (개요) 2000년 7월, 코피 아난 前 UN 사무총장이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제안(1999년)하여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기업 운영 정책을 채택하고 실행을 국제기구에 보고하도록 장려하는 국제기구 출범                      UN GC Principles은 기업뿐만이 아닌 NGO, 학계, 산업협회, 노동계 등 모든 종류의 조직에 적용되는 10대 원칙을 일반화, 서명 기관은 매년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UN GC 이행 성과에 대해 통지하는 이행 보고서(COP)를 매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p> <p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인권, 노동, 환경, 반(反)부패 4개 영역에 대한 10대 원칙으로 구성                      1. 인권 존중, 2. 인권 침해 연루 금지, 3.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장, 4. 강제 노동 폐지, 5. 아동노동 폐지, 6. 고용과 직업에서 차별 금지, 7. 환경 문제에 예방의 원칙 적용, 8. 환경 책임, 9. 환경친화 기술 개발과 확산, 10. 부패 방지</p>
	<p>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개요) 2015년,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p> <p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사회, 경제, 환경을 포괄하는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p> <p>GRI,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가 공동으로 개발한 'SDGs Compass(SDGs에 관한 기업 행동 지침)에 따라 기업의 전략과 SDGs를 연계하는 방법 제시                      (공시매체) 지속가능보고 또는 통합보고와 같은 채널</p>
통합보고(IR) 프레임워크	<p>(개요) 2010년, 영국의 The Prince's Accounting for Sustainability(A4S)와 GRI가 통합보고에 대한 국제 표준을 만들기 위해 국제통합보고위원회(IIRC,</p>

	<p>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설립                  (발표내용) 2013년, 통합보고(IR) 프레임워크 발표, 현재 통합보고의 기본 개념이며 서로 다른 목적과 대상을 가지고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보고서와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려는 이니셔티브                  (공시매체) 법정 공시사항 또는 자율적 공시사항                  (보고대상) 통합 보고서는 기업 재무 정보와 비재무 정보를 연결하고 통합하여 투자자에게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 창출 능력을 주로 금융 자본에 설명                  (활용) 세계 65개국에서 1,600개 이상의 기업이 사용 중</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보고 지침</p> <p>1. 전략적 집중성과 미래지향성 2. 정보의 연결성 3.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성, 4. 프레임워크 중요성 5. 간결성, 6. 신뢰성과 완전성, 7. 일관성과 비교가능성</p> </div>
TCFD	<p>(개요) 2015년, 금융 안정위원회(FSB)는 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태스크 포스(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설립                  *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금융안정위원회에 금융 부문이 향후 기후변화 관련 문제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하도록 요청한 것을 계기로 설립                  (발표내용) 2017년, 재무 공시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이 쉽게 적용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공인될 수 있는 정보 공개 프레임워크 개발, 최종 TCFD 권고안 및 관련 추가 지침 발표(「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개위원회의 권고」)                  (공시매체) 주로 지속가능성보고서                  (활용) 2018년 기준 TCFD 참여기관은 513개, 기후변화 관련 재무적 위험 공개에 초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권고안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회 및 위험요인이 기업의 재무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권고사항은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측정기준 및 목표라는 4가지 영역, 11개 항목으로 구성</p> </div> <p>TCFD 권고안 국문 요약(한국환경산업기술원 KONETIC)</p>
CDP	<p>(개요) 2000년, 영국정부와 기관투자자들의 지원을 받아 환경보고 및 위험 관리를 비즈니스 표준으로 만들고 지속 가능한 경제에 대한 공개 추진을 목표로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설립                  (발표내용) 2002년, 기후변화 정보 공개 질의서 이후 물, 산림으로 확대                  * 2018년, TCFD의 권고를 받아 CDP 기후변화(CDP Climate Change) 질의서는 TCFD과 일정한 정합 도모                  (활용) 2017년, 803개 기관(운용 자산총액 100조 USD) 참여                  * 2017년, 질문지 대상(시가총액 상위 기준 6000여 기업(한국 200개)) 1,839개 중 1,073개 기업이 답변</p>
CDSB	<p>(개요) 2007년, 세계경제포럼에서 기후 변화 관련 정보를 주류 재무보고에 통합하여 투자자 및 금융시장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법정 공개화)하기 위해 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 설립                  (발표내용) 기후변화 보고 프레임 워크(CDSB 프레임 워크)</p>
SASB	<p>(개요) 2011년, 블룸버그 자선재단과 록펠러재단, Generation Foundation의 재정지</p>

	<p>원으로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설립 (발표내용) 2018년, SASB 스탠다드 발표 미국 지속가능경영회계기준위원회(SASB)의 목표는 기업의 활동에 있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산업별로 특화하고 동종업계의 타 기업과 비교 가능할 수 있는 핵심 성과지표를 만들어 연차보고서의 MD&amp;A 부분에 포함될 정보를 표준화하는 것 * SASB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 대법원의 중대성에 대한 정의를 기준으로 현재 ESG 공시 정보 중 60~70%는 불필요</p> <p>11개 산업군의 별도 지침 및 77개 산업별 지표</p> <p>SASB 기준 국문번역본(금융위원회 보도자료)</p>
GRI	국제기구 'Global Reporting Initiative'가 발표한 지속가능보고서 작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각 조직에 맞게 선택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
RE100	<p>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런던에 있는 다국적 비영리기구 더 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이 2014년에 시작한 캠페인 2050년까지 전락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자발적 약속으로 전 세계 200여개 글로벌 기업이 가입</p> <p>K-RE100 - 재생에너지 사용 글로벌 캠페인(RE100)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 구축 등</p>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매트릭스	세계경제포럼(WEF)와 그 산하에 국제비즈니스협의체인 IBC가 주관하여 발표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측정,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에 대한 공통 지표 및 일관된 보고를 위한 백서(Measuring Stakeholder Capitalism Towards Common Metrics and Consistent Reporting of Sustainable Value Creation)
ESG 정보공개 가이드언스	상장법인의 인식 제고 및 ESG 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한국거래소가 제정·발표한 것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에 참고해야 할 가이드언스임.
K-ESG 가이드라인	산업부는 국내외 주요 13개 평가기관 등의 지표와 측정항목을 분석하여 61개 ESG 이행과 평가의 핵심·공통사항을 마련, 국내 기업들이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MSCI ESG 등급	ESG 평가 분야의 국제적 권위를 가진 기관으로, 기업 평가시 업종별로 구분하여 환경, 사회적 책임,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경영 현황을 평가 후 7단계 등급을 부여함
ESG Book	ESG 평가기관 '아라베스크'가 공개한 ESG 정보 공개 플랫폼
ESG Data Hub	나스닥이 투자자들의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된 ESG 데이터를 제공하는 플랫폼
ESG 스타트 매뉴얼	ESG 경영과 관련하여 체계 구축 프로세스, 기본 원칙 및 핵심 추진과제, 실사 방안 등에 대한 내용과 ESG 핵심지표 맵핑, ESG 경영에 필요한 정보 목록 수록
임팩트온	최신 정책, 글로벌 프레임워크 등 ESG 관련 기사 및 오피니언 등 게재
S&P Global Sustainable 1	S&P 글로벌의 ESG 전담기관으로 ESG 정보 분석 및 ESG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방법 및 ESG 이슈별 가중치 등 공개하고 있음
Sustainalytics	모닝스타의 자회사로 ESG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ESG 리스크 등 평가 실시함.
I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지속가능성 비재무정보 공시 표준을 만들기 위해 COP26에서 IFRS재단 산하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가 공식 출범, 공시 프로토타입과 위원회 구성, 진행 경과 등 발표 중

## <첨부2> GRI 스탠다드 인덱스

Topic	No.	Title
GRI 102 : 일반 공개		
조직 프로필	102-1	조직 명칭
	102-2	활동,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102-3	본사 위치
	102-4	사업 지역
	102-5	소유 형태 및 법적 형태
	102-6	시장 영역
	102-7	조직의 규모
	102-8	임직원 및 근로자에 관한 정보
	102-9	공급망
	102-10	조직 및 공급망의 중대한 변화
	102-11	예방 원칙 또는 접근
	102-12	외부 이니셔티브
	102-13	협회 회원
전략	102-14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성명서
	102-15	주요 영향, 위기 및 기회
윤리 및 청렴	102-16	가치, 원칙, 표준 및 행동강령
	102-17	윤리 관련 조인 및 고발 메커니즘
지배구조	102-18	지배구조
	102-19	권한 위임
	102-20	경제적, 환경적 및 사회적 도덕에 대한 임원의 책임
	102-21	경제적, 환경적 및 사회적 도덕에 대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102-22	최고의사결정기구 및 하위 위원회의 구성
	102-23	최고의사결정기구 의장
	102-24	최고의사결정기구 위원 추천 및 선정
	102-25	이해관계상층
	102-26	목표, 가치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역할
	102-27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집단지식
	102-28	최고의사결정기구 성과 평가
	102-29	경제적, 환경적 및 사회적 영향의 파악 및 관리
	102-30	위험 관리 절차의 효과성
	102-31	경제, 환경 및 사회적 도덕에 대한 검토
	102-32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역할
	102-33	중요 사안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102-34	중요 사안의 특성 및 수
	102-35	보상 정책
	102-36	보수 결정 절차
	102-37	보수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 참여
	102-38	연간 총 보상 비율
	102-39	연간 총 보상 비율의 증가율
	이해관계자 참여	102-40
102-41		단체협약
102-42		이해관계자 파악 및 선정

	102-43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102-44	핵심 주제 및 관심사항
보고 관행	102-45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조직
	102-46	보고 내용 및 주제의 경계 정의
	102-47	중요한 토픽 목록
	102-48	정보의 재기술
	102-49	보고의 변경
	102-50	보고 기간
	102-51	최근 보고 일자
	102-52	보고 주기
	102-53	보고서 문의처
	102-54	GRI Standards 부합 방법(핵심적 또는 포괄적)
	102-55	GRI 인덱스
	102-56	외부 검증
	GRI 103 : 경영접근방식공개	
	103-1	중요한 토픽 및 그 경계에 대한 설명
	103-2	경영 접근 및 구성요소
	103-3	경영 접근에 대한 평가
GRI 201 : 경제성과		
	201-1	직접적 경제가치 발생과 분배
	201-2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및 기타 위험과 기회
	201-3	확정급여형 연금제도 채무 충당
	201-4	정부 재정지원
GRI 202 : 시장지위		
	202-1	사업장 소재 지역의 최저 임금 대비 성별 초임 임금의 비율
	202-2	사업장 소재 지역사회에서 고용된 고위 임원의 비율
GRI 203 : 간접 경제적 영향		
	203-1	사회기반시설 투자 및 서비스 지원
	203-2	중요한 간접 경제 영향
GRI 204 : 조달관행		
	204-1	지역 공급업체에 지출하는 비율
GRI 205 : 반부패		
	205-1	사업장 부패 위험 평가
	205-2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
	205-3	확인된 부패 사례 및 조치
GRI 206 : 경쟁저해행위		
	206-1	경쟁저해 및 독과점금지 위반 관련 법적 행동
GRI 301 : 원재료		
	301-1	원재료의 중량 또는 부피
	301-2	재생 원재료 사용
	301-3	제품 및 포장 재료의 재생
GRI 302 : 에너지		
	302-1	조직 내 에너지 소비
	302-2	조직 밖에서의 에너지 소비
	302-3	에너지 집약도

	302-4	에너지 소비 감축
	302-5	제품 및 서비스의 에너지 요구량 감축
GRI 303 : 용수		
	303-1	공유 자원으로서의 물과의 상호작용
	303-2	물 방류 관련 영향의 관리
	303-3	취수
	303-4	물 방류
	303-5	물 소비
GRI 304 : 생물다양성		
	304-1	보호지역 및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 또는 인근의 사업장
	304-2	생물다양성에 대한 상당한 영향을 주는 활동, 제품 및 서비스
	304-3	보호 또는 복원된 서식지
	304-4	사업 영향 지역 내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및 국가보호종
GRI 305 : 배출		
	305-1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Scope1)
	305-2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Scope2)
	305-3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Scope3)
	305-4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305-5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305-6	오존층 파괴 물질의 배출량
	305-7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및 기타 중요한 대기 배출량
GRI 306 : 폐수 및 폐기물		
	306-1	수질 및 목적지별 방류
	306-2	유형 및 처리방법별 폐기물
	306-3	중요한 유출
	306-4	유해 폐기물의 운반
	306-5	방류 또는 유출의 영향을 받는 수원
GRI 307 : 환경적 컴플라이언스		
	307-1	환경 규제 위반
GRI 308 : 공급업체 환경평가		
	308-1	환경 기준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
	308-2	공급망의 부정적 환경 영향 및 이에 대한 조치
GRI 401 : 고용		
	401-1	신규채용 및 이직
	401-2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정규직 근로자의 복리후생
	401-3	육아휴직
GRI 402 : 노사관계		
	402-1	운영상의 변화와 관련한 최소 공지기간
GRI 403 : 산업 보건 및 안전		
	403-1	작업장 보건 및 안전 관리 시스템
	403-2	위해 인식, 위험 평가 및 사고 조사
	403-3	작업장 보건 서비스
	403-4	작업장 보건 및 안전 관련 노동자 참여, 자문 및 커뮤니케이션
	403-5	작업장 보건 및 안전 관련 근로자 교육
	403-6	근로자 건강 증진

	403-7	작업장 보건 및 안전 영향의 예방 및 완화
	403-8	작업장 보건 및 안전 관리 시스템의 적용 대상 근로자
	403-9	업무관련 부상
	403-10	업무관련 질병
GRI 404 : 훈련 및 교육		
	404-1	직원 1인당 평균 교육 시간
	404-2	직원 역량 강화 및 전환 지원 프로그램
	404-3	정기적 성과 및 경력 개발 검토를 받는 직원의 비율
GRI 405 : 다양성 및 기회균등		
	405-1	경영 조직 및 직원의 다양성
	405-2	남성 대비 여성의 기본급 및 보상 비율
GRI 406 : 차별금지		
	406-1	차별 사건 및 이에 대한 시정조치
GRI 407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407-1	단결 및 단체교섭의 자유가 훼손될 위험이 있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
GRI 408 : 아동노동		
	408-1	아동 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및 공급업체
GRI 409 : 강제노동		
	409-1	강제 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및 공급업체
GRI 410 : 보안관행		
	410-1	인권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교육을 받은 보안 요원
GRI 411 : 원주민 권리		
	411-1	원주민 권리 침해 사고
GRI 412 : 인권평가		
	412-1	인권 관련 검토 또는 영향 평가 대상 사업장
	412-2	인권 정책 및 절차 관련 직원 교육
	412-3	인권 관련 조항 또는 심사 시행 관련 주요 투자 협정 및 계약
GRI 413 : 지역사회		
	413-1	지역사회 참여, 영향 평가 및 발전 프로그램 운영 사업장
	413-2	지역사회에 중요한 실제적 및 잠재적 부정적 영향이 존재하는 사업장
GRI 414 : 공급업체 사회 영향 평가		
	414-1	사회 기준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
	414-2	공급망 내 부정적 사회 영향 및 이에 대한 조치
GRI 415 : 공공정책		
	415-1	정치 기부금
GRI 416 : 고객 보건 및 안전		
	416-1	제품 및 서비스의 보건 및 안전 영향 평가
	416-2	제품 및 서비스의 보건 및 안전 영향 관련 위반 사건
GRI 417 : 마케팅 및 라벨링		
	417-1	제품 및 서비스 관련 정보 및 라벨링 요구사항
	417-2	제품 및 서비스 정보 및 라벨링 관련 위반
	417-3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관련 위반
GRI 418 : 고객개인정보		
	418-1	고객 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데이터 분실 관련 상당한 불만
GRI 419 : 사회경제적 컴플라이언스		
	419-1	사회적 및 경제적 분야 법률 및 규정 위반

### <첨부3> SASB 77개 산업분류 및 중요성 지도

#### 소비재

- 가정 및 개인용품
- 대형 및 전문 유통 및 배급
- 전자상거래
- 의류, 액세서리 및 신발류
- § 건축품 및 가구
- 가전제품 제조
- 완구류 및 스포츠용품

#### 헬스케어

- 바이오기술 및 제약
- 의료장비 및 의약품
- 헬스케어 제공
- 헬스케어 유통
- 관리형 의료
- 약품 유통

#### 인프라

- 전력 및 발전
- 가스 유틸리티 및 유통
- 수자원 유틸리티 및 서비스
- 폐기물 관리
- 엔지니어링 및 건축 서비스
- 주택건설
- 부동산
- 부동산 서비스

#### 금융

- 상업은행
- 투자은행 및 중개
- 자산관리 및 보관활동
- 소비자 금융
- 모기지 금융
- 증권 및 상품거래
- 보험

#### 기술 및 통신

- 제조전문서비스업(EMS) 및 제조자설계생산(ODM)
-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 하드웨어
- 반도체
- 통신 서비스
- 인터넷 미디어 및 서비스

#### 운송

- 자동차
- 자동차 부품

#### 식음료

- 농산물
- 육류, 가금류 및 유제품
- 가공식품
- 비알코올음료
- 알코올음료
- 담배
- 식품 유통 및 배급
- 식당

#### 재생가능 자원 및 대체 에너지

- 바이오연료
- 태양 에너지 및 프로젝트 개발자
- 풍력 에너지 및 프로젝트 개발자
- 연료 전지 및 공업용 전지
- 임업 경영
- 펄프 및 종이 제품

#### 추출물 및 광물 처리

- 석유 및 가스 . 탐사 및 생산
- 석유 및 가스 . 중류
- 석유 및 가스 . 정제 및 판매
- 석유 및 가스 . 서비스
- 석탄 사업
- 철강 제조
- 금속 및 채광
- 건축 자재

#### 서비스

- 교육
- 전문 및 상업 서비스
- 호텔 및 숙박
- 카지노 및 게임
- 레저시설
- 광고 및 엔터테인먼트
- 미디어 제작 및 배급

#### 자원 변환

- § 화학
- § 우주항공 및 국방
- 전기 및 전자장비
- 산업기계 및 제품
- 용기 및 포장

- 차량 렌트 및 리스
- 항공
- 항공 운송 및 물류
- 해상 운송
- 철도 운송
- 도로 운송
- 크루즈선

<SASB의 중요성 지도(Materiality Map)>

섹터 내 산업의 50% 이상에 중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이슈  
 섹터 내 산업의 50% 이하에 중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이슈  
 섹터 내 어느 산업에도 중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없는 이슈

분야	이슈	소비재	추출물/ 광물/가 공	금융	식품/ 음료	헬스케 어	인프라	재생가 능자원 대체에 너지	자원전 환	서비스	기술/ 통신	운송
환경	GHG배출											
	대기질											
	에너지관리											
	물/폐수관리											
	폐기물/유해물질관리											
	생물다양성영향											
사회자 본	인권/지역사회관계											
	고객개인정보											
	데이터보안											
	접속/적정가격											
	제품품질/안전											
	소비자복리											
	판매관행/제품표시											
인적자 본	노동관행											
	종업원안전/위생											
	종업원참여/다양성											
비즈니스 모델/ 이노베 이션	제품디자인/라이프사이클 관리											
	비즈니스모델회복력											
	공급체인관리											
	재료조달/효율성											
	기후변화 물리적 영향											
리더십/ 지배구 조	사업윤리											
	경쟁적행위											
	법/규제 환경관리											
	중대사고위험관리											
	시스템적리스크관리											

※ 자료출처 :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첨부4> TCFD 가이드선 주요 내용**

TCFD는 2017년 최종보고서 이후 지속적으로 가이드선을 구체화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홈페이지(26)에 게재하고 있음. 이하는 2021. 10.에 발표한 “TCFD 권고 정보 공개사항의 시행” 이라는 가이드선(27) 중 필요 부분\*을 발췌·번역한 것으로 위 2017년 최종 보고서에서 업데이트된 사항이 반영되어 있음.

\* 모든 업종에 대한 가이드선 부분만 발췌한 것이고 금융업에 대해서는 이에 더해 추가적인 가이드선이 적용, 자세한 내용은 상기 2021년 가이드선의 섹션 D(금융 업종을 위한 추가적 가이드선, p.23~p.54) 참조.

<p>지배구조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에 대한 조직의 지배구조를 공개해야 합니다.</p>	
<p>권고 정보 공개사항 a)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에 대한 이사회와 감독에 관해 설명하세요.</p>	<p>모든 업종에 대한 가이드선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이사회와 감독에 관한 섹션을 기술할 때 회사는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떤 이사회 또는 이사회 내의 위원회(예를 들어, 감사, 위험관리, 등 위원회)가 기후변화 이슈를 관리·감독하여 그 절차 및 빈도는 어떠한지</li> <li>- 이사회나 위원회가 회사의 실적 목표의 수립, 실행 및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 주요자본 지출·인수합병·매각에 대한 감독뿐만 아니라 회사의 전략이나 주요 실행 계획, 위험관리 정책, 연간 예산, 비즈니스 계획을 검토할 때 기후변화 이슈를 고려하는지</li> <li>- 이사회가 기후변화 이슈 대응을 위한 목표와 대상을 어떤 방식으로(How) 모니터링하고 감독하는지</li> </ul>
<p>권고 정보 공개 사항 b)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하는지에 관한 경영진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세요.</p>	<p>모든 업종에 대한 가이드선 기후 변화 이슈의 평가와 관리에 관한 이사회와 감독에 관해 기술할 때에는 회사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가 기후변화 관련 책임을 임원이나 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는지, 만일 그러하다면 해당 책임을 부여 받은 임원이나 위원회가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 관련 문제를 보고하는지 및 그러한 책임에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li> <li>- 회사의 관련 조직 구조에 관한 설명</li> <li>- 기후변화 관련 이슈에 대해 경영진이 정보를 파악하는 절차</li> <li>- 경영진(구체적 지위 및/또는 관련 위원회)가 어떻게 기후변화 이슈를 모니터링 하는지</li> </ul>

<p>전략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가 그러한 정보가 중요한 조직의 사업, 전략 및 재무 계획에 미치는 실질적 및 잠재적 영향을 공개해야 합니다.</p>	
<p>권고 정보 공개 사항 a) 단기, 중기 및 장기간에</p>	<p>모든 업종에 대한 가이드선 회사는 다음의 정보들을 제공해야 합니다.</p>

<p>결쳐 파악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설명하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가 단기 중기 장기의 기간을 설정할 때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는지 (회사 자산이나 기반시설의 내용연수 및 기후 변화이슈가 주로 중기나 장기에 걸쳐 나타난다는 사실 포함)</li> <li>- 단기·중기·장기에 걸쳐 회사에 중대한 재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기후 변화 이슈</li> <li>- 어떤 기후변화 위험과 기회가 회사에 중대한 재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절차들</li> </ul> <p>회사는 업종이나 지정학적 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여 기후변화 위험과 기회에 관해 기술해야 합니다. 기후변화 이슈에 관해 서술할 때에는 Tables A1.1 및 A1.2(TCFD 기후변화 위험과 기회 및 그것이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관한 예시를 제시한 표(2021.10 업데이트 뒤에 덧붙인 표 참조할 것) bp.75-76) 을 참조하세요.</p>
<p>권고 정보 공개 b)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가 조직의 사업, 전략 및 재무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p>	<p>모든 업종에 대한 가이드스</p> <p>위 권고 정보 공개사항 a)에 의거하여 회사가 찾아낸 기후변화 이슈가 회사의 영업 및 전략이나 재무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 때 회사는 다음의 각 영역에서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 및 서비스</li> <li>- 공급망 및 가치사슬</li> <li>-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와 관련한 활동</li> <li>- R&amp;D 투자</li> <li>- 사업(각 사업의 종류와 시설의 위치 포함)</li> <li>- 인수 및 매각</li> <li>- 자산에 대한 접근성</li> </ul> <p>회사는 기후변화 이슈가 어떻게 그들의 재무 계획 수립 과정이나 기간 설정에 들어가는지를 서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후변화 위험이나 기회가 얼마나 우선적으로 처리되고 있는지를 서술하세요. 이때 회사의 공시담당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회사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소들간 상호의존성의 전체적인 그림을 반영해야 합니다.</p> <p>회사는 매출이나 비용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적 성과 또는 자산이나 부채와 같은 재무상태에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 서술해야 합니다. 만일 기후변화 관련 시나리오가 회사의 전략이나 재무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러 한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서술해야 합니다.</p> <p>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약속을 한 회사들이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투자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로 합의한 회사들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회사의 계획에 대해서 서술해야 합니다. 동 계획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그들이 이러한 목표 달 성을 위해 사업운영과 가치사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또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가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p>
<p>권고 정보 공개 사항 c) 2° C 또는 그보다 낮은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다른 기후변화 관련 시나리</p>	<p>모든 업종에 대한 가이드스</p> <p>회사는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해 그들의 전략이 얼마나 탄력적인 지에 관해 서술해야 합니다. 이때 20 또는 그보다 낮은 시나리오와 일치하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하며, 회사와 관련이 있다면 증가한</p>

<p>오를 고려하여 회사 전략의 탄력성(Resilience)에 대해 설명하세요.</p>	<p>기후변화 관련 물리적 위험에 일치하는 시나리오도 고려해야 합니다. 회사는 다음의 사항들을 서술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변화 위험과 기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회사의 전략들</li> <li>- 위와 같은 잠재적 위험과 기회에 의해 회사의 전략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li> <li>- 매출이나 비용과 같은 재무성과 및 자산, 부채와 같은 재무상태에 대해 기후변화 관련 이슈가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li> <li>- 기후 변화 관련 시나리오 및 이와 관련된 기간(Time horizons)</li> </ul> <p>미래예측적 분석에 적용되는 시나리오들에 관한 TCFD 최종보고서(2017)의 섹션 D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	---

<p>위험 관리 회사가 기후변화 위험을 어떻게 규명하고 평가하며 관리하는지 공개해야 합니다.</p>	
<p>권고 정보 공개 사항 a)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프로세스를 설명하세요.</p>	<p>모든 업종에 대한 가이드스 회사는 기후변화 위험을 규명하고 평가하기 위한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관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회사가 어떻게 회사의 다른 위험들과 비교하여 기후변화 관련 위험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결정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는 다른 관련 요소들 외에 현재 또는 앞으로 다가오는 기후변화 관련 규제사항 들(예를 들어, 배출가스 규제) 을 고려하고 있는지를 서술해야 합니다. 회사는 다음의 사항들을 서술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명된 기후변화 위험의 잠재적 크기와 범위를 평가하기 위한 프로세스</li> <li>- 설명 시 사용한 위험 관련 전문용어들의 정의 또는 적용한 위험 분류 프레임워크에 대한 참조</li> </ul>
<p>권고 정보 공개 사항 b)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설명하세요.</p>	<p>모든 업종에 대한 가이드스 회사는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설명해야 하며, 이에는 회사가 어떻게 해당 위험의 완화, 전이, 수용 또는 통제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어떻게 기후변화 위험의 중대성에 대한 결정 (Materiality determinations)이 이루어지는지를 포함하여 기후변화 위험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프로세스를 설명해야 합니다. 기후변화 위험 관리 프로세스를 설명할 때에는 가능하다면 표 A1.1 + 1.2(pp. 75-76)의 위험들을 다루어야 합니다.</p>
<p>권고 정보 공개 사항 c)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조직의 전반적인 위험 관리에 어떻게 통합되는지 설명하세요.</p>	<p>모든 업종에 대한 가이드스 회사는 기후변화 위험 규명, 평가, 관리 프로세스가 어떻게 그들의 전체적인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에 통합되는지를 서술해야 합니다.</p>

지표와 감축목표 해당 정보가 재정적으로 중요한 경우 연관된 기후 변화에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지표와 감축목표를 공개해야 합니다.	
<p>권고 정보 공개 사항 a) 회사가 전략 및 위험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기후 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지표를 공개하세요.</p>	<p>회사는 표A1.1과 A1.2(pp. 75-76) 대로 기후변화 위험과 기회를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된 핵심 지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표A2.1(p. 79)에 제시된 이종 산업 (Crossindustry), 기후 관련 지표 카테고리대로 해당 지표들을 공개해야 합니다. 회사는 그것이 관련성이 있고 적용 가능한 것이라면, 물, 에너지, 토지 사용 및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기후변화 위험 지표를 포함해 설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p> <p>기후변화 관련 이슈가 중요한 것이라면, 회사는 그들의 보수 (Remuneration) 정책에 관련 성과지, 표들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하여 서술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p> <p>관련이 있다면, 회사는 저탄소 경계를 위한 제품과 서비스에서 발생한 매출과 같이 기후변화 관련 기회에 관한 지표뿐만 아니라 그들의 내부탄소 가격(Internal carbon prices)에 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p> <p>추세 분석을 위해 과거 기간에 대한 측정 지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적절하다면, 회사는 표A2.1(p. 79)에 제시된 이종 산업, 기후 관련 지표 카테고리를 위해 그들의 영업 또는 전략 계획과 일치하는 미래 예측 지표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표가 명확하지 않다면 기후변화 관련 지표의 추정법 또는 계산법에 관한 설명도 제공해야 합니다.</p>
<p>권고 정보 공개 사항 b) Scope1, Scope2 및 적절한 경우 Scope3 까지, 온실가스(GHG) 배출량 및 관련 위험을 공개하세요.</p>	<p>회사는 중대성 평가와 관계 없이 Scope1 및 Scope2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만일 적절하다면 Scope3 온실가스 배출 및 이와 관련된 위험에 관한 정보들도 공개해야 합니다. 모든 회사는 Scope3 온실가스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p> <p>회사 또는 관할지역간 비교가능성 및 합계산출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은 온실가스 협약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산업별 온실가스 효율(GHG efficiency ratios)에 관한 적절한 정보 제공도 고려해야 합니다.</p> <p>추세분석을 위해 과거기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및 관련 지표를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회사는 추정법 또는 계산법에 관한 설명도 제공해야 합니다.</p>
<p>권고 정보 공개 사항 c) 기후 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의 관리를 위해 회사가 설정한 목표와 목표 달성 정도에 관해 설명하세요.</p>	<p>회사는 표A2.10. 79)의 이종 산업, 기후 관련 지표 카테고리에 일치하여 온실가스 배출, 물 사용, 에너지 사용 등과 관련된 핵심 기후변화 목표에 관한 사항을 서술해야 합니다. 해당 서술은 예상되는 규제 사항이나 시장의 제약 또는 다른 목표들과도 적절하게 일치되어야 합니다. 다른 목표에는 효율성이나 재무적 목표, 손실 허용 한계치, 제품의 생애주기 전체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또는 저탄소 경계를 위한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에 관한 순수익 목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p> <p>목표에 관해 서술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가 집적도 기준인지 절대량 기준인지</li> <li>- 각 목표가 적용되는 기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이 이루어지는 기준연도</li> <li>- 목표를 향한 진척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핵심성과지표</li> </ul> <p>중기 또는 장기 목표를 공개하는 회사는 가능하다면 전체 또는 사업 분야 별로 관련 중간 목표 (Interim targets)도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목표와 지표의 계산에 사용된 방법에 관한 정보도 제공되어야 합니다.</p>
--	--

표 A1.1

기후변화 관련 위험 및 해당 위험이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예시

종류	기후변화 관련 위험	잠재적 재무적 영향
전 환 위 험	<p>정치 및 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가된 온실가스 배출 가격</li> <li>- 강화된 온실가스 공시 의무</li> <li>- 회사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 및 의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가된 영업비용(예: 높아진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된 보험료 등)</li> <li>- 정책변화로 인해 발생한 상각, 손상 및 자산의 조기 폐기</li> <li>- 증가된 비용 및/또는 벌금 및 판결로 인해 줄어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li> </ul>
	<p>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배출량이 더 적은 제품 및 서비스로의 대체</li> <li>- 성공적이지 못한 새로운 기술 투자</li> <li>- 탄소 배출 저감 기술로의 전환비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 자산의 조기 폐기 또는 상각</li> <li>-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줄어든 수요</li> <li>- 신기술 내지 대안이 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R&amp;D)비용</li> <li>- 새로운 관행 및 프로세스 도입·배치에 소요되는 비용</li> </ul>
	<p>시 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화하는 소비자 태도</li> <li>- 시장 신호들의 불확실성</li> <li>- 증가된 원자재 비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 선호 변화로 인해 발생한 제품 및 서비스 수요 감소</li> <li>- 변화하는 생산 비용(예: 에너지, 물) 및 생산 요건(예: 물 소비)으로 인해 증가된 생산 비용</li> <li>- 갑작스럽고 예상하지 못했던 에너지 비용</li> <li>- 수익 감소를 야기한 매출 구성과 원천의 변화</li> <li>- 자산의 재평가(예: 화석 연료 수익, 토지 또는 증권에 대한 가치평가)</li> </ul>
	<p>평 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 선호의 변화</li> <li>- 해당 분야에 대한 비난(Stigmatization)</li> <li>- 증가된 이해관계자 영향 또는 이해관계자의 부정적 피드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 및 서비스의 감소에서 비롯된 수익 감소</li> <li>- 생산 능력 감소(예: 계획된 승인의 지연, 공급망 장애 등)로 발생한 수익 감소</li> <li>- 노무 관리 및 계획(예: 채용 및 고용된 인원 유지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 감소</li> <li>- 자본 가용성(Capital availability)의 감소</li> </ul>

물리적 위험	급 성 (Acu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 능력의 감소로 인한 수익 감소(예: 운송 장애, 공급망 장애 등)</li> <li>-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예: 건강이상, 안전에 대한 위해, 결근)으로 발생하는 수익 감소 및 비용 증가</li> <li>- 자산의 상각 및 조기 폐기(예: 고위험 지역 자산 및 부동산의 훼손)</li> </ul>
	만 성 (Chron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가된 영업비용(예: 수력발전소에 대한 부족한 물 공급 부족 또는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li> <li>- 증가된 자본 비용(예: 시설 훼손)</li> <li>- 낮은 매출/산출로 인해 감소한 수익</li> <li>- 증가한 보험료 및 고위험 지역 자산에 대해 줄어든 보험 가능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풍이나 홍수와 같은 기상 악재의 심각성 증가</li> <li>- 강우 패턴 변화 및 날씨 패턴의 극심한 변동성</li> <li>- 평균 기온의 상승</li> <li>- 해수면의 상승</li> </ul>	

표 A1.2

기후변화 관련 기회 및 해당 기회가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예시

종류	기후변화 관련 기회	잠재적 재무적 영향
자원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더 효율적인 운송 방식의 사용</li> <li>- 더 효율적인 생산·유통 방식 사용</li> <li>- 재활용</li> <li>- 고효율 건물로의 이전</li> <li>- 물 사용 및 소비 감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비용의 감소(예: 고효율로 인한 수익 증가 및 비용 감소)</li> <li>- 증가된 생산 능력에서 나오는 수익 증가</li> <li>- 증가된 고정 자산 가치(예: 높게 평가받는 에너지 효율 빌딩)</li> <li>- 노무 관리 및 계획에 있어서의 이점(예: 건강 및 안전 향상, 직원 만족도 향상 등)으로 인한 비용 감소</li> </ul>
에너지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해배출이 낮은 에너지 사용</li> <li>- 지원 정책 인센티브</li> <li>- 신기술의 도입</li> <li>- 탄소 시장에서의 참가</li> <li>- 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비용의 감소(예: 최고 비용절감 방식 사용)</li> <li>- 장래 화석연료 가격 상승에 대한 노출도 감소</li> <li>-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노출도 감소 및 탄소 비용 변화에 대한 민감성 저하</li> <li>-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li> <li>- 증가된 자본 가용성(예: 탄소배출량이 낮은 회사에 대한 투자 선호)</li> <li>- 평판상의 이점으로 인해 증가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li> </ul>
제품 및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탄소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 및 확대</li> <li>- 기후 변화 적응 및 보험 위험 해결 방안의 개발</li> <li>- R&amp;D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개발</li> <li>- 영업활동 다각화 능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탄소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서 발생하는 수익 증가</li> <li>-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 수요에서 발생하는 증가된 수익(예: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보험 위험 이전)</li> <li>- 소비자 선호의 변화를 반영한 경쟁력 있는 지위 획득에서 발생하는 수익 증가</li> </ul>

시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시장에서의 접근</li> <li>- 공공분야 인센티브 활용</li> <li>- 보험 커버리지가 필요한 새로운 자산 및 지역에 대한 접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흥시장에서의 접근을 통해 증가된 수익(예: 정부, 개발은행과의 파트너십)</li> <li>- 금융자산의 다각화 증대(예: 녹색채권 및 기반시설)</li> </ul>
탄 력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생에너지 프로그램 참가 및 에너지 효율화 방안의 도입</li> <li>- 자원 대체물 / 다각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력적 계획을 통해 증가한 시장 가치평가(예: 기반시설, 토지, 빌딩)</li> <li>- 공급망 안정성 및 다양한 상황에서의 영업능력 증가</li> <li>- 탄력성 보장과 관련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통한 수익 증가</li> </ul>

**표 A2.1 & 지표, 목표 및 전환 계획에 관한 TCFD 가이드선 표 C1**

**이중산업, 기후 관련 지표 카테고리 및 예시**

지표 카테고리	측정 지표 단위 및 예시	포함 근거
온실가스 배출 절대량 기준 Scope1, Scope2 및 Scope3; 배출 강도	단위 지표: CO2e 톤(MT) - Scope1, 2, 3 온실가스 절대 배출량 - 자산군별로 자신이 제공한 금융을 이용한 기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Financed emissions) - 센상 전력 MWh당 온실가스 배출량 - 탄소제한 규제하에 있는 전체 Scope1 배출량 총계	온실가스 배출 공개는 이용자들이 회사의 기후변화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익스포저를 이해함에 있어 중요함. 회사의 가치사슬 전체에 걸친 절대 배출량 공개 및 관련성 있는 배출 강도 공개는 이용자들이 하여금 기후변화 억제 관련 정책이나 규제, 시장, 기술에 의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받을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전환 위험 전환위험에 취약한 자산이나 영업활동의 양이나 정도	단위 지표: 양 또는 % - 전환위험에 대해 높은 익스포저를 가진 부동산 담보물 양 - 탄소관련 자산 신용 익스포저 집중도 - 채탄(Coal mining) 매출 비중 - 국제항공(CORISA) 탄소 상쇄 및 감축 계획으로 커버되지 않는 인킬로미터 매출 비중	기후변화 전환 위험에 취약한 회사의 자산 또는 영업활동의 양이나 정도에 대한 정보 공개는 이용자들이 하여금 해당 이슈로 인한 폐기 또는 좌초 자산,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영향 및 영업활동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관한 잠재적 재무 익스포저를 이해할 수 있게 함.
물리적 위험 물리적 위험에 취약한 자산 또는 영업활동의 양 및 정도	단위 지표: 양 또는 % - 백년 빈도 홍수위험 지역의 부동산 담보대출량 및 가치 - 백년 빈도 홍수지역의 하수처리 능력 - 높은 또는 매우 높은 물부족 기준 지역에서의 취수 및 물소비와 관련된 매출 - 홍수, 폭염 또는 물부족 위험이 있는	중대한 기후변화 관련 물리적 위험에 대해 취약한 자산이나 영업활동의 비중을 공개함으로써 정보 이용자들이 하여금 해당 이슈로 인한 폐기 또는 좌초 자산,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영향 및 영업활동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관한 잠재적 재무 익스포저를 이해할 수 있게 함.

	<p>지역에서의 자산, 기반시설 또는 대체 자산 포트폴리오 비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 100 또는 1 : 200 기후변화 위험에 노출된 부동산 자산 비중</li> </ul>	
<p>기후변화 관련 기회</p> <p>기후변화 관련 기회에 부합하는 매출, 자산 또는 다른 영업활동의 비중</p>	<p>단위 지표: 양 또는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 효율 및 저탄소 기술 관련 순보험료</li> <li>- (1)탄소배출제로 차량, (2)하이브리드 차량, (3)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량</li> <li>-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돕는 제품 및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매출</li> <li>- 제3자 인증, 다중 녹색건축 기준 건물 양</li> </ul>	<p>기후변화 관련 기회에 부합하는 매출, 자산 또는 업활동의 비중을 공개함으로써 이용자들로 하여금 동종업종에 비해 회사가 어느정도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하고, 개연성있는 기후변화 전환 과정 및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할 매출 및 수익성의 잠재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게 함.</p>
<p>자본 배분</p> <p>자본적 지출, 자금조달 또는 기후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투자 정도</p>	<p>보고 통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탄소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연간 R&amp;D 투자 퍼센트</li> <li>- 기후변화 적응 방안에 대한 투자(예: 토양의 질 개선, 관개, 기술)</li> </ul>	<p>비금융회사의 자본투자 공시 및 금융회사의 자본조달 공시로 이용자들로 하여금 그것이 회사의 장기적 가치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있게 함.</p>
<p>내부탄소가격 (Internal Carbon Prices)</p> <p>회사 내부에서 책정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톤당 가격</p>	<p>보고 통화 표시 가격, CO2e 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탄소가격</li> <li>- 지역별 잠재 탄소 가격(Shadow carbon price)</li> </ul>	<p>내부탄소가격은 정보 이용자들에게 회사의 기후변화 위험 및 기회에 대한 평가 및 전략 탄력성의 합리성에 대한 이해를 제공함. 내부탄소가격을 공개함으로써 이용자들은 어떤 회사기 앞으로 있을 기후변화관련 정책 변화에 취약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고, 어떤 회사가 전환 위험에 대한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에 적응할지 알아낼 수 있음.</p>
<p>보상</p> <p>기후변화를 고려한 경영진 보상 비율</p>	<p>%, 가중치, 설명, 또는 보고 통화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변화 관련 제품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연간 재량 상여금의 비중</li> <li>- 집행이사에 대한 기후변화 목표 달성 장기 인센티브 심사 가중치</li> <li>-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실적 가중치</li> </ul>	<p>보상정책은 회사의 기후변화 관련 목표 및 목적 달성을 위한 중요한 인센티브이며 회사의 지배구조, 관리 · 감독 및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감을 알 수 있게 함.</p>

<첨부5> MSCI ESG 핵심 이슈 체계

다른 평가기관들과 마찬가지로 MSCI도 업종별로 핵심 ESG 이슈(35가지)를 정한 다음 해당 이슈에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ESG 평가를 하고 있음.

< MSCI ESG 평가 핵심 이슈 체계 >

3핵심	10 테마	35 핵심 ESG 이슈
환경	기후 변화	탄소 배출 (Carbon Emissions) 환경 요인이 자금조달에 미치는 영향(Financing Environmental Impact) 제품 탄소 발자국(Product Carbon Footprint) 기후 변화 취약성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천연 자원	물 소비 (Water Stress) 원자재 조달 (Raw Material Sourcing) 생물다양성 & 토지 사용 (Biodiversity & Land Use)
	오염 & 폐기물	유독물질 배출 & 폐기물 (Toxic Emissions & Waste) 전자제품 폐기물(Electronic Waste) 포장재 & 폐기물(Packaging Material & Waste)
	환경 관련 기회	친환경 기술의 기회(Opportunities in Clean Tech) 재생에너지의 기회 (Opportunities in Renewable Energy) 녹색 건축의 기회 (Opportunities in Green Building))
사회	인적 자원	노무관리 (Labor Management) 인적자원개발 (Human Capital Development) 건강 & 안전 (Health & Safety) 공급망 노동 기준(Supply Chain Labor Standards)
	제조물 책임	제품안전 · 품질 (Product Safety & Quality) 사생활 · 정보 보안 (Privacy & Data Security) 화학적 안전 (Chemical Safety) 책임투자 (Responsible Investment) 금융 소비자 보호 (Financial Product Safety) 건강 · 인구 리스크(Health & Demographic Risky)
	이해관계자 대립	논란 있는 구매 · 조달 (Controversial Sourcing) 지역사회 관계 (Community Relations)
	사회적 기회	통신에 대한 접근 (Access to Communications) 의료에 대한 접근 (Access to Health Care) 금융에 대한 접근 (Access to Finance) 영양과 건강 기회(Opportunities in Nutrition & Health)
지배구조	지배구조	소유 & 지배 (Ownership & Board) 이사회 (Board) 보수 (Pay) 회계 (Board)
	기업 행동	기업 윤리 (Business Ethics) 세금 투명성 (Tax Transparency)

\* 3가지 핵심 중 지배구조 부분은 모든 회사들의 ESG 평가에 가중치로 작용함

(출처: MSCI, ESG평가 방법론, 2020.12, 4면, 표1 편집·번역)

'ESG 산업 중요성 지도(ESG Industry Materiality Map)'를 통해 해당 업종별 · 이슈별 가중치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ESG 중요성 평가 시 이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임. 업종은 GICS(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에 따라 구분하며 홈페이지에서 해당 분야

(Sector) 및 하위 업종(Sub-industry)을 선택하면 각 이슈별 ESG 평가 가중치를 확인할 수 있음.

MSCI의 구체적인 ESG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MSCI ESG 평가방법론을 참고 바람.

**<첨부6> S&P Global Ratings ESG 핵심 지속가능성 요소**

S&P Global은 자사 ESG 평가에서 '핵심 지속가능성 요소(Key Sustainability Factors)'라는 명칭으로 환경 및 사회와 관련한 주요 리스크 평가 기준을 공개하고 있음. 총 18개의 분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분야의 하위 섹터들마다 아래와 같이 가중치 및 KPIs를 밝힘.

**<S&P Global Ratings ESG 핵심 지속가능성 요소 - Technology 분야 섹터별 가중치>**

환경적 요소 : 가중치 및 KPIs			
S&P Global은 각 환경적 요소 하위 섹터별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업의 환경적 영향 관리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알리기 위해 각기 다른 양적 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ESG 평가 견해에는 해당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이나 선언 등과 같은 질적 지표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요소	하드웨어	반도체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온실가스 배출	35%	35%	70%
 폐기물 및 오염	35%	25%	10%
 물	20%	30%	10%
 토지 사용 및 생물 다양성	10%	10%	10%
사회적 요소 : 가중치 및 KPIs			
사회적 요소에 대한 가중치는 하위 섹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S&P Global은 하위 섹터 동종기업에 비례한 해당 기업의 사회적 영향 관리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알리기 위해 (비록 일부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하위 섹터들 전반에 걸쳐 유사한 평가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ESG 평가는 해당 기업의 안전 및 고객 참여 또는 인재 영입 전략의 질이나 효율성과 같은 질적 요소도 반영됩니다.			
요소	하드웨어	반도체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노동자 및 다양성	30%	35%	30%
 안전 관리	30%	20%	10%
 고객 관계	30%	30%	40%
 지역 사회	10%	15%	20%

(출처: S&P Global Ratings, ESG Evaluation Key Sustainability Factors: Technology,

2021. 7, 1면 · 4면, 발췌 · 번역)

<ESG 핵심 지속가능성 요소 - Technology 분야 중 반도체 섹터의 환경 부분 가중치 및 KPIs>

반도체			
반도체 섹터는 공급망 전체에 걸쳐서 에너지 사용이나 온실가스 배출, 폐기물 생산, 물 소비와 관련된 규제 및 평판 리스크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 물, 폐기물, 오염에 대해 더 높은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반도체 섹터 소속 회사들의 경우 토지 사용과 관련된 위험은 덜한 편입니다.			
요소	가중치	핵심 평가 지표(KPI)	기타 평가 지표
 폐기물 및 오염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cope1 배출 정도(개당 또는 매출 백만 달러당 이산화탄소 환산 톤[tCo2e])</li> <li>- Scope2 배출 정도(개당 또는 매출 백만 달러당 이산화탄소 환산 톤[tCo2e])</li> <li>- 에너지 소비 정도(개당 또는 매출 백만 달러당 MWh)</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탄소 또는 고효율 에너지 제품에서 발생 - 하는 매출(%)</li> <li>- 전체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중(%)</li> <li>- Scope3 배출(tCo2e)</li> </ul>
 온실가스 배출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폐기물 정도(백만달러당 톤)</li> <li>- 재활용/재사용/회수 폐기물(%)</li> <li>- 폐기물의 유해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활용가능한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매출(%)</li> <li>- 신고의무 있는 폐기물 또는 폐수 관련 사고 수</li> </ul>
 물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 사용 정도(개당 또는 매출 백만달러 당 입방 미터[m])</li> <li>- 물 부족 지역에서의 사업 운용(판매 물건 공장 위치 비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 재사용 비율(%)</li> <li>- 순 담수 소비량(m3)</li> </ul>
 토지 사용 및 생물 다양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물 다양성 활동에 대해 평가 및 감사를 받는 공급자들의 비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원자재의 지속가능성 있는 조달(제3자 인증)</li> </ul>

<ESG 핵심 지속가능성 요소 - Technology 파트 중 반도체 섹터의 사회 부분 가중치 및 KPIs>

반도체			
반도체 섹터의 경우 우리는 제품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숙련 노동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노동자 및 다양성 요소'에 가장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 및 산업 안전이 중요한 규제 및 평판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안전 관리'에도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섹터에 속한 회사들의 경우 지역 사회와 관련한 이슈에는 좀 덜 노출되는 편입니다.			
요소	가중치	핵심 평가 지표(KPI)	기타 평가 지표
 고객 관계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족 고객 %(전체 고객들 중 회사 조사에 응한 고객 중)</li> <li>- 순수 고객 추천 지수(Net Promoter Scor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출에서 R&amp;D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li> </ul>
 안전 관리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업재해 발생률</li> <li>- 산재 사망자 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재해 발생률</li> <li>- 연간 매출 중 제품 리콜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및 리콜 횟수</li> </ul>
 노동자 및 다양성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발적/비자발적 이직률</li> <li>- 전체 노동자와 주니어 및 시니어 관리직 및 수의 창출 기능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li> <li>- 풀타임 노동자당 직무 훈련 및 개발에 쓰는 평균 비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 참여 근로자 비율(%)</li> <li>- 남녀 임금 격차</li> <li>- 풀타임 노동자 당 직무 훈련 및 개발 평균 시간</li> </ul>
 지역사회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BITDA, 매출 또는 배당에서 지역 사회 참여에 들어간 비용(%)</li> <li>- 잠재적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평가 및 감사를 받는 공급자의 비율</li> <li>- 공급망 내 분쟁지역으로부터 발생한 매출, 자산 또는 비용의 비율</li> </ul>	

이하는 S&P Global이 공개한 핵심 지속가능성 요소 중 섹터별 가중치만 발췌하여 정리한 표 인바 하위 섹터별 핵심 평가 지표(KPIs)나 적용 범위(Scope) 등 자세한 내용은 S&P Global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참조 바람(아래 표 섹터별 URL 첨부).

의료 · 보건(Health Care)				
요 소		하위 섹터별 가중치(Weight)		
		의약 및 생명공학	의료기구 및 공급/생명과학	헬스케어 사업 및 서비스
환경	폐기물 및 오염	30%	40%* * 섹터별 요소중 단일 비중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부분은 굵은 글씨표시	25%
	온실가스 배출	30%	25%	40%
	물	30%	25%	25%
	토지 · 생물다양성	10%	10%	10%
사회	고객 관계	35%	30%	25%
	안전 관리	25%	40%	25%
	지역사회	20%	10%	25%
	노동자 및 다양성	20%	20%	25%

요 소		가중치(Weight)
환경	온실가스 배출	25%
	폐기물 및 오염	25%
	물	25%
	토지 · 생물다양성	25%
사회	안전 관리	25%
	지역사회	25%
	노동자 및 다양성	25%
	고객 관계	25%

부동산 · 건설(Real Estate)			
요 소		하위 섹터별 가중치(Weight)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운용업
환경	온실가스 배출	30%	40%
	폐기물 및 오염	30%	20%
	물	10%	25%
	토지 · 생물다양성	30%	15%
사회	노동자 및 다양성	20%	10%
	안전 관리	40%	20%
	고객 관계	20%	40%
	지역사회	20%	30%

운송(Transportation)										
요 소		하위 섹터별 가중치(Weight)								
		여객항공	항공화물	해상운송	육상운송	철도운송	철도여객	공항	항만	도로
환경	온실가스 배출	55%	50%	40%	45%	45%	55%	40%	30%	30%
	폐기물 및 오염	25%	30%	40%	35%	30%	20%	15%	30%	30%
	토지 · 생물다양성	10%	10%	10%	10%	15%	15%	25%	30%	30%
	물	10%	10%	10%	10%	10%	10%	20%	10%	10%
사회	안전 관리	35%	25%	50%	40%	35%	35%	35%	30%	30%
	노동자 및 다양성	30%	35%	30%	30%	40%	20%	15%	20%	10%
	고객 관계	25%	30%	10%	20%	10%	25%	15%	20%	30%
	지역사회	10%	10%	10%	10%	15%	10%	35%	30%	30%

화학(Chemicals)			
요 소		하위 섹터별 가중치(Weight)	
		범용화학(Commodity Chemicals)	특수화학(Specialty Chemicals)
환경	폐기물 및 오염	40%	45%
	온실가스 배출	40%	35%
	물	10%	10%
	토지 · 생물다양성	10%	10%
사회	안전 관리	40%	30%
	고객 관계	30%	40%
	노동자 및 다양성	10%	20%
	지역사회	20%	10%

기술(Technology)				
요 소		하위 섹터별 가중치(Weight)		
		하드웨어	반도체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환경	온실가스 배출	35%	35%	70%
	폐기물 및 오염	35%	25%	10%
	물	20%	30%	10%
	토지 · 생물다양성	10%	10%	10%
사회	노동자 및 다양성	30%	35%	30%
	안전 관리	30%	20%	10%
	고객 관계	30%	30%	40%
	지역사회	10%	15%	20%

레저 및 스포츠(Leisure and Sports)						
요 소		하위 섹터별 가중치(Weight)				
		호텔 및 리조트	카지노 및 도박	레저 시설	크루즈	레저 기구 · 제품
환경	온실가스 배출	25%	40%	25%	30%	20%
	폐기물 및 오염	25%	25%	25%	30%	40%
	물	25%	10%	25%	20%	20%
	토지 · 생물다양성	25%	25%	25%	20%	20%
사회	노동자 및 다양성	25%	20%	25%	25%	20%
	안전 관리	25%	40%	25%	35%	20%
	고객 관계	25%	20%	25%	25%	40%
	지역사회	25%	20%	25%	15%	20%

자재(Materials)				
요 소		하위 섹터별 가중치(Weight)		
		건설 자재 (Construction Materials)	건축 제품 (Building Products)	컨테이너 & 포장
환경	온실가스 배출	45%	30%	30%
	폐기물 및 오염	25%	40%	35%
	물	15%	15%	20%
	토지 · 생물다양성	15%	15%	15%
사회	고객 관계	35%	40%	40%
	안전 관리	30%	30%	25%
	노동자 및 다양성	20%	20%	25%
	지역사회	15%	10%	10%

자본재(Capital Goods)				
요 소		하위 섹터별 가중치(Weight)		
		공학 및 공사 (E&C,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항공우주 및 방위 (A&D, Aerospace and Defense)	기타 자본재
환경	온실가스 배출	25%	45%	40%
	폐기물 및 오염	25%	30%	30%
	토지 · 생물다양성	40%	15%	15%
	물	10%	10%	15%
사회	안전 관리	30%	30%	30%
	지역사회	20%	25%	20%
	노동자 및 다양성	25%	25%	25%
	고객 관계	25%	20%	25%

소매 및 식당(Retail and Restaurants)		
요 소		가중치(Weight)
환 경	폐기물 및 오염	40%
	온실가스 배출	20%
	물	20%
	토지 · 생물다양성	20%
사 회	고객 관계	30%
	노동자 및 다양성	30%
	안전 관리	25%
	지역사회	15%

금속 및 광업(Metals and Mining)			
		하위 섹터별 가중치(Weight)	
		광업	금속 생산 및 처리
환 경	온실가스 배출	25%	40%
	폐기물 및 오염	25%	30%
	물	25%	20%
	토지 · 생물다양성	25%	10%
사 회	안전 관리	40%	35%
	지역사회	30%	30%
	노동 및 다양성	20%	20%
	고객 관계	10%	10%

금융(Financial Services)		
요 소		가중치(Weight)
환 경	온실가스 배출	40%
	물	20%
	폐기물 및 오염	20%
	토지 · 생물다양성	20%
사 회	고객 관계	35%
	노동자 및 다양성	30%
	지역사회	20%
	안전 관리	15%

송전 · 송유 및 상수도(Electric Grids and Gas & Water Utilities)50				
요 소		하위 섹터별 가중치(Weight)		
		전기(송전)	가스	상수도
환 경	온실가스 배출	40%	50%	20%
	토지 · 생물다양성	30%	20%	10%
	폐기물 및 오염	20%	20%	30%
	물	10%	10%	40%
사 회	고객 관계	30%	25%	30%
	안전 관리	30%	35%	30%
	지역사회	20%	20%	30%
	노동자 및 다양성	20%	20%	10%

발전업(Power Generators)		
요 소		가중치(Weight)
환경	온실가스 배출	50%
	폐기물 및 오염	25%
	물	15%
	토지 · 생물다양성	10%
사회	지역사회	30%
	안전 관리	30%
	노동자 및 다양성	20%
	고객 관계	20%

통신업(Telecom)		
요 소		가중치(Weight)
환경	온실가스 배출	50%
	폐기물 및 오염	30%
	물	10%
	토지 · 생물다양성	10%
사회	고객 관계	40%
	노동자 및 다양성	20%
	안전 관리	20%
	지역사회	20%

종이 및 목재(Paper & Forest Products)		
요 소		가중치(Weight)
환경	토지 · 생물다양성	25%
	온실가스 배출	25%
	폐기물 및 오염	25%
	물	25%
사회	안전 관리	30%
	지역사회	30%
	노동자 및 다양성	30%
	고객 관계	10%

석유 및 가스(Oil & Gas)					
요 소		하위 섹터별 가중치(Weight)			
		상류 부문(Exploration and Production)	유전 서비스(Oilfield Services)	중류 부문 (Midstream)	하류 부문(Refining and marketing)
환경	온실가스 배출	40%	40%	40%	40%
	폐기물 및 오염	30%	30%	30%	30%
	토지 · 생물다양성	15%	15%	20%	10%
	물	15%	15%	20%	10%
사회	안전 관리	40%	40%	35%	45%
	지역사회	25%	20%	35%	25%
	노동자 및 다양성	25%	25%	15%	15%
	고객 관계	10%	15%	15%	15%

소비재(Consumer Goods)		
요 소	가중치(Weight)	
환 경	온실가스 배출	40%
	물	20%
	토지 · 생물다양성	20%
	온실가스 배출	20%
사 회	고객 관계	40%
	안전 관리	20%
	지역사회	20%
	노동자 및 다양성	20%

<첨부7> 국민연금의 ESG 평가 지표

구분	ESG이슈	정의	평가 지표
환 경 (E)	기후변화	탄소배출 관리 수준	온실가스관리시스템
			탄소배출량
			에너지소비량
	청정생산	환경유해물질 배출 관리수준	청정생산관리시스템
			용수사용량
			화학물질 사용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친환경 제품 개발	환경 친화적 제품 개발 노력 수준	폐기물 배출량
			친환경제품 개발 활동
친환경 특허			
친환경 제품 인증			
사 회 (S)	인적자원관리	근로환경과 인권 및 다양성 관리 수준	제품 환경성 개선
			급여
			복리후생비
			고용
			조직문화
			근속연수
			인권
	산업안전	작업장 내 안전성 관리 수준	노동관행
			보건안전시스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외부 인증
	하도급 거래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력업체 관리 수준	산재다발사업장 지정
			거래대상선정 프로세스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제품 안전	제품 안전성 관리 수준	협력업체 지원 활동
			하도급법 위반 사례
	공정경쟁	공정경쟁 및 사회발전 노력 수준	제품안전시스템
제품안전사고 발생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공정경쟁 저해 행위			
			정보보호시스템
			기부금

지배구조 (G)	주주의 권리	주주권리 보호 및 소통노력 수준	경영권 보호장치
			주주의견 수렴장치
			주주총회 공시시기
	이사회 구성과 활동	이사회의 독립성 및 충실성 수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이사회 구조의 독립성
			이사회의 사외이사 구성 현황
			이사회 활동
			보상위원회 설치 및 구성
	감사제도	감사의 독립성 수준	이사보수 정책 적정성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비율
			장기 재직 감사 또는 감사위원 비중
			감사용역 비용 대비 비감사용역 비용
	관계사 위험	관계사 부실로 인한 위험성 수준	순자산 대비 관계사 우발채무 비중
			관계사 매출 거래 비중
			관계사 매입 거래 비중
	배당	배당 등 주주가치 환원 노력 수준	중간/분기배당 근거 마련
총주주수익률			
최근 3년 내 배당 지급			
과소 배당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첨부 8> KCGS 평가 모형 체계 & 평가 문항 구성

평가 모형 체계

- 평가 모형 구성 및 개선 작업을 위해 KCGS ESG 모범규준\*과 국내 법·제도 및 국제 규범을 활용
- 평가 모형의 지속적 개정 작업을 통해 기업의 ESG 경영을 위한 기준점을 제공하고 평가 체계를 고도화

평가 영역	평가모형모델	KCGS 모범규준	법·제도·규범				
환경	<p>◆ 경영프로세스 모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종에 따른 환경 환경위험관리 및 설과평가 고려</li> <li>• 산업별 환경 민감도를 상·중·하로 구분하여 구성</li> <li>• 환경경영 체계, 성과, 이해관계자 대응 수준 판단</li> </ul>	<table border="1"> <tr><td>리더십과 거버넌스</td></tr> <tr><td>위험관리</td></tr> <tr><td>운영 및 성과</td></tr> <tr><td>이해관계자 소통</td></tr> </table>	리더십과 거버넌스	위험관리	운영 및 성과	이해관계자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li> <li>•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li> <li>• ISO 14001 및 환경</li> <li>•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TCFD) 등</li> </ul>
리더십과 거버넌스							
위험관리							
운영 및 성과							
이해관계자 소통							
사회	<p>◆ 이해관계자 모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과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형성한 대상에 중점</li> <li>• 산업 분류기준인 WICS 중분류로 분리하여 산업별로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사회책임경영 이슈 고려</li> </ul>	<table border="1"> <tr><td>리더십과 거버넌스</td></tr> <tr><td>비재무 위험 관리</td></tr> <tr><td>운영 및 성과</td></tr> <tr><td>이해관계자 소통</td></tr> </table>	리더십과 거버넌스	비재무 위험 관리	운영 및 성과	이해관계자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li> <li>• 사회적 책임 세계표준(ISO 26000)</li> <li>•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li> <li>• UN국제 인권 선언 및 OECD 인권실사지침 등</li> </ul>
리더십과 거버넌스							
비재무 위험 관리							
운영 및 성과							
이해관계자 소통							

지배 구조	◆ 통제기능 모델 • 지배구조가 작동하기 위한 주요 장치별 분류 • 일반 상장사 및 금융회사 특화 지배구조 요건 고려 • 자산 규모 및 이사회 내 주요 위원회 설치 여부, 세부 금융업권 특성 고려	이사회 리더십 주주권 보호 감사 주주 및 이해관계자 소통	• 상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 영국 FRC 및 일본 JPX 기업지배구조 코드 • ICGN 글로벌 지배구조 원칙 •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은행 지배구조 원칙 등

평가 문항 구성

- 기본평가는 기업 특성별로 분류 후 가점방식을, 심화평가는 부정적 ESG 이슈에 대한 감점방식을 적용
- 총 18개 대분류, 265개 핵심평가항목으로 구성되며 상세 평가문항은 평가대상 기업만 확인 가능
- 최종 등급은 기본평가 점수 백분율에서 심화평가 점수 백분율을 차감한 값을 기준으로 산정

유형분류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금융사 지배구조(FG)	
기본 평가	기업 분류	민감도별 분류	WICS 기준별 분류	자산규모별 분류	상장여부별 분류
		상	에너지	2조원 이상	상장 금융사
		중	소재	2조원 미만	비상장 금융사
		하	...		
	문항 구성	환경경영	근로자	주주권리보호	주주권리보호
		환경성과	협력사 및 경쟁사	이사회	이사회
		이해관계자 대응	소비자	감사기구	최고경영자
			지역사회	정보공개	보수
		3대 대분류	4대 대분류	(일반) 4대 대분류 (금융사) 7대 대분류	위험관리
					감사기구 및 내부통제 정보공개
심화 평가	분석 방법	• 기업 활동에서 발생한 부정적 이슈를 확인하기 위해 공시자료·뉴스·미디어 등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상시 수집 • 기업가치 훼손 우려가 높은 ESG이슈를 법 위반 여부·중대성·규모·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점 수준을 결정			

# 지방세입 관계법률 문답자료

- 행정안전부 -

## I. 경제활력 제고

### ㉮ 신성장·친환경 산업 혁신 지원

#### 1. 신성장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인센티브 강화(특례법)

- ① 신성장·원천기술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하여 감면을 연장·확대하는 이유?
- 지속적 경제 성장의 근간으로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동력으로서의 기업 R&D 투자를 장려하기 위함
  - 특히, 디지털 대전환 등 신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점을 감안,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의 경우 감면을 추가 확대
    - ※ (신성장·원천기술) ① 자율주행·전기차 ②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IT ③통신 ④바이오 ⑤원자력 ⑥항공·우주 ⑦반도체 ⑧탄소중립 등 (「조특법」시행령 별표7)

#### 2. 벤처기업육성촉진기구 내 기업 지원 확대 (특례법)

- ①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에 대하여 조례 감면을 추가하는 이유?
- 벤처기업은 국가경쟁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잠재력 높음
  - 지역별 특화지구 조성 등 벤처기업 유치 노력 장려하기 위하여, 지자체 감면 자율성을 부여

## &lt;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육성촉진지구' &gt;

- (개념)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협업화를 통한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
- (절차) 시·도지사 요청 시 중기부장관이 기반시설 등 고려하여 선정·지정
- (현황) 전국 26개 지구
  - 서울3, 경기5, 인천1, 부산 2, 대구2, 광주2, 대전1, 울산1, 강원2, 충북1, 충남1, 전북1, 전남1, 경북2, 경남1, 제주1

## 3.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지원 연장 (특례법)

- ① 하이브리드차 감면은 3년이 아닌 2년 연장하는 이유?
- 친환경 자동차 관련 국가 정책 기조와 연계될 필요
    - 하이브리드차가 저공해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분류되는 '24년\*까지 취득세를 감면하고, 향후 저공해 및 친환경자동차 분류체계, 산업동향 등을 고려하여 '24년 정기개정 시 재검토
    - \* 제19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22.2월)를 통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25.1.1.부터 저공해자동차에서 제외하기로 발표

## ㉒ 지역 경제 활성화

## 1.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한 특례 신설 (특례법)

- ① 인구감소지역이란?
-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시·군·구)으로서, 출생률·인구구조 등을 고려하여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 등
  - '21년 10월, 지자체·관계부처 등과의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89개 지역이 지정·고시된 바 있음
- ② 인구감소지역 창업·사업장 이전 기업 등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하는 이유?
- 기업 유치 등을 통하여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 최근 국세도 인구감소지역 이전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한 바 있으며, (7.21. 발표)
    - \* 10년 간 소득세·법인세 100% 감면, 2년 간 50% 감면(광역시 외 인구감소지역)
    - 기존 유사 지방세 감면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면을 설정

- \* 현재 과밀억제권역(산단 제외)에서 지방으로 본점·공장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5년 간 100% 감면, 이후 3년 간 50% 감면) 등 지방세를 면제 증(「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 제80조)

## 2. 산업·물류단지에 대한 지원 연장 (특례법)

- ③ 물류단지 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조례 감면을 추가하는 이유?
  -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물류단지 육성을 지원하고
    - 교통체증, 소음 등 물류단지로 인한 외부불경제 효과를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로서 감면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

## II. 민생안정 지원

### ㉑ 물가 인상 요인 완화

#### 1. 공공요금 안정 지원(특례법)

- ① 한국철도공사 감면 연장 및 SR 감면 신설 이유?
  - 철도요금 및 물류비 인상 요인 등을 완화하여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국철도공사 감면을 연장하고 SR에 대한 감면 신설
    - 또한, SR의 경우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철도사업의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2. 농수산물 가격 안정 지원(특례법)

- ①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및 지방농수산물 공사에 대한 감면 연장 이유?
  - 6.19.일 발표된 「당면 민생 물가안정대책」에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 공사를 통한 농산물 긴급수입 등이 포함되는 등,
    - 해당 공사들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기관임
  - 최근 곡물가 상승 등 고려 시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해당 공사 지방세 지원을 통한 농수산물 수급 활성화 촉진 필요

### ㉒ 서민·취약계층 지원

#### 1. 사회복지시설 감면지원 대상 확대 (특례법)

- ① 사회복지 감면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하는 이유?
- 사회가 복잡·다변화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또한 다양화·세분화 되는 경향
  -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사회복지시설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면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
- ② 사회복지시설 간 감면율을 차등 설계하는 이유?
- 무료 이용시설의 경우 사회보장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다 취약한 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기관\*인 점 등 감안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기관 등
  - 한편, 지자체별 재정 여건 및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공익성 등 고려하여 조례로 취득세·재산세를 최대 50%p 추가 감면 가능하도록 설계

### III.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 Ⅰ 지방세 제도 합리화

##### 1.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지방세법)

- ①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 미처분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이유는?
- 최근 부동산 세제 정상화 취지에 맞게 과도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일시적 2주택자가 처분기한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에 있어 일반적인 조세 운영\*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개선하는 것임
    - \* 일반적으로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을 받은 후 해당 과세물건이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토록 하고,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 없음(법§20③)
    - ※ (사례) 종교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예 공실), 3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

##### 2. 과점주주 등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 명확화 (지방세법)

- ②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지방세법에 별도로 규정하는 이유는?
- 현행 간주취득세에 대한 과점주주의 개념은 「지방세기본법」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으나,
    - 간주취득세 제도와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목적이 달라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 개

념을 「지방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임

### 3. 지방소득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지방세법)

#### ①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의 취지는?

- 지방소득세는 개인과 법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지방세로,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있음
  - 또한,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와 동일한 과세표준구간에 대해 국세의 10% 수준의 세율\*로 부과하고 있음
    - \* (소득세) 6~45% → (개인지방소득세) 0.6~4.5%  
(법인세) 10~25% → (법인지방소득세) 1~2.5%(최고세율은 현행법 기준)
- 정부는 '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법인세 최고세율도 25%에서 22%로 인하할 계획임
  - 서민 세부담을 완화하고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지방소득세도 동일한 폭으로 과표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는 것임

### 4. 담배소비세 과세 및 면세 합리화(지방세법)

#### ① 과세 면제 구체화로 면제 대상이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

- 현행 규정이 담배를 직접 연구하지 않는 시험분석 및 연구에 사용되는 경우(예: 자동차 화재실험에 담배가 사용되는 경우 등)까지 과세가 면제되도록 해석될 여지가 있어 면제 사유를 구체화\*한 것임
  - \* 담배의 품질개선, 신제품개발, 성능인증, 성분분석 등

### 5.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개선 (지방세기본법)

#### ①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개선하는 이유는?

- 상속인이 2인 이상일 때 수유자\*·상속포기자·상속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된 경우뿐만 아니라,
  - 유류분 청구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개정하여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도모
    - \* 유언에 의하여 유증을 받을 자로 정하여진 자
    - \*\* 개별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 / 전체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재산총액 - (상속부채총액 + 상속세액 및 취득세)

## ㉒ 감면제도 개선

### 1. 지자체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자율성 확대 (특례법)

#### ① 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이유?

- 자치분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 지역특화산업 유치 등 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조세 감면 정책이 이루어질 필요
- '20년 결산 기준 조례 감면액이 총 감면액의 약 5.4%에 불과\*한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감면 활용률이 저조함에 따라,
  - \* 총감면액6조2,740억원中 법정감면5조9,353억원(94.6%), 조례감면3,387억원(5.4%)
  - 조례감면 가능 범위를 확대하여 지자체 차원의 지방세 지출 정책 활용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함

### 2.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강화 (특례법)

#### ①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문 필요한 이유?

- 지방세 감면은 법률상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일부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
- 따라서, 당초 감면목적을 위배하는 경우에는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엄격한 사후관리 필요

#### ②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취득 주택 감면 사후관리 강화 배경은?

- 특별공급 제도 등과 관련,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근무지 변경 후 매각하는 사례 등 발생
- 실거주 요건 도입 및 추징 사유 강화 등 사후관리 강화할 필요

#### ③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취득 주택 감면 사후관리 강화 달라지는 점은?

- ' 23. 1. 1.이후부터 이전기관 종사자로서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면,
  - 사망, 혼인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3년 이상 상시 거주 의무 발생
  - 위반 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게 됨

## Ⅳ. 지방세입 인프라 확충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 ㉑ 지방세입 확보 기반 조성

#### 1. 납기전 징수 사유 확대 (징수법)

- ① 강제집행에 따른 납기 전 징수 사유를 개정하는 이유?
  - 국세의 경우, 납기 전 징수사유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등이 시작되거나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모두 규정
  - 반면, 지방세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가 포함되지 않아 납기 전 징수 시점이 국세보다 늦어 지는 문제가 있어 국세와 동일하게 납기 전 징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
- ② 납기 전 징수사유 개정으로 납세자의 불이익은 없는지?
  - 법원의 파산선고 후 파산선고 받은 자의 남은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는데
    - 자치단체가 납기전 징수사유로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음
  - 납기전 징수를 통해 지방세 채권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파산된 체납자의 남은 재산을 모두 청산한 후에도 지방세 체납액으로 남아있을 수 있음
    - 따라서 납기 전 징수사유 개정으로 지방세체납액을 우선 변제하는 것이 체납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
    - ※ 청산 후 다른 부채 등은 탕감될 수 있으나 지방세 체납액은 감액되지 않음

#### 2. 세무조사 개시 절차의 개선 (기본법)

- ③ 세무조사 개시 절차를 개선하는 이유는?
  - 천재지변이나 화재·질병 등의 사유로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 중으로,
    - 연기신청 사유가 소멸하거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토록 개정하여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도모

#### 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의무제출 기관 확대 (부과금법)

- ④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의무제출 기관 확대 이유?

-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만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토록 함에 따라,
  - 국가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려는 자는 납부증명서 제출의무가 없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있더라도 대금 수령이 가능함
    -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모두 제출
- 국가 및 정부관리기관에서 대금을 받는 경우에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토록 확대하여,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세입 확보 기반 조성에 기여

## ㉒ 납세자 권리 및 편의 제고

### 1. 지방세 불복 청구대상 확대 (기본법)

- ① 지방세 불복 청구대상을 확대하는 이유는?
  - 지방세 불복청구 대상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처분 당사자’ 외에도 ‘이해관계인’을 추가하고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납부통지서를 받은 제2차 납세의무자, 물적납세의무자, 보증인을 포함토록 개정하여 납세자 권익 신장

### 2.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 (기본법)

- ②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확대하는 이유는?
  - 과세표준·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가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토록 정하고 있음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판결 외에도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결정으로 확대함으로써 납세자 권익 신장

### 3. 지방세 납부수단 다양화 (징수법)

- ③ 직불카드와 통신과금서비스를 지방세 납부방법으로 추가한 이유?
  - 직불카드의 경우 현재도 위택스, 은행 ATM기, 자치단체 방문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 일부 자치단체(경기, 부산 등)에서 납부편의 시책의 하나로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해 지방세 납부를 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서 보완하고자 함.

④ 현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수단의 종류는?

- 현금(계좌이체 포함), 신용카드, 증권\*으로 납부가 가능함  
\*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수표, 우편소액환증서 등

⑤ 납부수단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수단\*(간편결제)을 추가할 계획은 있는지?

- \*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등
- 전자지급수단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납부수단 확충으로 납세편의를 제고할 필요성에 공감
- 결제수수료, 이용금액 한도 등의 문제와 선불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예탁금 문제 등을 신중히 검토한 이후, 안정성 확보를 거쳐 추진할 계획임

#### 4.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지방세법)

①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 국세인 소득세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나,
  - 개인지방소득세는 분할납부가 허용되지 않아 납세자 불편을 초래
- 개인지방소득세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세와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

②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 한하여 분할납부를 도입하는 이유는?

-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양도소득세·법인세)보다 신고·납부 기한\*이 길어 납세자 부담이 적은 반면,
  - \*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2개월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납부기한 +1개월
-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기간(5.1.~5.31.)이 소득세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세와 달리 분할납부 제도가 없어, 일시 납부에 따른 납세자의 실질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



#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

- 중소벤처기업부 -

## I. 수립배경 및 경과

-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국가경제의 저변을 지탱하는 중요한 주체이나, 최근 매출감소, 부채증가 등 경영난 직면
  - \* '20 소상공인 실태조사(중기부) : 사업체당 연평균 매출, 영업이익 모두 전년대비 감소 (4.5%↓, 43.1%↓), 총부채는 상승(19.3%↑)
- 이에 새정부는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을 수립(' 22.4)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국정과제 1번으로 제시(' 22.5)
  -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전문가 분석과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금번 대책을 수립
    - \* 중기부-행안부 공동 대국민 '소상공인 살리기 열린소통포럼' 개최('22.5), 업계 및 전문가 의견청취·현장방문 등 20여회('22.5~8) 등

## II. 최근 소상공인 경영환경 진단

◇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과 구조적 체질변화를 이루어내는 데에는 아직 미흡한 가운데, 새로운 도전에 직면

- ㉠ (위기 중첩)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영업자 부채규모가 지속 상승하는 와중에 3高(금리·물

가·환율) 위기 등장

- \* 자영업자 대출잔액(조원, 한은) : ('17) 549.2 → ('19) 684.9 → ('21) 909.2 → ('22.3) 960.7
- 거리두기 전면해제('22.4.18)에 따라 내수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일시 반등했으나, 소비심리 위축과 함께 다시 하락세 전환
  - \* 소비자 심리지수(한은) : ('22.2) 103.1 → ('22.4) 103.8 → ('22.6) 96.4 → ('22.7) 86.0
  - \*\* 소상공인 체감 BSI(소진공) : ('22.2) 37.5 → ('22.4) 76.4 → ('22.6) 65.3 → ('22.7) 53.8
  - 소상공인 전망 BSI(소진공) : ('22.3) 83.3 → ('22.5) 101.0 → ('22.7) 74.6 → ('22.8) 70.0

② (디지털 전환 가속화) 온라인 소비가 늘어나고 AI·빅데이터 등 스마트기술이 경영과 접목되고 있으나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대응은 부족

- \* 소매판매액중 온라인 비중(통계청) : ('17) 16.4% → ('19) 21.4% → ('21) 27.5% → ('22.6) 26.5%
- 디지털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나 활용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며, 스마트오더 등 비용이 저렴하고 접근이 쉬운 분야 위주로 도입
  - \* '21 소상공인 디지털 실태조사(소진공) : (수요) 65.3%(35.6%p↑), (실행) 18.4%(3.0%p↑)

③ (과밀속 도전형 창업 증가) 소상공인 과밀경쟁은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나 아직은 주요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

- \* 자영업 비중(OECD, 통계청) : ('01) 28.1% → ('21) 23.9% / OECD 중 5위(잠정치)
- (창업) 40~50대 생계형 창업보다 20~30대 기회도전형 창업이 증가 추세, 다만 준비기간이 짧거나 창업전략이 부실한 경우 성장정체 우려
- (폐업) 자영업 진입 후 퇴장하고 싶어도 영업을 이어가는 경우 다수
  - \* 자영업 1년 이상 유지비중이 대체로 90%를 넘으며 연령과 함께 증가('20.12, KDI)

④ (소비트렌드 변화) 소비방식이 경험·가치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의 역할(구매 → 체험)이 바뀌고 로코노미 현상 등장

- \* 로코노미 : Local과 Economy의 합성어, 거대 상권보다 동네소비 생활이 활성화
- \*\* '19~22년 신한카드 가맹점 상호명 분석 결과 지역명이 들어간 점포가 증가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
- 이러한 소비트렌드를 감안한 새로운 성장모델 고민 필요

〈로컬브랜드 성장모델〉

- ◇ (앵커스토어) 지역의 차별화된 생산·소비 가치에 집중, 지역을 견인하는 거점브랜드로 성장(예 : 성심당, 칠성조선소, 백년가게 등)
- ◇ (전국/글로벌) 다수의 생산 판매 거점 등을 활용, 전국·글로벌로 영역을 확장하여 기업형 브랜드로 성장(예 : 제주맥주, 테라로사, 지평막걸리)

### III. 세부 추진방안

#### 1) (전략1) 코로나19·3高 충격 긴급대응플랜 추진

- ① (선제적·종합적 재기지원) 소상공인의 빠른 재기를 위해 유관기관간 분산된 폐업-채무조정-재도전 지원을 통합 패키지화(' 22.10~)
  - 폐업자 대상 철거비지원, 심리치유·컨설팅, 법률자문 대폭 확대
    - \* 철거비 한도 3.3㎡당 8 → 13만원, 컨설팅 8,000 → 12,000건, 법률자문 1,000 → 1,500건
  - ' 22.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후 30조원 규모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시행 및 연착륙 지원
  - 유관기관 합동 재기지원 협의체 구성, 재기지원 패스트트랙 확대
    - \* 패스트트랙 연계사업(예시) :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 경영교육·컨설팅, 정책자금,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온라인 판로 지원 등
- ② (촉촉한 사회안전망 구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확대\*·복지지원 강화
  - \*\*를 통해 경영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 제공(' 23~)
    - \* '21년말 누적가입자 220.4만명, 재적 154.2만명 → '27년 재적 250만명 달성 추진
  - \*\* 복지사업 근거 마련(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적금·융자 등 금융사업, 경영지원, 복지사업 확대
  - 폭우 등 재해에 사전진단·대비하고 피해발생시 즉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매뉴얼 마련·원스톱 이동지원센터 운영(' 22.8~, 중기부)
- ③ (저금리대출 등 경영부담 완화) 신규·대환자금 약 58조원 공급, 기존 초저금리 대출 한도(1천만원 → 2~3천만원) 및 대상확대\*(~' 22)
  - \* (희망대출플러스) 방역지원금 수령 소상공인 → 손실보전금 수령 소상공인 추가
  - 소상공인 대상 침익적 처분 유예기간 도입, 감경기준 정비 등 추진(' 23)
    - \* (예시)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제재시 영업자의 규모 및 영세성 등을 고려한 감경사유 추가, 최대 감경기준 삭제 또는 범위확대 등

- ④ (대규모 소비축제 개최) 비대면 위주로 개최된 소비행사를 대면 전환하고 年 5회 이상 개최, 전국적 소비 분위기 확산(' 22.8~)
  - \* 7일간의 동행축제(9월),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 및 우수시장 박람회(8~9월),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 크리스마스 마켓(12월) 등

## 2) (전략2) 스마트·디지털 기반 소상공인 경영혁신

- ① (빅데이터 기반 정보 제공·신사업 창출) 실시간 매출 등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하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23~)
  - 이를 기반으로 소상공인에게 앱을 통해 유용한 창업·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구축된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신사업 창출
- ② (스마트·온라인 진출 지원)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도입 로드맵을 제시\*하고 소상공인-디지털 기획자 매칭을 통해 전략기획 지원(' 23~)
  - \* (예시) 식당 : 테이블오더(또는 키오스크) + 서빙로봇 + AI고객관리서비스 등
  - ' 27년까지 스마트상점·공방 7만개 보급 및 'e커머스 소상공인' 매년 10만명 양성, 스마트화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스마트공장 연계(' 22.8~)
- ③ (전통시장 디지털화) 배송인프라 구축 등 온라인 매출 증대 유도,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도입·스마트결제 인프라 구축 지원(22.8~)

## 3) (전략3)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① (확인기준 개편) 소상공인이 성장을 회피하지 않고 고용창출에 적극 나서도록 소상공인 기준 \*을 매출액으로 단일화(~' 23, 소상공인기본법 개정)
  - \* (매출액) 소기업 기준과 동일 (업종별로 연 평균매출액 10억원~120억원)  
(상시근로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기타 업종 : 5명 미만
- ② (혁신창업 교육) 준비된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선배기업·엑셀러레이터 등을 활용한 현장형 교육훈련 실시(' 23~)
- ③ (소상공인 스케일업) 소상공인 정책을 보호에서 육성으로 전환, 체계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시스템 마련(' 23~)
  - 단계별 경쟁·피칭 방식으로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 융합 팀빌딩·사업화·자금 등 집중지원, IP출원·보호·활용 등 IP브랜딩 지원
  - 클라우드펀딩, 민간투자자 매칭용자 등 소상공인에 적합한 방식의 투자모델 도입 추진

#### 4) (전략4) 민간 협업을 통한 행복한 로컬상권 조성

- ① (로컬브랜딩·골목산업화 추진) 로컬 크리에이터가 로컬브랜드로 더 빠르게 성장하고, 상권발전을 견인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23~)
- 사람들의 방문·구매·투자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동네상권에 문화와 이야기를 입히는 로컬상권 브랜딩 지원
    - \* 예시 : 인천 개항로 프로젝트, 강릉 커피거리, 양양 서피비치, 대전 성심당스트리트 등
    - 오프라인은 경험·체험소비가 일어나는 '즐기는 공간'으로 만들고, 온라인·유통물류 인프라와 연계하여 지역 제품의 전국확산 추진
  - 지역가치 창업가 '로컬크리에이터'의 '로컬브랜드' 도약\*을 촉진하고 이와 밀접한 소규모 제조업 등을 육성하여 '골목길 벤처밸리' 조성
    - \* (예비·창업) 사업화자금 1~3천만원 → (도약) 최대 1억원 추가지원, 전국유통, 투융자유치, 선배기업 협업 등
    - \*\* (강릉 사례) 테라로사, 보헤미안 등 커피문화 확산 → 커피 재배, 커피거리 축제·스테이 등 연관산업 결합 → 커피가공 및 커피찌꺼기 업사이클링 제조업 확장
- ② (상권기획자·상권발전기금 도입) 골목상권 공간 재구성, 소상공인 보육 등을 전문기획하여 상권발전을 도모하는 상권기획자\* 도입('23)
- \* (역할·의무) 상권발전방안 기획, 상인조직 대상 자문 및 상권발전기금 운영 대행, 상가 등 공간 재구성, 유망 소상공인 보육, 적정 임차료/장기임대 등
  - 상권 주체들이 상권발전사업\* 재원조달을 위해 자율적으로 상권 발전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 검토('23)
    - \* 사업 예시 : 빈점포매입·장기임대, 지역 앵커스토어 육성, 자체 유통물류망 구축 등
- ③ (로컬상권 혁신 인프라 구축) 읍면동 단위로 소상공인·혁신가·주민 등이 참여,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조성 추진('23~)
- \* (민간·기초지자체) 소규모 상권활성화 사업 기획·추진, (정부) 사업비 지원, 유희시설 제공
  - 골목상권 도소매 자영업자의 성장을 위해 로컬상권 유통 인프라 3축\* 혁신 및 온라인·디지털 기반 중소유통 플랫폼 보급·확산
    - \* ① 디지털통합물류시스템 - ② 허브형 중소유통물류센터 - ③ 동네단위 유통망

## I. 수립배경 및 경과

- (중요성)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기업성장 사다리의 출발점이자 일자리 안전망으로서 국가경제

의 저변을 지탱하는 중요한 주체

- 소상공인은 684만개사로 전체 기업의 94%, 종사자의 44%(946만명), 매출액의 17%(969조원) 차지('20년 기준, 중기부·통계청)
  - 자영업자는 571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0% 수준('22.6월 기준, 통계청)
- (현황) 그러나 최근 매출감소, 부채증가 등 경영난을 겪으며 영세성 심화
- \* '20 소상공인 실태조사(중기부) : 사업체당 연평균 매출, 영업이익 모두 전년대비 감소 (4.5%↓, 43.1%↓), 총부채는 상승(19.3%↑)
  - 저소득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근로자와의 소득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적절한 정책대응이 필요한 상황
  - \* '19년 대비 '21년 자영업자 가구 중 저소득층이 증가(2.9만, 1.3%p↑)하고 고소득층 (3.3만, 0.8%p↓)과 중산층(5.4만, 0.5%p↓)은 감소(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재가공)
  - \*\* 근로자-자영업자 월평균 소득격차(통계청 재가공) : ('19) 531천원 → ('21) 694천원

- (경과) 이에 새정부는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을 수립('22.4)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국정과제 1번으로 제시('22.5)
-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은 온전한 손실보상, 맞춤형 금융지원, 경영부담 완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디지털 전환, 민간 주도 상권활력 회복
  -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전문가 분석과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금번 대책을 수립
  - \* 중기부-행안부 공동 대국민 '소상공인 살리기 열린소통포럼' 개최('22.5), 업계 및 전문가 의견청취·현장방문 20여회('22.5~8) 등

⇒ 일상회복에 발맞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기업생태계의 당당한 일원으로 다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총력 지원

## II. 소상공인 경영환경 및 대응방향

### 1) 코로나19 충격에 이은 3高 위기

- (코로나19 충격) 지난 2년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조치로 음식·서비스 등 대면 업종의 매출이 감소하고 부채 급증
- (3高 위기) 기준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급등 및 환율 불안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소비심리 위축·수익성 악화 등 우려
- 거리두기 전면해제('22.4.18)로 내수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일시 반등했으나, 소비심리 위

축과 함께 다시 하락세 전환

- \* 소비자 심리지수(한은) : ('22.2) 103.1 → ('22.4) 103.8 → ('22.6) 96.4 → ('22.7) 86.0
- \*\* 소상공인 체감 BSI(소진공) : ('22.2) 37.5 → ('22.4) 76.4 → ('22.6) 65.3 → ('22.7) 53.8
- 소상공인 전망 BSI(소진공) : ('22.3) 83.3 → ('22.5) 101.0 → ('22.7) 74.6 → ('22.8) 70.0

⇒ (대응방향) 선제적 재기지원·채무조정과 저리대출·전국적 소비촉제 등을 추진하여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

2) 디지털 전환 가속

- (스마트·온라인 확산) 온라인 소비가 늘어나고 AI·빅데이터 등 스마트기술이 경영과 접목되고 있으나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대응은 부족
  - \* 소매판매액中 온라인 비중(통계청) : ('17) 16.4% → ('19) 21.4% → ('21) 27.5% → ('22.6) 26.5%
  - 디지털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나 활용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며, 스마트오더 등 비용이 저렴하고 접근이 쉬운 분야 위주로 도입
    - \* '21 소상공인 디지털 실태조사(소진공) : (수요) 65.3%(35.6%p ↑), (실행) 18.4%(3.0%p ↑)
- (상생이슈 부각) 온라인 플랫폼 입점·이용이 늘어나면서 플랫폼·입점업체간 상생의 중요성도 지속적으로 강조
  - \* '21 온라인 플랫폼 실태조사(중기부) : 플랫폼 이용업체 중 74%가 매출액의 절반 이상이 플랫폼을 통해 발생, 플랫폼 없이는 영업 곤란 59%
  - 벤처·스타트업이 성장하면서 소상공인도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상생모델 발굴 필요

⇒ (대응방향) 스마트·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혁신을 지원하고 벤처·스타트업-소상공인 상생협력 확산

3) 과밀경쟁 속 도전형 창업 증가

- (여전한 과밀경쟁) 소상공인 과밀경쟁은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은 주요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
  - \* 자영업 비중(OECD, 통계청) : ('01) 28.1% → ('21) 23.9% / OECD 중 5위(잠정치)
  - 자영업 진입 후 퇴장하고 싶어도 영업을 이어가는 경우 다수
    - \* 자영업 1년 이상 유지비중이 대체로 90%를 넘으며 연령과 함께 증가('20.12, KDI)

- (도전형 창업 증가) 40~50대 생계형 창업보다는 20~30대의 기회 도전형 창업이 증가하는 추세
  - 다만 준비기간이 짧거나 창업전략이 부실한 경우 성장이 정체될 우려

⇒ (대응방향) 준비된 창업과 재취업 지원을 통해 과밀을 줄여나가고,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시스템 구축

#### 4) 경험소비·로코노미 등 소비트렌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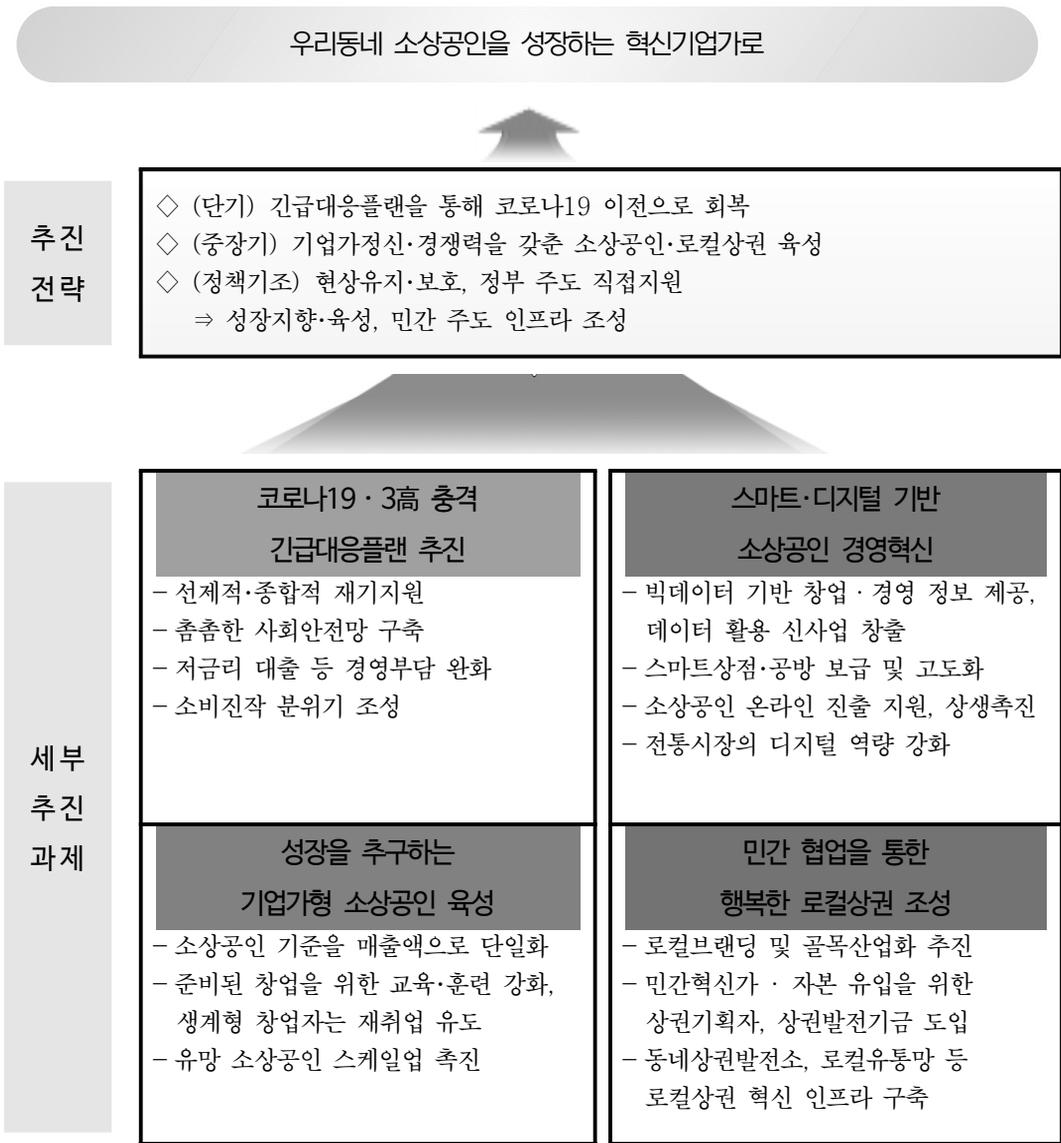
- (소비트렌드 변화) 소비방식이 경험·가치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의 역할이 구매에서 체험으로 변화
  - \* 예 : 온라인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경험욕구를 채워주는 경험소비, 자신에게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소비하는 디깅소비, ESG를 고려하는 가치소비 등
- (로코노미 등장) 지역의 창의적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로컬브랜드’로 성장하고, 이들이 집적된 동네상권이 활성화되는 성공사례 부각
  - \* 로코노미(Local + Economy) : 거대 상권보다 동네소비 생활이 활성화되는 현상
  - \*\* ‘19~22년 신한카드 가맹점 상호명 중 지역명이 들어간 점포가 증가(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

#### 〈 ‘로컬브랜드’ 성장모델 〉

- ◇ (앵커스토어) 지역의 차별화된 생산·소비 가치에 집중, 지역을 견인하는 거점브랜드로 성장 (예 : 성심당, 칠성조선소, 백년가게 등)
- ◇ (전국/글로벌) 다수의 생산 판매 거점 등을 활용, 전국·글로벌로 영역을 확장하여 기업형 브랜드로 성장(예 : 제주맥주, 테라로사, 지평막걸리)

- 다만 이러한 자연발생적인 사례들은 빠르고 충실하게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다시 쇠퇴하는 경우도 발생
- ⇒ (대응방향) 로컬브랜드 성공사례를 가속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골목상권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Ⅲ. 정책비전 및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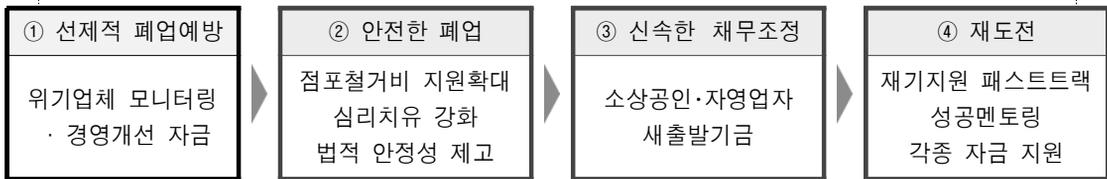
## IV. 세부 추진방안

### 전략1. 코로나19 · 3高 충격 긴급대응플랜 추진

◇ 코로나19 및 3高 충격 대응을 위해 재기지원·채무조정·안전망 확충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비용 경감·매출증대 병행

#### 1) 선제적·종합적 재기지원

##### 재기지원 단계



##### 연장의 목소리

▪ 사업을 접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도 높은 폐업비용(' 21년 평균 1,699만원), 기존 부채 상환부담, 폐업자 대출 제한으로 재도전이 불가능하여 연명하는 경우가 다수

- (선제적 폐업예방) 정부·민간데이터\*를 결합 분석하여 폐업 소상공인 통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위기업체 모니터링(' 22.10~, 중기부)
  - \* 재난지원금 · 손실보상 DB(중기부), 폐업 개인사업자 DB(국세청), 기업통계등록부(통계청), 카드데이터(카드가맹사업자) 등
  - 위기업체에는 전문가의 객관적 진단을 토대로 개선전략 수립과 경영개선자금(2천만원)을 연계, 조기 위기탈출 지원(' 22. 1,200명)
- (안전한 폐업) 철거비 지원, 심리치유·컨설팅, 법률자문 등을 대폭 확대하여 폐업시 재무적·심리적·법적부담 최소화(' 23, 중기부)
  -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부담 완화를 위해 점포철거비 지원단가 상향
    - \* 3.3㎡당 8 → 13만원(총 250만원 한도) [예: 면적 66㎡의 경우 160만원 → 250만원]
  - 사업정리 컨설팅\*을 확대(8,000 → 12,000건)하고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 마인드 함양 등 심리치유도 추가 지원
    - \* 폐업신고, 세무, 부동산, 집기시설 처분, 사업장 양수도 등 행정절차 상담 위주
  - 폐업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법적분쟁으로부터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는 법률자문 서비스 확대(1,000 → 1,500건)
    - \* 임대차, 신용, 노무, 프랜차이즈, 세무, 금융 등 1:1 변호사 매칭 상담 지원

- (신속한 채무조정) ' 22.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후 30조원 규모 '(가칭)새출발 기금' 시행(' 22.9월말부터 1년간, 최대 3년 운영, 금융위)
  -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과 달리 신용 외 담보·보증대출, 연체 미발생 부실우려 채권까지 종합적·선제적 지원
  - 채무조정 신청시 추심중단, 장기분할상환(예: 10~20년) 방식 상환일정 변경, 대출금리 감면, 원금조정\* 등 실시
    - \* 재산 초과 부실 신용채무에 한해 60~80% 원금조정(취약계층 최대 90%)
  
- (재기지원 종합 패키지) 빠른 재기를 위해 유관기관간 분산된 폐업-채무조정-재도전 지원을 통합 패키지화(' 22.10~, 중기부·금융위)
  - 유관기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폐업 또는 채무조정자에 대해 상호 정보공유·재기지원 패스트트랙 확대
    - \* 패스트트랙 연계기관 : 소진공-신복위-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 캠프, 지역신보 등 추가
    - \*\* 패스트트랙 연계사업(예시) :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 경영교육·컨설팅, 정책자금,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온라인 판로 지원 등
  - 성공적인 재기를 위해 선배기업의 노하우를 배우는 '성공멘토링' 을 지원(' 22.下, 500명)하고, 각종 자금도 연계
    - 파산·회생 등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재창업자 전용보증 1조원 신설, 브릿지 보증 대상확대\*
    - \* '보증만기가 6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폐업자의 보증만기시 개인보증 전환 → 모든 폐업자 보증만기시 개인보증 전환(보증만기 6개월 이내 도래 조건 삭제)
    - 교육·멘토링을 마친 유망분야 재창업자에 사업화자금 2천만원 지원

## 2)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 현장의 목소리

■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다시 오더라도 미리 자영업자에 대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대규모 정부지원 없이도 헤쳐나갈 필요

- (노란우산공제 강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확대·복지 강화를 통해 경영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 제공(' 23, 중기부·기재부)
  - (복지지원 강화) 복지사업 근거를 마련(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하고 적금·융자 등 금융사업, 경영지원사업, 복지사업 확대
    - \* 경영지원사업 예시 : 경영·노무·법률컨설팅, 재기지원교육, 안전관리·손해배상 등
    - 복지사업 예시 : 힐링센터, 관광·숙박 서비스, 문화·여가, 심리상담 등
  - (특별해지사유 추가) 감염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해 특별해지사유

에 감염병 재난 포함(조특법 시행령 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기타소득세(15%)가 아닌 퇴직소득세 부과

- (가입자 확대)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22), 지자체 협력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노란우산 공제 가입 유도

\* '21년말 누적가입자 220.4만명, 재적 154.2만명 → '27년 재적 250만명 달성 추진

- (고용보험 가입지원 확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개선(' 22.8,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

- (재해대응) 전통시장·상점가에서 폭우 등 재해에 사전진단·대비하고 피해발생시 즉시 복구 가 이뤄지도록 매뉴얼 마련(' 22.8~, 중기부)

- 신속한 복구를 위한 윈스톱 이동지원센터 설치·통합지원 체계 정비

< 통합지원 주요내용 >

- ①(피해복구) 시장당 긴급복구비 최대 1천만원 지원, 전자제품 수리, 인력협조, 지원사업 우대 등
- ②(금융지원) 상인당 정책자금 최대 2억원 지원, 노란우산공제 부금납부 6개월 유예
- ③(활력회복·재발방지) 공동마케팅, 안전점검, 풍수해보험 가입 유도(가점부여) 등

3) 저금리 대출 등 경영부담 완화

- (맞춤형 자금지원)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8조원 규모 신규·대환자금을 공급하고 기존 초저금리 대출 개선(~' 22, 중기부·금융위)

- 대환자금 8.7조원으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신규자금 49조원은 정상영업 회복 또는 재창업 수요에 활용

- 초저금리 대출·중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 초저금리 대출의 경우 한도도 상향(1천만원 → 2~3천만원)

\* (초저금리 대출) 방역지원금 수령 소상공인 → 손실보전금 수령 소상공인 추가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방역지원금 수급 중저신용자 → 모든 중저신용자

- (제재처분 정비)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대한 처분 유예기간 도입, 감경기준 정비\* 등 법령 개정을 통한 영업정상화 지원(' 23, 법제처)

\* (예시)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제재시 영업자의 규모 및 영세성 등을 고려한 감경사유 추가, 최대 감경기준 삭제 또는 범위확대 등

- (세금·공공요금 부담경감) 세액공제 확대, 세정지원 강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세금·공공요금 부담 완화(기재부 등)
  -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10%p 상향, 기호식품 수입품·단순가공식료품 부가세 한시면제(∼’ 23), 식품원료 0% 할당관세 확대(∼’ 22)
    - \* 면세 재화인 농산물 매입시, 매입액의 일부를 부가가치세 납부시 공제
  -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국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납세담보 면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등 실시(∼’ 22)
    -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대상) ▲고용보험: 3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사업장
  
- (원료비 지원) 밀가루 가격 상승분 지원(정부 70%, 제분업체 20%), 원료매입·식자재 구매용자 확대 및 적용금리 인하(∼’ 22, 농림부)
  - \* (지원한도) 업체당 최대 6억원(외식업)/50억원(가공업), (금리) 2.0~2.5% → 1.5~2.0%
  
- (임대료 감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연장(‘ 22→’ 23, 조특법 개정)하고, 소상공인에 국유재산 등 임대료 감면 6개월 연장(∼’ 22, 기재부)
  - \* (국유재산) 재산가액의 3→1% (공공기관 소유재산) 기존 임대료의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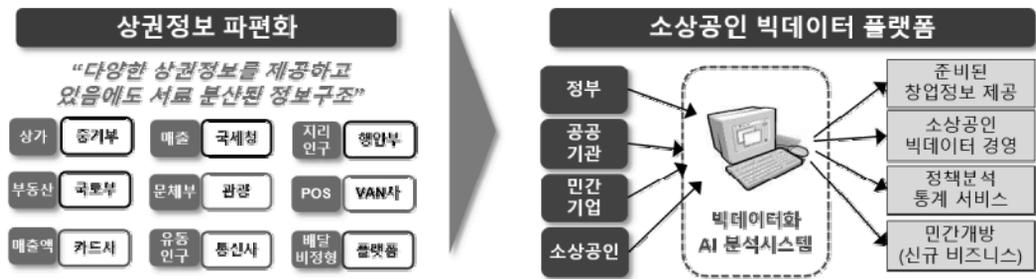
#### 4) 소비진작 분위기 조성을 통한 매출증대 유도

- (대규모 소비촉제) 비대면 위주로 개최된 소비행사를 대면 전환하고 年 5회 이상 개최, 전국적 소비 분위기 확산(‘ 22.8~, 중기부·산업부·농림부)
  - 역대 최대규모(6,000개사+@)의 ‘7일간의 동행축제\*’ (9월), 전국민 쇼핑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 (11월), ‘크리스마스마켓’ (12월) 개최
    - \* 상생소비 캠페인, 최대 80% 각종 할인쿠폰 발행, 제로페이 5~10%페이백 등
  - 라이브커머스 특별판매전, 민간 온라인 쇼핑몰 전용기획전 개설,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 (8~9월) 등 온라인 행사도 병행 추진
  -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대상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한도·할인률 우대(2→3(농축산)~4(수산)만원, 20→30%)
  
- (온누리상품권 할인) 추석 등 소비시즌 대상 1인당 온누리상품권 할인구매 한도 확대를 통해 전통시장·상점가 소비촉진(‘ 22.9, 중기부)

구 분	개인별 월 할인구매 한도		할인율
	기존	변경	
지류형 상품권	50만원	70만원	5%
모바일 상품권	70만원	100만원	10%
카드형 상품권	신규 도입	100만원	10%

◇ 스마트·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고, 상생협력을 통한 디지털 전환 촉진

1)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한 정보 제공·신사업 창출



※ 디지털플랫폼정부 선도 프로젝트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

□ (빅데이터 구축) 실시간 매출·상시근로자수 등 분산된 상권 정보를 빅데이터화하기 위해 자료제공 법적근거 마련(' 23, 소상공인법 개정)

\* (현재) 200만개 사업체, 11종 DB → (개선) 600만개 이상 사업체, 20종 이상 DB

○ 민간기업·플랫폼 등과 함께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간·공공DB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의사결정 투명성 제고

□ (대국민 서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소상공인에게 앱을 통해 창업·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정책제언 등 쌍방향 소통(' 23~, 중기부)

○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경영 서비스·신규 비즈니스가 창출되도록 구축된 빅데이터의 민간개방 추진

\* 예시 : 원천데이터를 지정장소에서 개방하여 직접 가공·활용, 또는 민간이 원하는 다양한 2차 가공데이터를 정부가 생산·제공 등

## 2) 스마트상점·공방 보급 및 고도화

- (스마트 전략기획 지원) 업종별·고도화 단계별 적합한 스마트기술 조합(모델)을 개발, 도입 시 활용 가능한 로드맵으로 제시('23~, 중기부)
  - \* (예시) 식당 : 테이블오더(또는 키오스크) + 서빙로봇 + AI고객관리서비스 등
  - 소상공인(상권)과 전문가(전문기관)를 매칭하여 수준진단 및 특성\*에 맞는 스마트기기 도입 전략 수립 지원
    - \* ①상권(대학가, 시장 등) 특성, 개별 매장의 ②매장매출 규모, ③업종, ④연령 등
- (빅데이터 구축·지원) 스마트상점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표준화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구축방안 검토('23, 중기부)
  - POS사, 공급기업 등과 함께 스마트상점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표준화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민관 공동 협의체 구성
  - 구축된 빅데이터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 과 연계하고, 수요가 있는 공급기업 등 민간에 제공하여 신기술 개발 등 활용
- (스마트상점·공방 확산) 스마트상점·공방 보급을 본격 추진('21. 1.8만개 → '27. 7만개)하고 도입성고가 우수한 기업에는 고도화 연계\*(중기부)
  - \* 스마트기술 추가도입, 스마트공장 구축시 가점 우대, 정책자금·판로지원 등
  - 스마트공방 상호 간에 공동 활용이 가능한 솔루션 보급
    - \* (예시) 1)자재관리, 수발주, 납품 등의 제조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제조관리 시스템 구축, 2)공동활용 장비의 스마트화 등
- (공급기술 고도화) '공급기업 피칭대회\*' 개최, 공급기업 평가기준\*\* 강화 등 수요 기반의 검증된 스마트기술 발굴(~'23, 중기부)
  - \* 수요자(소상공인)와 디지털 기획자 등이 함께 참여·평가
  - \*\* (예시) TIPS 선정 여부, VC 투자유치 여부, 벤처기업 인증 등 우수성 입증 반영
  - 공급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실증('23~'25. 100개 과제) 및 '스마트 기술 공급기업-VC' 투자 매칭 IR 추진

## 3)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상생협력 촉진



- 소상공인들은 개별적으로 온라인에 진출할 여력이 없음, 자영업자들과 온라인 플랫폼간 상호 이익이 되도록 선도적으로 상생협력 사례를 만들 필요

- (온라인 진출 지원) 민관 협업을 통해 온라인 역량강화·입점지원·인프라구축 등 ‘e커머스 소상공인’ 年 10만명 양성(’ 22~’ 27, 중기부)

온라인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온라인 판매 이커닝 교육, 대학을 활용한 실습 및 대면 교육</li> <li>◆ (상품성 개선) 상품성 진단, 소비자 선호조사, 디자인 개선 등 지원</li> <li>◆ (전담셀러) 유통 전문가 매칭, 판매 기획, 홍보 등을 일괄 지원</li> <li>◆ (홍보광고) 소상공인 제품 광고 콘텐츠 제작 및 SNS 홍보 지원</li> </ul>
입점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V홈쇼핑·온라인쇼핑몰·해외몰 입점, 라이브커머스 제작, O2O 플랫폼(배달앱 등) 활용지원, 구독경제관 운영 등</li> </ul>
인프라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래그십 스토어 등 스튜디오 및 촬영 장비, 교육장 등을 갖추고 소상공인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오프라인 인프라 구축·운영</li> </ul>

- 메타버스몰\*, 구독경제, 버티컬커머스\*\* 등 신시장 진출방안도 마련(’ 23)
  - \* 메타버스 민간플랫폼 내 가상점포를 구축하여 소상공인 상품 주문·배송 가능
  - \*\* 식품, 패션, 인테리어 등 특정 카테고리의 제품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플랫폼
- (상생협력 문화 확산) 온라인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상생협력 문화 확산(’ 22.下~, 중기부)
  - 빅테크, 플랫폼 등 벤처가 소상공인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하여 상생문화를 확산하는 ‘함께성장하는 대한민국’ 프로젝트 추진
  -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에 대한 자발적 수요가 있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과 민·관 협업방안 논의 등 추진
- (배달플랫폼 상생 촉진) 영세 소상공인 등의 부담 완화방안을 검토·제시하고, 온라인 경영역량 강화 지원 등 상생모델 마련(’ 22.下, 중기부)
  - 배달플랫폼 실태조사·사례연구\*를 바탕으로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방안 도출
    - \* 소상공인·소비자 대상 수수료·배달비 현황, 적정가격 인식 등 조사, 해외 배달플랫폼, 타 업종(홈쇼핑 등) 수수료 등 다각적 검토

#### 4) 전통시장의 디지털 역량 강화

- (온라인 배송 지원) 배송인프라 구축, 전담인력 지원, 온라인 활용 교육을 통해 전통시장의 온라인 매출 비중 증대(’ 22.下~, 중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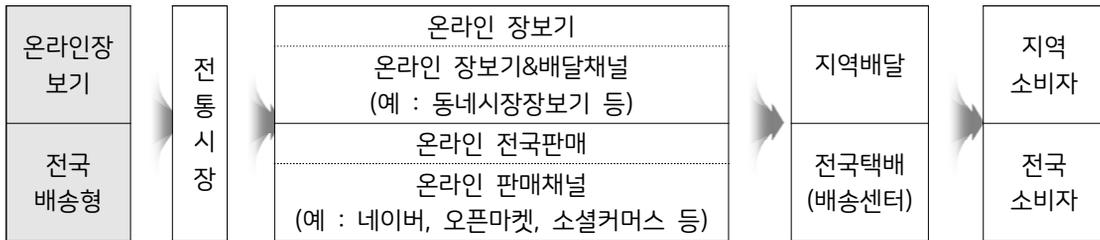
▪ 코로나19에도 온라인을 적극 활용한 전통시장은 매출이 증대, 전통시장 고객들이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 필요

- 냉동·냉장 설비를 보유한 공동배송센터를 신규 구축하고, 배송인프라(배송인력, 차량보험료,

유류비 등) 유지 지원

- 전담인력 지원 하에 온라인 입점·고객관리·마케팅 등 실시
- 전통시장 상인회·상인 대상으로 O2O플랫폼 입점, SNS 활용방법 등 디지털 전환 맞춤형 교육 실시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유형〉



□ (상생형 온라인 진출) 대기업의 디지털 플랫폼, 물류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전통시장·상점가의 온라인 진출 지원(' 22.9~, 중기부·동반위)

- 기업별 상생협약 체결·시범운영(' 22년 4분기), ' 23년부터는 유사한 상생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기업들로 확산 추진

\* '22.6 카카오-신영시장간 협약, '22년 4분기중 2~3개 사례 추가 협약 예정

□ (결제 편의성 제고)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도입(' 22.8), 모바일·카드 온누리 비중 상향(' 22.44% → ' 27.85%) 등 추진(중기부)

- 무선복합결제단말기 보급 등 스마트 결제 인프라도 구축(' 22. 7.5천개)

현장의  
목소리

▪ 전통시장 등 방문시 소득공제 등 받아야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정확하게 결제내역이 남으면서도 편리하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했으면 함

전략2.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소상공인 정책을 보호에서 육성으로 전환, 기업가정신을 가진 소상공인의 성장을 촉진하고 생계형 창업자는 재취업 유도

1)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액으로 단일화

□ (확인기준 개편) 소상공인이 성장을 회피하지 않고 고용창출에 적극 나서도록 소상공인 기준

\*을 매출액으로 단일화(~' 23, 소상공인기본법 개정)

\* (매출액) 소기업 기준과 동일 (업종별로 연 평균매출액 10억원~120억원)  
(상시근로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기타 업종 : 5명 미만

**현장의 목소리**

▪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 상황에서도 6인 고용을 유지한 A사는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대상에서 제외

- 소기업 매출액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 매출액 구간을 별도로 설정
- 업종별 소기업 매출 차이(음식점업 10억원, 제조업 등 50~120억원), 기존 소상공인 분포, 업계의견 등을 고려 업종별 세부기준 마련

## 2) 준비된 창업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생계형 창업자는 재취업 유도

**현장의 목소리**

▪ 지원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알려줘야 함 제대로 된 현장교육 없이 모르고 창업에 뛰어들니 실패가 늘어나는 구조

- (소상공인 혁신거점 구축) 전주기적인 창업교육과 역량강화·교류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개방형 공간 운영('23~ 年 2만명, 중기부)
  - 체험점포 위주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전국 17개)를 개편하여 공간을 구성하고 실전창업·인턴십·모의실습 등 현장형 교육훈련 확충
  - 선배 창업인 등 민간 혁신가 참여 독려, 민간 협업 온·오프라인 교육콘텐츠·인프라 공유 및 공동제작을 통해 교육 품질 제고
  - \* 예) 네이버 비즈니스 스쿨, 외식업중앙회 교육원, 소상공인연합회 등

**현장 사례**

▪ 부산 로컬기업이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E사에서 브랜딩 교육(르봉스쿨)·체험창업(AREA6) 프로그램 운영

- (대학 활용 청년 소상공인 교육) 비기술기반 청년 창업가가 충분한 준비후 창업하도록 대학을 생활혁신 창업기지로 활용('23~, 중기부)
  - \* '20년 전체 대학생 창업 중 비기술업종 비중 55.2%('21, 중기부·교육부)
  - 권역별 일반·전문·기능대학 중 전담조직·공간·창업교육 역량이 우수한 곳을 중심으로 생활혁신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
  - \* 교육내용 예시 : 창업과정, 점포경영 이론, 전문학과별 기능교육, 세무회계 등
- (로컬 특화 기업가 양성) 지역대학·지역기업과 협업하여 로컬기반 창업가 대상 특화교육 실시('23~, 중기부·교육부)
  - 생활산업 분야 로컬 연계 (부)전공을 신설하여 지역대학을 로컬크리에이터 인재를 키우는 '(가칭)골목장인학교' 로 활용

생활산업 전공분야(예시)	지역성	창의성
제조(패션잡화, 뷰티, 식음료, 가구, 생활소품)	문화, 자연, 특산물, 유	나다움, 다양성, 삶의질,
서비스(미용, 숙박, 음식주점, 카페, 여행, 체험)	휴 공간 및 건물, 이	사회적 가치, 플랫폼
리테일(편집숍, 슈퍼마켓, 갤러리, 서점, 물류)	야기 소재 등	디지털화 등

- (생계형 창업자의 재취업 유도) 생계형 창업자에 대한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을 늘려 자연스러운 과밀해소 추진(' 22.下~, 중기부·고용부)
  - 민간기업·업종별 협단체와 연계\*하여 인턴기회·분야별 특화교육 실시, 취업활동·성공시 최대 100만원 지급하는 전직장려수당 확대(' 22. 8,000건)
    - \* 외식업중앙회(음식점), 스타벅스(바리스타), SK플래닛(유통), YWCA(요양보호사) 등
  - 취업 희망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 \* ('21) 연매출액 1.5억원 이하 → ('22.7~) 연매출액 3억원 이하

### 3) 유망 소상공인 스케일업 촉진

- (스케일업·개방형 혁신) 단계별 경쟁·피칭으로 유망한 소상공인을 선별, 융합 팀빌딩·사업화·자금 등 집중지원(' 22.下~, 중기부)

【1】소상공인 + 창작자	【2】소상공인 + 스타트업	【3】소상인 + 소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자인, 브랜딩, 패키징 등에 창작자의 무형가치 접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기획·판로 등에 스타트업의 속도·편의·효율성 부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업종 간의 결합과 협업을 유도하여 상호 간 시너지 창출</li> </ul>

- (IP브랜딩) 혁신 아이디어를 보유한 소상공인에 IP출원·보호·활용을 패키지 지원하여 '지식 기반 소상공인' 육성(' 23~, 중기부)

**현장의 목소리** ■ 소상공인·중소 프랜차이즈가 보유한 영업노하우·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대응 역량 부족

구분	초기 단계	성장 단계	대표브랜드 단계
지원 대상	창업 1~3년 이하 또는 가맹점 10개 이하	창업 4~10년 또는 가맹점 11~70개 미만	창업 10년 이후 또는 가맹점 70개 이상
지원 내용	민간 브랜딩 메이커 활용 브랜딩 전략 수립·컨설팅	스마트·모바일 접목, 마케팅·판로, BM 고도화 등	스마트화, DB구축, 규격/인증, 글로벌화 등

- (소상공인 투자모델 창출) '애그리게이터' 등 소상공인 투자자가 늘어나도록 소상공인에 적합한 방식의 투자모델 도입(' 23~, 중기부)

\* 애그리게이터(agggregator) : 작지만 유망한 소상공인·브랜드들을 발굴해 투자·인수하고 마케팅·전자상거래·해외진출 등을 통해 스케일업 지원

**현장 사례**

▪ '18년 설립된 美 스라시오는 아마존 입점업체 중 유망한 곳에 투자해 수익을 거두면서 유니콘 등재, 국내에서도 '홀썸브랜드' '더인벤션랩' 등 활동중

- 민간투자자가 창의적 소상공인에 先투자하는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추가지원하는 매칭 융자 제도 신설
- 창의적 소상공인의 민간 클라우드 펀딩·대출 플랫폼 활용을 지원하고, 동네펀딩 모델\* 시범 추진
  - \* 주민들이 동네 소상공인 클라우드 투자시, 현금수익+현물리워드를 결합하여 고객확보 유도

**현장 사례**

▪ B사는 마포 주변 소상공인 가게 70여곳을 대상으로 동네펀딩 실시, 상권인근 직장인, 동네주민 500여명이 참여하면서 17억원 펀딩 성공('2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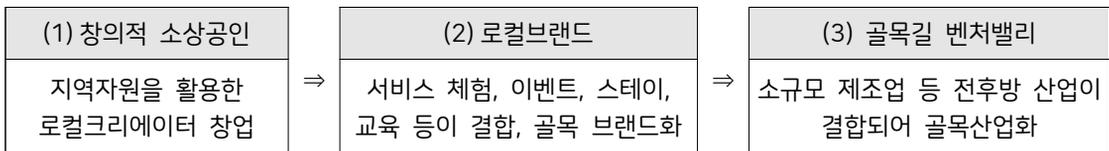
- 개인사업자 사업권에 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법인전환시 지분전환하는 (가칭)소상공인지분전환계약 도입 검토(소상공인법 개정)
  - \* 소상공인의 대다수가 非법인 개인사업자로 주식·출자 등의 투자방식 불가
  - \*\* 예시 : 홍삼진액 제조·판매권 등의 수익배분에 관한 투자계약 체결, 추후 매출·수익 확대시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고 지분을 배분

### 전략4. 민간 협업을 통한 행복한 로컬상권 조성

◇ 민간의 혁신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의 창의적 소상공인을 로컬브랜드로 키우고 소상공인이 행복한 골목상권 조성

#### 1) 로컬브랜딩 및 골목산업화 추진

〈(예시)로컬브랜드 성장단계〉



□ (로컬브랜드 육성) 지역가치 창업가 '로컬크리에이터(年 200팀)'의 '로컬브랜드' 도약을 위해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23~, 중기부·우분)

- \* (예비·창업) 사업화자금 1~3천만원 → (도약) 최대 1억원 추가 지원
- 콘텐츠를 확장하여 지역대표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역 자원(특산물, 공간 등)의 전국 유통\*, 투융자 유치, 선배기업 협업 등 지원
-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우체국 소핑·우편 물류망 활용

**현장 사례** ■ S사는 투자유치 등을 통해 양양의 군사지역 해변을 국내 최초의 서핑 전용 해변으로 조성, 서핑 교육축제 등으로 영역 확장('21년기준 50만명 방문, 매출 3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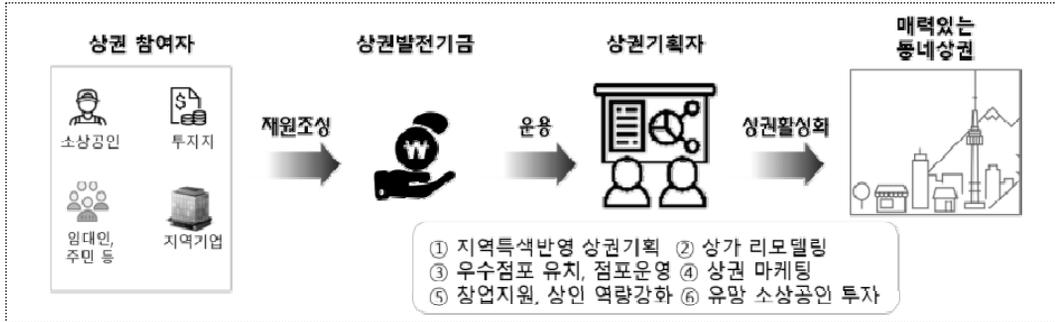
- (로컬상권 브랜딩) 역사·문화 등 지역 정체성(Identity)을 골목길에 담아내는 읍면동 단위의 로컬브랜드\* 구축('23~, 중기부)
  - \* 예시 : 인천 개항로 프로젝트, 강릉 커피거리, 양양 서피비치, 대전 성심당스트리트 등
  - 상인·창업가(지역활동가)·건물주·지역주민 등 다양한 골목상권 주체들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협의체 등) 운영 및 브랜딩 전략 수립 지원
  - 도심형 소형 상권 단위로도 활성화계획을 자율 수립하여 테마체험공간 조성, 특산물 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
  - \* (기존) 단일유형(점포 400개 이상, 120억원 지원) → (개편) 도심형 추가(점포 100개 이상, 60억원 지원), 지역균형 배분
  - 대학 - 전통시장간 협업 과제를 수행하는 ‘(가칭)전통시장 리부트 프로그램’ 신설(年 2 곳)

**현장의 목소리** ■ 지역 커뮤니티와 지역 대학들이 연계해서 상권이나 전통시장을 살려낸 경험이 많은데,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지 못해서 아쉬움

- (전후방 골목산업 육성) 소규모 제조업 등 로컬브랜드와 밀접한 연관산업을 육성하여 ‘골목길 벤처밸리’ 조성('23~, 중기부·우분)
  - \* (강릉 사례) 테라로사, 보헤미안 등 커피문화 확산 → 커피 재배, 커피거리 축제·스테이 등 연관산업 결합 → 커피가공 및 커피찌꺼기 업사이클링 제조업 확장
  - ‘(가칭)골목펀드’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상권내 유희공간·우체국 등을 직주락(職住樂) 창업공간으로 재생
  - 골목길 벤처밸리를 저해하는 규제가 있는 경우 옴부즈만을 통한 규제완화, 지역특구 지정(지자체 협의) 추진

2) 민간혁신가·자본 유입을 위한 상권기획자·상권발전기금 도입

〈(예시)상권기획자 및 상권발전기금 개념도〉



□ (상권기획자 도입) 골목상권 공간 재구성, 소상공인 보육 등을 전문기획하여 상권발전을 도모하는 상권기획자 제도 신설('23, 상권법 개정)

**현장의 목소리** ■ 소상공인들이 밀집한 골목상권을 살려내는 민간 혁신가들이 더욱 늘어나도록 정부에서 여건을 조성할 필요

- \* (역할·의무) 상권발전방안 기획, 상인조직 대상 자문 및 상권발전기금 운영 대행, 상가 등 공간 재구성, 유망 소상공인 보육, 적정 임차료 / 장기임대 등
- 상권기획자에 상권활성화·소상공인 육성사업 운영·추천권 등을 부여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현장 사례** ■ U사는 연남동 등에서 동네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골목상권 기획자로 지역상권의 IP 창출, 공간플랫폼 개발, 동네펀드 및 기업·투자사 등과 협업을 지원

□ (상권발전기금 조성) 상권 주체들이 상권발전사업\* 재원조달을 위해 (가칭)상권발전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 검토('23, 상권법 개정)

- \* 사업 예시 : 빈점포매입·장기임대, 지역 앵커스토어 육성, 자체 유통물류망 구축 등
- 상권발전기금의 조성형태(투자조합 또는 공동자금), 투자범위(소상공인·상가점포 등), 조성·운용자(상권조합·상권기획자) 등 세부안 마련

□ (민관협력형 상권투자모델 추진) 상권투자, 임대료 조정 등이 민간에서 이루어지도록 자율상권조합\* 설립·안착 유도('23~, 중기부)

\* 상인·임대인·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상권관리기구(지역상권법 제15조)

**현장 사례**

- 군산 영화타운에서 지역 청년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지역관리회사인 J사를 창업, 신규 점포의 공동 설계·브랜드개발과 DIT(Do It Together) 축제, 커뮤니티 호텔 등 추진

**3) 로컬상권 혁신 인프라 구축**

- (읍면동 상권혁신) 읍면동 단위로 소상공인·혁신가·주민 등이 참여,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조성 추진('23~, 중기부·우분)
  - \* (민간 상인조직·기초지자체) 소규모 상권활성화 사업 기획·추진, (중기부·우분) 사업비 지원, 유희시설 제공
- (로컬상권 유통체계 고도화) 골목상권 도소매 자영업자의 성장을 위해 로컬상권 유통 인프라 3축\* 혁신('23~, 중기부)
  - \* ① 디지털통합물류시스템 - ② 허브형 중소유통 물류센터 - ③ 동네단위 유통망
  - 지역 중소유통물류센터-슈퍼마켓-소비자를 온라인·디지털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풀필먼트\* 구축 및 보급·확산(~'27, 산업부)
    - \* 풀필먼트 표준모델 설계 후 포항, 부천, 창원에 시범구축(~'23.3) → 기초여건·사업성 검토 등을 토대로 12개 지역에 보급·확산(~'27)
  - 소매업종과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체험요소, 지역의 콘텐츠를 융합한 오프라인 경험형 마켓\* 보급('22. 100개, 중기부)
    - \* (예) 화훼+슈퍼, 반찬가게+식당 등 업종별 융합에 푸드코치(다이어트 관리) 등 체험요소 추가

**현장의 목소리**

- 지역 중소유통·프랜차이즈 업체들의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용 물류센터 확충, 전산망 개선 등 필요

- (지역단위 소상공인 육성기관 조성) 권역별 '(가칭)골목경제 진흥재단\*' 구성을 추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 실시('23~, 중기부)
  - \* 소상공인 역량강화, 골목상권 실태조사·발전계획 수립 지원, 골목산업화 사업 등 수행

## V. 향후 추진일정

세부 추진과제		소관부처	일정
(전략1) 코로나19·3고 충격 긴급대응플랜 추진			
1-1. 선제적·종합적 재기지원			
1-1-1. 선제적 폐업예방		중기부	' 22.10~
1-1-2. 「폐업-채무조정-재도전 종합 패키지」 마련, 폐업 지원규모, 재기지원 패스트트랙 확대		중기부·금융위	' 22.10~
1-1-3. 새출발기금 시행 및 연착륙 지원		금융위	' 22.10~
1-2.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1-2-1.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확대, 복지지원 강화		중기부	' 23~
1-2-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확대		중기부	' 22.8
1-2-3. 재해대응 매뉴얼 마련, 원스톱 이동지원센터 운영		중기부	' 22.8~
1-3. 저금리 대출 등 경영부담 완화			
1-3-1. 58조원 규모 신규·대환자금 공급 및 기존 제도 개선		중기부·금융위	~' 22
1-3-2. 침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법령정비 추진		법제처	' 23
1-3-3. 세액공제 확대 등 세금·공공요금 부담 경감		기재부 등	~' 23
1-3-4. 밀가루 등 원료비 지원		농림부	~' 22
1-3-5.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등 임대료 부담 완화		기재부	~' 23
1-4. 소비진작 분위기 조성을 통한 매출증대 유도			
1-4-1. 대규모 소비촉제 개최		중기·산업·농림부	' 22.8~
1-4-2. 온누리상품권 할인		중기부	' 22.9
(전략2) 스마트·디지털 기반 소상공인 경영혁신			
2-1.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한 정보 제공·신사업 창출			
2-1-1. 빅데이터 구축 법적근거 마련, 데이터 확보		중기부	' 23
2-1-2. 앱을 통한 창업·경영 정보 제공, 신사업 창출		중기부	' 23~
2-2. 스마트상점·공방 보급 및 고도화			
2-2-1. 소상공인의 스마트 전략기획 지원		중기부	' 23~
2-2-2. 스마트상점 빅데이터 구축방안 검토		중기부	' 23
2-2-3.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확산		중기부	' 22~' 27
2-2-4. 스마트기술 공급기업 육성		중기부	~' 25
2-3.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상생협력 촉진			
2-3-1. 'e커머스 소상공인' 年 10만명 양성		중기부	' 22~' 27
2-3-2. '함성 대한민국' 등 온라인 분야 상생협력 문화확산		중기부	' 22.下~
2-3-3. 배달플랫폼 상생 촉진		중기부	' 22.下~
2-4. 전통시장의 디지털 역량 강화			
2-4-1. 온라인 배송 지원		중기부	' 22.下~
2-4-2. 대기업 상생형 온라인 진출 지원		중기부·동반위	' 22.9~

세부 추진과제		소관부처	일정
2-3-3. 스마트 결제 인프라 구축		중기부	' 22.8
<b>(전략3)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b>			
3-1.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액으로 단일화			
3-1-1.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전환		중기부	~' 23
3-2. 준비된 창업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생계형 창업자는 재취업 유도			
3-2-1. 소상공인 혁신거점 구축 및 현장형 교육훈련 실시		중기부	' 23~
3-2-2. 대학 활용 청년 소상공인 교육		중기부	' 23~
3-2-3. 로컬 특화 기업가 양성		중기부·교육부	' 23~
3-2-4. 생계형 창업자의 재취업 유도		중기부·고용부	' 22.下~
3-3. 유망 소상공인 스케일업 촉진			
3-3-1. 유망 소상공인 스케일업 및 개방형 혁신 촉진		중기부	' 22.下~
3-3-2. 혁신 아이디어 보유 소상공인에 IP브랜딩 지원		중기부	' 23~
3-3-3. 소상공인 투자모델 창출		중기부	' 23~
<b>(전략4) 민간 협업을 통한 행복한 로컬상권 조성</b>			
4-1. 로컬 브랜딩 및 골목산업화 추진			
4-1-1. 로컬 크리에이터를 로컬브랜드로 육성		중기부·우본	' 23~
4-1-2. 읍면동 단위의 로컬브랜드 구축 지원		중기부	' 23~
4-1-3. 로컬브랜드 밀집 전후방 소규모 제조업 등 육성		중기부·우본	' 23~
4-2. 민간혁신가·자본 유입을 위한 상권기획자·상권발전기금 도입			
4-2-1. 상권기획자 제도 신설		중기부	' 23
4-2-2. 상권발전기금 제도 도입 검토		중기부	' 23
4-2-3. 민관협력형 상권투자모델 추진		중기부	' 23~
4-3. 로컬상권 혁신 인프라 구축			
4-3-1. 읍면동 단위 동네상권발전소 조성		중기부·우본	' 23~
4-3-2. (가칭)골목경제 진흥재단 구성 추진		중기부	' 23~
4-3-3. 로컬상권 유통체계 고도화		중기부·산업부	' 23~



# 감사인 지정기초자료 작성 및 제출 매뉴얼

- 한국공인회계사회 -

## ✓ 회계법인

### I. 지정기초자료 제출대상

-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지정기초자료를 정해진 기간안에 제출해야 함(「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5조제2항)
- 지정기초자료는 산정기준일(8.31.)부터 2주 이내에 제출(9.13.까지)
- 등록 및 수습 공인회계사 수는 회계법인이 한공회에 신고하는 현황 자료와 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기재
  - ※ 정해진 기간내에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회계법인은 1년간 지정 감사인에서 배제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I. 지정기초자료 제출방법

- ①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
- ② [감사인 · 제출서류] - [지정 기초자료 신고서(회계법인)]을 선택
  - ※ 제출완료후 수정 필요시 처음부터 재작성하셔야 하며, 다수건을 제출하신 경우 기한내 최종 제출된 자료를 지정기초자료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 지정기초자료 작성과 관련한 문의 : 02-3145-7763, 7975

- 유선문의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정제외 점수 확인', '당해감사제한회사' 등 회계법인 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문의는 자제부탁드립니다.
-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을 제출서류 2-12.에 기재하시면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선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 시스템 오류로 인한 문의 : 02-3145-5463, 5401, 5413

- 유선문의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고서 제출 완료' 여부 등 확인을 위한 문의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 Ⅲ. 지정기초자료 작성방법

#### 1. 회사개황

1-1 회계법인명	(주)테스트법인	1-2 회계법인 고유번호	00000222
1-1-1 회계법인명 변경 여부	예	1-1-2 변경 전 회계법인명	가나회계법인
1-3 회계법인 설립일	20100101	1-3-1 회계법인 등록일	20100120
1-4 최근 3년 이내 합병 분할 내역	20.1.23. <a href="#">다라회계법인의 분할신설법인격 합병</a> 21.3.21. <a href="#">마바회계법인과 아자회계법인으로 분할</a>		
1-5 대표자명	홍길동	1-6 전화번호	010-1234-5678
1-7 주소(우편번호)	07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1-8 당기 사업연도	제 13 기 2022.04.01 ~ 2023.03.31 12 개월		
1-8-1 사업연도 결산기 변경 여부	예		
1-8-2 결산기 변경 내용 (1-8-1에서 '예'인 경우)	2021.7.1. 6월말에서 3월말 결산으로 변경		
1-9 신고서 제출 공문 첨부			파일 선택

(1-1. 1-2.) 제출하려는 회계법인이 맞는지 확인한다.

(1-1-1. 1-1-2.) 최근 3년 이내 회계법인명 변경이 있는 경우 "예"로 선택하고 변경 전 회계법인명을 기재(다수인 경우 모두 기재)한다.

## 회계정보

(1-3. 1-3-1.) 회계법인 설립일 및 「공인회계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일자(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일자가 아님에 유의)를 기재한다.

(1-4.) 최근 3년이내 합병, 분할 내역(등기일, 세부내역)을 기재한다.

(1-6. 1-7.) 당해업무 담당자 연락처(휴대전화 가능) 및 담당자가 수령할 수 있는 회계법인 소재지(본점이외도 가능) 주소(도로명 주소)를 기재한다.

(1-8.) 산정기준일('22.8.31.)이 속하는 사업연도(예, 3월 결산: 2022.4.1.~2023.3.31.)를 기재한다.

(1-8-1. 1-8-2.) 최근 1년이내 사업연도 결산기 변경내역을 기재한다.

\* 사업연도 결산기 변경으로 산정기준일의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일 경우 관련자료 제출방법에 대해 별도 문의 필요(02-3145-7761)

(1-9.) 회계법인이 이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기 위한 공문을 첨부한다(샘플양식 참고).

## 2. 신고사항

공문 및 첨부서류 샘플 다운로드

2-1 소속 공인회계사 수	감사가능 등록 공인회계사 수	1200	명	
	수습 공인회계사 수	100	명	
2-1-1 경력기간별 감사가능 등록 공인회계사 수				
15년 이상	10년 이상	6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
100	150	300	350	300
2-1-2 감사가능 등록 공인회계사별 경력기간 파일 첨부				
			파일 선택	

(2-1.) '22.8.31.기준으로 등록 공인회계사수와 수습 공인회계사 수를 기재한다.

\* 회계법인이 한공회에 신고하는 경력 및 수습회계사 현황 자료와 일치여부 반드시 확인 후 기재

(2-1-1. 2-1-2) 등록공인회계사를 경력기간별로 구분 기재하고 현황자료(샘플양식 참고)를

첨부한다.

\*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이후에 감사인(회계법인, 감사반)에 소속되어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의미

2-2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여부	예 <input type="button" value="v"/>		
2-3 회계법인 총 매출액	30,000,000,000 원	2-3-1 회계감사업무 매출액	15,000,000,000 원
2-4 등록요건상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수	15 명	2-4-1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수	15 명
2-4-3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지정 여부	예 <input type="button" value="v"/>		
2-4-3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지정 여부	예 <input type="button" value="v"/>		
2-5 직전 사업연도말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액	1,000,000,000 원		
2-6 직전 사업연도말 손해배상 준비금 적립액	100,000,000 원	2-7 직전 사업연도 중 손해배상책임보험의 연간 보험료	100,000,000 원
2-8 전년도 감사대상 주권상장법인 수	10 사		

(2-2.) 산정기준일 현재 법 제9조의2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을 한 경우 "예"로 기재한다.

(2-3. 2-3-1.) 산정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총 매출액과 회계감사업무 매출액(임의감사 포함)을 기재한다.

(2-4.) 산정기준일 현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라 산정되는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수를 기재한다.

\* 최소한의 요건에 해당하는 수를 기재하며 담당이사는 포함하지 않음

(2-4-1.) 산정기준일 현재 당해 회계법인의 외감규정 별표1제1호에 따른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수를 기재한다.

\*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를 제외한 담당자 수를 기재

(2-4-2.) 산정기준일 현재 당해 회계법인의 외감규정 별표1제1호에 따른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를 지정한 경우 "예"를 선택한다.

\*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및 담당이사 수를 증명할수 있는 증빙을 2-12. 기타 추가제출에 첨부

(2-5. 2-6. 2-7.) 산정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액,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액, 손해배상책임보험의 연간 보험료를 기재한다.

## 회계정보

- \* 손해배상공동기금,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액: 직전 사업연도말 잔액
- \* 손해배상책임보험의 연간 보험료: 직전 사업연도 기간중 납입한 보험료(보장금액이 아님에 유의), 외환의 경우 원화로 환산 기재

(2-8.) 산정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중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 (임의감사 제외)인 감사대상회사의 수를 기재한다.

- \*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제출시 판단하는 기준과 다름에 유의
- \* 예) 회계법인의 직전 사업연도가 2021.4.1.~2022.3.31.인 경우 2021년3월말로 종료되는 감사 대상회사는 실적에서 제외되고, 2022년3월말로 종료되는 감사대상회사는 실적에 포함

2-9 연도별 부과받은 지정제외점수		
1년 이내	1년 ~ 2년 이내	2년 ~ 3년 이내
20 점	30 점	10 점

(2-9.) 산정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2021.9.1.~2022.8.31.), 1년~2년 이내(2020.9.1.~2021.8.31.), 2년~3년 이내(2019.9.1.~2020.8.31.)의 기간 중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부과받은 지정제외점수를 기재한다.

2-10 감사업무가 제한된 회사여부	아니요
2-10-1 감사업무가 제한된 회사 세부내역 파일 첨부	파일 선택
2-10-2 외부감사법상 조치에 대한 소송 등 내역	21.10.3. 가나다주식회사의 연결재무제표 등에 대한 조치(21.8.16.)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중
2-11 금융회사 감사 관련 자료제출 여부	선택
2-11-1 금융회사 감사 관련 자료 파일 첨부	파일 선택

(2-10. 2-10-1.) 산정기준일 현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에 따라 감사업무가 제한된 회사가 있는 경우 "예"로 선택하고 관련회사를 첨부한다(샘플양식 참고).

(2-10-2.) 외부감사법 상 조치와 관련된 소송 및 집행정지 등의 세부내용을 기재한다.

- \* 산정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21.8.31.)이전에 종료된 내역은 제외함

(2-11. 2-11-1.) 금융회사의 지정감사인이 되고자 하는 회계법인에 한하여 "예"를 선택하고  
 관련자료를 첨부한다(샘플양식 참고).

- \* 과거 5년간(2018.1.1.이후) 회계법인이 금융회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농협 은행) 감사업무(법정 외감대상이 아닌 경우 제외)를 수행한 실적을 기재
- \* 2022 사업연도에 금융회사를 지정받게 될 경우 투입가능한 인원 및 해당 공인회계사의 경력기간(금융회사 감사실적으로 한정하지 않음)을 기재

2-12 기타 추가 제출 내역	매출액 등은 합병회계법인 실적을 합산한 자료
	C:\fakepath\품질관리담당자 및 담당이사 증빙.pdf <span style="float: right; border: 1px solid #ccc; padding: 2px 5px;">파일 선택</span>

(2-12.) 기타 추가로 기재할 내용 및 제출할 자료(제출할 서류가 복수일 경우 압축파일 형태로  
 첨부)가 있는 경우에 입력한다.

(입력완료시) 제출 버튼을 클릭한다.

## ✓ 주권상장법인

### I. 지정기초자료 제출대상

- 주권상장법인(유가, 코스닥)은 지정기초자료를 정해진 기간안에 제출해야 함(「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 코넥스는 의무제출대상은 아니지만 제출을 권장
  - ※ 당기 사업연도 등의 감사인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외국회사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해당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
- 지정기초자료는 사업연도 시작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12월 결산법인 금번 제출기한은 9.14.) 제출해야 함
  - ※ 예) 12월결산 법인: 9.1.~9.14. 6월결산 법인: 3.1.~3.14. 기간중 제출
  - ※ 지정기초자료는 서버점검시간(새벽 0~6시)를 제외하고 제출가능(휴일포함)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시스템 오류 등 발생시 응대할 수 없음에 유의
- 회사가 지정기초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기재, 또는 기재해야 할 사항을 빠뜨린 경우 감사인 지정조치 될 수 있음(시행령 제14조 제6항제6호)

## II. 지정기초자료 제출방법

- ①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
- ② [회사·제출서류]-[지정 기초자료 신고서(상장법인)]을 선택
  - ※ 제출완료후 수정 필요시 처음부터 재작성하여야 하며, 다수건을 제출하신 경우 기한내 최종 제출된 자료를 지정기초자료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 ※ 지정기초자료 작성과 관련한 문의 : 02-3145-7763, 7975
  - 유선문의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거 감사인 지정여부', '감리여부' 등 회사의 사실관계 확인 문의는 자제부탁드립니다.
  -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을 제출서류 2-13.에 기재하시면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선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 ※ 시스템 오류로 인한 문의 : 02-3145-5463, 5401, 5413
  - 유선문의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스템 접속 및 제출오류 등이 아닌 '신고서 제출 완료' 여부 등 확인을 위한 문의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 III. 지정기초자료 작성방법

### 지정 기초자료 신고서(상장법인)

보고제도 문의 02. 3145. 7761  
시스템 문의 02. 3145. 5463

#### 1. 회사개황

1-1 회사명	(주)테스트법인	1-2 회사 고유번호	00000222
1-1-1 회사명 변경 여부	예	1-1-2 변경 전 회사명	가나다주식회사
1-3 법인등록번호	1101111111113	1-4 사업자등록번호(본점)	
1-5 최근 1년 이내 합병 분할 내역	21.12.31. ABC주식회사(01234567)를 흡수합병 22.3.31. 라다마주식회사(02345678)로 물적분할		
1-6 대표자명	홍길동	1-7 전화번호	010-1234-5678
1-8 주소(우편번호)	07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1-1. 1-2. 1-3. 1-4.) 제출하려는 회사가 맞는지 확인한다.

(1-1-1. 1-1-2.) 최근 3년 이내 회사명 변경이 있는 경우 "예"로 선택하고 변경 전 회사명을 기재(다수인 경우 모두 기재)한다.

(1-5) 지정대상 선정일(사업연도 시작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9월 1일을 말한다.)로부터 과거 1년 이내 합병·분할기일(등기일), 회사명(금감원 고유번호)을 포함한 합병·분할 세부 내역을 기재한다.

(1-6. 1-7. 1-8.) 대표이사(공동·각자대표이사 전원), 당해업무 담당자 연락처(휴대전화 가능) 및 담당자가 수령할 수 있는 회사 소재지(본점 이외도 가능) 주소(도로명 주소)를 기재한다.

1-9 법인구분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1-9-1 기술성장기업 여부	선택
1-10 소속 업종명	업종명	1-10-1 소속 업종코드	123
1-11 금융회사 등 여부	해당없음		
1-12 당기 사업연도	제 22 기 2022.01.01 ~ 2022.12.31 12 개월		
1-12-1 사업연도 결산기 변경 여부	아니요		
1-12-2 결산기 변경 내용 (1-12-1에서 "예"인 경우)			

(1-9-1.) 지정대상 선정일 현재 코스닥 기술성장기업부내에 기술성장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선택한다.

(1-10. 1-10-1.)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당해회사의 업종명과 업종코드(6자리)를 기재한다.

\* 업종코드: 한국거래소-정보데이터시스템-(종목검색을 화면검색으로 변경후) 검색어에 12020을 입력하면 조회가능

(1-11.) 지정대상 선정일 현재 금융회사 및 기업인수목적회사 해당하는 경우 각각을 선택하고 그 외의 회사는 "해당없음"을 선택한다.

\* 금융회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농협은행  
기업인수목적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 회사

(1-12.)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22.1.1.~2022.12.31.)를 기재하고,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회사는 "지정대상 선정일의 기산일이 되는 사

## 회계정보

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사업연도"를 당기 사업연도로 기재한다.

(1-12-1. 1-12-2.) 최근 3년이내 사업연도 결산기 변경이 있는 경우 "예"로 선택하고 변경 이력을 기재(다수인 경우 모두 기재)한다.

1-13 신고서 제출 공문 첨부	<input type="text"/>	파일 선택
1-14 감사인 대리제출 여부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1-14-1 감사인 대리제출에 대한 위임장	<input type="text"/>	파일 선택

(1-13.) 회사가 이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기 위한 공문을 첨부한다(샘플양식 참고).

(1-14. 1-14-1.) 대리제출하는 경우 "예"를 선택하고 회사의 위임장도 함께 첨부한다(오류기재로 인한 책임소재, 회사 정보 유출 등에 유의).

## 2. 신고사항

공문 및 첨부서류 샘플 다운로드

2-1 연결 재무제표 작성여부			
당기	전기	2기 전	3기 전
예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2-1.) 당기를 포함한 3개 사업연도(예: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이면 "예")를 선택한다.

\* 결산기 변경으로 12개월미만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를 1개 사업연도로 포함

2-2 재무기준	전기	2기 전	3기 전
2-2-1 영업이익	123,123 원	123,123 원	123,123 원
2-2-2 영업현금흐름	123,123 원	123,123 원	123,123 원
2-2-3 이자비용	123,123 원	123,132 원	1,233,213 원
2-2-3-1 영업비용상 이자비용	321,321 원	321,321 원	321,321 원

2-2-4 부채총액	321,321 원	321,321 원	321,321 원
2-2-5 자본총액	321,321 원	321,321 원	321,321 원
2-2-6 자산총액	1,212 원	111,111 원	111,111 원
2-2-6-1 전기말 별도재무제표상 자산총액	1,515,151,515 원		
2-3 비교재무제표 수정여부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2-3-1 비교재무제표 수정사유			

(2-2.) 재무기준 항목(2-2-1~2-2-6)은 직전 3개 사업연도(예: 2021년, 2020년, 2019년)를 대상으로 작성하며, 모든 수치는 '원' 단위로 기재한다.

- 1) 각 사업연도 기준으로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업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연도는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한다.
- 2) 각 사업연도의 재무수치는 해당 시점의 (연결)감사보고서상에 기재된 수치(수정발행된 경우 최종 공시된 보고서 기준)를 기재한다.
  - \* 예) 2019년 재무수치는 2019년 (연결)감사보고서상의 금액을 기재(2020년 감사보고서상 비교표시된 2019년 수치가 아님에 유의)
- 3) 2)의 예외사항으로 회사가 과거 발생한 오류수정을 비교표시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반영한 경우 비교표시 재무제표상의 재무수치를 기재한다(이 경우 2-3. 항목에 "예"로 선택하고 관련 사업연도 및 수정사유를 기재).
  - \* 참고로, 중단사업, K-IFRS 전환 등으로 인한 비교표시 재무제표의 변동은 오류수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연결)감사보고서상 재무수치를 기재

(2-2-3.) 이자비용은 영업외손익에 계상된 이자비용, 금융비용(원가)에 포함된 이자비용 성격의 금액을 기재(예, 사채상각액 등은 합산하여 포함하되, 외화환산손실 등은 제외)한다.

(2-2-3-1.) 금융회사 및 경제적 실질에 따라 금융회사와 동일한 형태로 손익계산서를 표시한 회사의 경우 기재(영업비용 상 금액만 기재하고 영업외비용 항목은 2-2-3에 기재)한다.

(2-2-6-1.) 전기 사업연도(예, 2021년) (별도)개별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을 기재(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도 동 항목에서는 반드시 별도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을 기재)한다.

2-4 과거 3년간 최대주주 변경 횟수  건

2-4-1 최대주주 변경 내역 추가

변경일자

변경사유 등  삭제

2-5 과거 3년간 대표이사 변경 횟수  건

2-5-1 대표이사 변경 내역 추가

변경일자

변경사유 등  삭제

(2-4, 2-5.) 과거 3년간(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9.9.2.~'22.9.1. 기간)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변경내역을 기재한다.

- 1) 변경횟수 만큼 '추가'버튼을 누르면, 그에 따른 세부입력 화면(2-4-1, 2-5-1)이 생성되며 생성된 화면의 변경내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함
- 2) 변경횟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산정
- 3) 예시) 대표이사가 다음의 표와 같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횟수: 1회, 변경일: 21.3.10. 변경전 대표이사: A, B 변경후 대표이사: C, D 변경사유: 사임>으로 기재

(예시) 대표이사 변경 내역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비고
20.8.1.	A, B	B, C	임기만료	변경횟수에 포함
21.3.10.	B, C	C, D	사임	변경횟수에 포함

※ 입력에 모호함이 있더라도 별도 문의없이 회사 판단으로 기재하되, 의문사항은 2-13. 기타 추가사항에 기재 또는 관련문서를 첨부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변경의 예외사유>

< 대표이사 변경 예외사유 >

- ① 사망, 실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가 교체된 경우
- ② 대표이사가 둘 이상이고 이 중 일부만 교체된 경우[기존 대표이사 전원 교체시(순차교체 포함)에 1회 교체로 간주]
  - \* 예, A, B → A, C (교체로 보지 않음) → C, D (교체에 해당)
- ③ 기존 대표이사는 교체되지 않고, 대표이사의 수가 변경되는 경우

< 최대주주 변경 예외사유 >

- ① 사망, 상속, 실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 ② 경영참여목적이 없는 기관투자자가 최대주주가 되어 변경된 경우
- ③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자(외감법 시행령 §15조④)들 간에 지분변동이 발생하여 변경된 경우
- ④ 동일 주식매매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최대주주가 여러번 변경된 경우는 지정대상 선정시 예외로 인정됩니다.

2-6 권리종목 지정 여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2-6-1 권리종목 지정 사유	반기보고서 미제출
2-7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여부	선택 <input checked="" type="checkbox"/>
2-7-1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사유	

(2-6. 2-6-1.) 지정대상 선정일 현재(12월 결산법인의 경우 9.1.) 권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예"를 선택하고 지정사유를 모두 기재한다.

(2-7. 2-7-1.) 지정대상 선정일 현재(12월 결산법인의 경우 9.1.)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예"를 선택하고 지정사유를 모두 기재한다.

2-8 소속 임직원의 횡령·배임 혐의 1 건				
2-8-1 세부내용				추가
공시일	구분	혐의금액	자기자본	삭제
2021.12.27	임원	23,456,789	12,345,678,900	

(2-8. 2-8-1.) 최근 1년간(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1.9.2.~'22.9.1. 기간) 소속 임원(「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또는 직원(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횡령 또는 배임을 했다는 혐의로 회사가 소속 임직원을 고소하거나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기재한다. 단, '21.9월 이전 발생한 경우라도 혐의 금액 등을 '21.9월 이후 확인 시에는 기재한다.

- 1) 한국거래소에 공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
- 2) 복수의 사항이 있는 경우 모두 기재

회계정보

- 3) 재판결과 및 진행사항 등 최초 발생사항이 아닌 경우 제외
- 4) 자회사와 관련한 공시내용은 제외
- 5) 자기자본금액은 공시발생일 직전 사업연도 금액을 기재

※ 입력에 모호함이 있더라도 별도 문의없이 회사 판단으로 기재하되, 의문사항은 2-13. 기타 추가사항에 기재 또는 관련문서를 첨부

2-9 신용등급				추가
등급부여일	평가기관	평가대상	등급	삭제
2021.12.31	한국기업평가	기업	AA	

(2-9.) 최근 1년 이내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으로부터 받은 신용등급(기업신용평가 또는 무보증회사채)을 기재하고 증빙문서를 2-13.에 첨부

- 1) "최근 3년 연속 영업손실이거나 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은 경우 또는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경우"에 따른 지정예외사유 판단을 위한 자료로 해당사항 없는 경우 기재 생략
- 2) 투자등급(BBB등급, 한국기업평가의 신용등급 기준, 이와 동등한 타 신용평가기관 등급을 포함)이상의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 3) 회사가 기업신용평가 또는 무보증회사채에 대해 받은 신용등급만 해당되며, 열거된 신용평가기관을 제외하고 신용정보회사가 타 목적으로 등급을 부여하거나 제3자가 요청하여 받은 등급은 제외

2-10 최근 6개 사업연도 감사인 선임 방법					
당기	전기	2기전	3기전	4기전	5기전
자유선임	자유선임	자유선임	자유선임	자유선임	지정
2-10-1 당기 감사인		차기회계법인			
2-10-2 3개 사업연도 연속감사의 당기 감사 차수		2년차			

(2-10.) 회사의 당기 이전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 외부감사를 "자유선임", "지정", "해당없음"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해당없음"은 각 시점에 회사가 외부감사법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경우 선택

(2-10-1.) 회사의 당기(예: 2022년) 감사인명(회계법인)을 기재한다.

(2-10-2.) 3개 사업연도의 연속감사 중 당기의 차수(지정감사 시 "기타")를 기재한다.

\* 2020년도에 3년 계약한 경우 당기에 해당하는 2022년 사업연도는 3년차에 해당

2-11 과거 6년내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 횟수			1	건
2-11-1 세부내용				추가
감리여부	조치(무혐의)일	감리기관		
조치	2021.12.27	금융감독원	삭제	

2-12 외부감사법 위반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횟수			1	건
2-12-1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내역				추가
조치일	2021.12.27	조치사유	감사전재무제표 미제출	
조치내용	감사인 지정 1년			
2-12-2 외부감사법상 조치에 대한 소송 등 내역	22.3.31. 서울행정법원에 감리조치(21.12.27.)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중			

(2-11.) 지정대상 선정일로부터 과거 6년 이내에 감리받은 횟수와 세부내용을 기재한다.

- 1) 감리횟수 만큼 '추가'버튼을 누르면, 그에 따른 감리 횟수 증가와 세부입력 화면(2-11-1)이 생성되며 생성된 화면의 세부내용을 모두 기재하여야 함
- 2) 재무제표 심사(외감규정 §23①1호나목)는 감리(외감법 §26조)와 다르므로, 감리횟수에는 심사를 제외하고 산정
- 3) "감리중": 감리착수하였으나 현재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 "무혐의": 감리결과 혐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거나 조치없음으로 통지 받은 경우, "조치": 주의 등 조치받은 경우

(2-12.) 지정대상 선정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조치받은 횟수와 조치내역을 기재한다.

\* 재무제표 감리결과외에 시행령 제14조제6항제3호 등에 따른 위반사항으로 조치받은 사항

- 1) 조치횟수 만큼 '추가'버튼을 누르면, 그에 따른 조치횟수 증가와 세부입력 화면(2-12-1)이 생성되며 생성된 화면의 조치내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함

(2-12-2.) 외부감사법 상 조치와 관련된 소송 및 집행정지 등의 세부내용을 기재한다.

\* 지정대상 선정일로부터 과거 1년(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1.9.1.)이전에 종료된 내역은 제외함

※ 입력에 모호함이 있더라도 별도 문의없이 회사 판단으로 기재하되, 의문사항은 2-13. 기타 추가사항에 기재 또는 관련문서를 첨부

2-13 기타 추가 제출 내역

(2-13.) 기타 추가로 기재할 내용 및 제출할 자료(제출할 서류가 복수일 경우 압축파일 형태로 첨부)가 있는 경우에 기재한다.

(입력완료시) 제출 버튼을 클릭한다.

## ✓ 대형비상장주식회사

### I. 지정기초자료 제출대상

□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지정기초자료를 정해진 기간안에 제출해야 함(「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

\* ①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이상 & ②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이상 & ③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비상장주식회사

※ 당기 사업연도 등의 감사인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외국회사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해당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

※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소유경영미분리였으나 9.1.시점으로 동 사유가 해소된 회사도 지정기초자료 제출

□ 지정기초자료는 사업연도 시작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12월 결산법인 금번 제출기한은 9.14.) 제출해야 함

\* 예) 12월결산 법인: 9.1.~9.14. 6월결산 법인: 3.1.~3.14. 기간중 제출

※ 지정기초자료는 서버점검시간(새벽 0~6시)를 제외하고 제출가능(휴일포함)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시스템 오류 등 발생시 응대할 수 없음에 유의

- 회사가 지정기초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기재 또는 기재해야 할 사항을 빠뜨린 경우 감사인 지정 등에 조치될 수 있음(시행령 제14조제6항제6호)

## II. 지정기초자료 제출방법

- ①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
  - ② [회사·제출서류]-[지정 기초자료 신고서(대형비상장법인)]을 선택
    - ※ 제출완료후 수정 필요시 처음부터 재작성하셔야 하며, 다수건을 제출하신 경우 기한내 최종 제출된 자료를 지정기초자료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 ※ 지정기초자료 작성과 관련한 문의 : 02-3145-7975, 7765
- 유선문의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거 감사인 지정여부', '감리여부' 등 회사의 사실관계 확인 문의는 자제부탁드립니다.
  -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을 제출서류 2-10.에 기재하시면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선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 ※ 시스템 오류로 인한 문의 : 02-3145-5463, 5401, 5413
- 유선문의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스템 접속 및 제출오류 등이 아닌 '신고서 제출 완료' 여부 등 확인을 위한 문의는 자제부탁드립니다.

## III. 지정기초자료 작성방법

### 지정 기초자료 신고서(대형비상장법인)

보고제도 문의 02. 3145. 7761  
시스템 문의 02. 3145. 5463

#### 1. 회사개황

1-1 회사명	(주)테스트법인	1-2 회사 고유번호	00000222
1-1-1 회사명 변경 여부	예	1-1-2 변경 전 회사명	가나다주식회사
1-3 법인등록번호	1101111111113	1-4 사업자등록번호(본점)	

## 회·계·정보

1-5 최근 1년 이내 합병 분할 내역	21.12.12. ABC주식회사(01234567)를 흡수합병 22.3.3. 라다마주식회사(03456789)로 인적분할		
1-6 대표자명	홍길동	1-7 전화번호	010-1234-5678
1-8 주소(우편번호)	07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1-1, 1-2, 1-3, 1-4.) 제출하려는 회사가 맞는지 확인한다.

(1-1-1, 1-1-2.) 최근 3년 이내 회사명 변경이 있는 경우 "예"로 선택하고 변경 전 회사명을 기재(다수인 경우 모두 기재)한다.

(1-5) 지정대상 선정일(사업연도 시작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9월 1일을 말한다.)로부터 과거 1년 이내 합병·분할기일(등기일), 회사명(금감원 고유번호)을 포함한 합병·분할 세부 내역을 기재한다.

(1-5, 1-6, 1-7.) 대표이사(공동·각자대표이사 전원), 당해업무 담당자 연락처(휴대전화 가능) 및 담당자가 수령할 수 있는 회사 소재지(본점이외도 가능) 주소(도로명 주소)를 기재한다.

1-9 금융회사 여부	금융회사
1-10 당기 사업연도	제 22 기 2022.01.01 ~ 2022.12.31 12 개월
1-10-1 사업연도 결산기 변경 여부	아니요
1-10-2 결산기 변경 내용 (1-10-1에서 '예'인 경우)	
1-11 신고서 제출 공문 첨부	<input type="text"/> 파일 선택
1-12 감사인 대리제출 여부	아니요
1-12-1 감사인 대리제출에 대한 위임장	<input type="text"/> 파일 선택

(1-9.) 지정대상 선정일 현재 금융회사에 해당하면 "금융회사"를 선택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없음"을 선택한다.

\* 금융회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농협은행

(1-10.)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22.1.1.~2022.12.31.)를 기재하고,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회사는 "지정대상 선정일의 기산일이 되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사업연도"를 당기 사업연도로 기재한다.

(1-10-1. 1-10-2.) 최근 3년이내 사업연도 결산기 변경이 있는 경우 "예"로 선택하고 변경이력을 기재(다수인 경우 모두 기재)한다.

(1-11.) 회사가 이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기 위한 공문을 첨부한다(샘플양식 참고).

(1-12. 1-12-1.) 대리제출하는 경우 "예"를 선택하고 회사의 위임장도 함께 첨부한다. 다만, 오류기재로 인한 책임소재, 회사 정보 유출 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신고사항

공문 및 첨부서류 샘플 다운로드

2-1 전기말 별도재무제표상 자산총액	1,234,567,890,987 원
----------------------	---------------------

(2-1.) 전기 사업연도(예: 2021년) (별도)개별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을 기재(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회사도 동 항목에서는 반드시 별도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을 기재)한다.

2-2 최근 6개 사업연도 감사인 선임 방법					
당기	전기	2기전	3기전	4기전	5기전
자유선임 ▼	자유선임 ▼	지정 ▼	자유선임 ▼	자유선임 ▼	자유선임 ▼
2-2-1 당기 감사인		치키회계법인			
2-2-2 3개 사업연도 연속감사의 당기 감사 차수		2년차 ▼			

(2-2.) 회사의 당기 이전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 외부감사를 "자유선임", "지정", "해당없음"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해당없음"은 각 시점에 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경우 선택

(2-2-1.) 회사의 당기(예, 2022년) 감사인명(회계법인)을 기재한다.

(2-2-2.) 3개 사업연도의 연속감사 중 당기의 차수(지정감사 시 "기타")를 기재한다.

## 회계정보

\* 2021년에 3년 연속 동일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2022년 사업연도는 2년차에 해당

2-3 과거 6년내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 횟수 1 건			
2-3-1 세부내용			추가
감리여부	조치(무혐의)일	감리기관	삭제
조치	2021.10.14	금융감독원	
2-4 외부감사법 위반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횟수 1 건			
2-4-1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내역			추가
조치일	2021.11.25	조치사유	감사전재무제표 미제출
조치내용	경고		
2-4-2 외부감사법상 조치에 대한 소송 등 내역	21.10.23. 서울행정법원에 감리조치(21.10.14.)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중		

(2-3.) 지정대상 선정일로부터 과거 6년 이내에 감리받은 횟수와 세부내용을 기재한다.

- 1) 감리횟수 만큼 '추가'버튼을 누르면, 그에 따른 감리 횟수 증가와 세부입력 화면(2-3-1)이 생성되며 생성된 화면의 세부내용을 모두 기재하여야 함
- 2) 재무제표 심사(외감규정 §23①1호나목)는 감리(외감법 §26조)와 다르므로, 감리횟수에는 심사를 제외하고 산정
- 3) "감리중": 감리착수하였으나 현재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 "무혐의": 감리결과 혐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거나 조치없음으로 통지 받은 경우, "조치": 주의 등 조치받은 경우

(2-4.) 지정대상 선정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조치받은 횟수와 조치내역을 기재한다.

\* 재무제표 감리결과외에 시행령 제14조제6항제3호 등에 따른 위반사항으로 조치받은 사항

- 1) 조치횟수 만큼 '추가'버튼을 누르면, 그에 따른 조치횟수 증가와 세부입력 화면(2-4-1)이 생성되며 생성된 화면의 조치내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함

(2-4-2.) 외부감사법 상 조치와 관련된 소송 및 집행정지 등의 세부내용을 기재한다.

\* 지정대상 선정일로부터 과거 1년(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1.9.1.)이전에 종료된 내역은 제외함

※ 입력에 모호함이 있더라도 별도 문의없이 회사 판단으로 기재하되, 의문사항은 2-10. 기

타추가사항에 기재 또는 관련문서를 첨부

(2-5.) 직전 사업연도말 지배주주(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와 특수관계자(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를 합한 지분율(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을 기재한다.

(2-5-4.)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 중 회사 주식을 소유한 주주 수를 기재한다.

(2-6.) 대표이사(각자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 포함)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면서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예"를 선택한다.

(2-7.)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현황자료를 제출한다(샘플양식 참고).

(2-8)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52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다.

※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였으나 지정대상 선정일 이전 동 상태가 해소된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관련내용을 기재하되, 2-10.에 소유 경영미분리 해소 사유를 기재하고 수정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 현황자료(지정대상 선정일 현재)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직전사업연도말~지정대상 선정일)'를 첨부

2-10 기타 추가 제출 내역	21.8.17. 대표이사 홍길동이 보유주식 전체(55주)를 김가나에게 매각하여 소유경영이 분리됨
	C:\fakepath\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등(소유경영 분리 증명자료).pdf <span style="float: right;">파일 선택</span>

(2-10.) 기타 추가로 기재할 내용 및 제출할 자료(제출할 서류가 복수일 경우 압축파일 형태로 첨부)가 있는 경우에 기재한다.

(입력완료시) 제출 버튼을 클릭한다.



# 부가세영세율과표확정 및 회계변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 재정환율

통 화 명	8월 1일(월)	8월 2일(화)	8월 3일(수)	8월 4일(목)	8월 5일(금)
미 달 러 (USD)	1298.60	1306.40	1307.20	1310.50	1309.70
위 안 화 (CNH)	192.37	193.14	192.67	193.71	193.83
일 본 엔 (JPY)	973.43	993.08	981.57	977.66	986.22
유 로 화 (EUR)	1326.78	1341.22	1328.77	1331.60	1342.44
영 국 파 운 드 (GBP)	1580.59	1601.45	1589.56	1591.08	1592.99
캐 나 다 달 러 (CAD)	1013.82	1017.37	1014.91	1019.80	1017.95
홍 콩 달 러 (HKD)	165.44	166.42	166.53	166.96	166.85

통 화 명	8월 8일(월)	8월 9일(화)	8월 10일(수)	8월 11일(목)	8월 12일(금)
미 달 러 (USD)	1299.30	1304.80	1305.10	1309.10	1302.50
위 안 화 (CNH)	192.20	192.73	193.09	193.55	193.28
일 본 엔 (JPY)	961.91	967.06	965.77	985.29	979.21
유 로 화 (EUR)	1322.04	1330.50	1332.31	1348.57	1344.51
영 국 파 운 드 (GBP)	1567.22	1576.72	1575.84	1599.26	1588.66
캐 나 다 달 러 (CAD)	1003.98	1014.70	1012.73	1024.78	1020.25
홍 콩 달 러 (HKD)	165.52	166.22	166.26	166.84	166.06

통 화 명	8월 16일(화)	8월 17일(수)	8월 18일(목)	8월 19일(금)	8월 22일(월)	8월 23일(화)
미 달 러 (USD)	1303.10	1309.60	1309.80	1317.30	1326.70	1338.20
위 안 화 (CNH)	193.31	192.58	192.92	193.81	194.51	195.57
일 본 엔 (JPY)	979.22	975.46	969.32	969.71	968.75	973.34
유 로 화 (EUR)	1324.34	1332.13	1332.98	1328.76	1331.48	1330.30
영 국 파 운 드 (GBP)	1571.08	1584.62	1578.24	1571.87	1568.42	1574.79
캐 나 다 달 러 (CAD)	1009.65	1019.66	1014.13	1017.42	1020.85	1025.64
홍 콩 달 러 (HKD)	166.26	167.01	167.00	167.93	169.10	170.55

통 화 명	8월 24일(수)	8월 25일(목)	8월 26일(금)	8월 29일(월)	8월 30일(화)	8월 31일(수)
미 달 러 (USD)	1341.80	1341.40	1336.90	1332.50	1347.70	1347.50
위 안 화 (CNH)	195.32	195.27	194.73	194.20	194.85	194.84
일 본 엔 (JPY)	981.82	978.09	978.95	965.89	971.35	970.65
유 로 화 (EUR)	1338.18	1336.84	1333.02	1325.30	1347.43	1350.26
영 국 파 운 드 (GBP)	1588.15	1581.44	1581.69	1560.22	1577.62	1570.65
캐 나 다 달 러 (CAD)	1035.74	1034.15	1033.59	1020.84	1035.82	1029.49
홍 콩 달 러 (HKD)	171.00	170.97	170.38	169.82	171.74	171.68

※ 상기의 기준·재정환율은 금융결제원의 자회사인 (주)서울외국환중개에서 고시한 내용으로 외화외상매출의 회계변영, 결산 평가와 부가세영세율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됩니다.

※ (주)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http://www.smbs.biz>, 전화 : 3705-5500)에서 당일의 기준환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